

연구보고 2006-0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유 희 정
김 은 설
유 은 영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0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유희정
김은설
유은영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머 리 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가 높아지면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육아지원에 대한 정부의 참여 및 지원의 중요성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미래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하여 육아지원이 사회의 주요 정책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게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하여 점검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아지원기관은 현재 사립/민간기관의 비율이 70~80%로 높아 민간기관들의 공공성 제고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선진 각국들은 육아지원의 공공성을 확립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사립/민간 육아지원기관에 공적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반 행정·재정 관리·감독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이 공공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육아지원기관이 왜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육아지원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면 현재 육아지원기관들은 공공의 역할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 및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에 참여해주신 민간보육시설장, 사립유치원장, 보육시설 담당 공무원 및 유치원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면서 개최하였던 워크숍에 참여하여 주셨던 기관장님들과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쪼록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성 제고 방안들이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어 육아지원기관들의 공공성 확보 및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6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욱

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그간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됨
- 주요 육아지원정책으로는
 -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2004. 6)(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2005. 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 6)(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 새싹플랜(2006. 6)(여성가족부)
 - 육아정책의 활성화 방안으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정책의 목표로 채택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육아지원기관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공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있음.
- 연구내용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공공성 개념 정립
 - 정부의 육아정책 추진현황 파악
 -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 실태 파악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공공성 제고 방안 제시
-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육아지원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준하여 운영되는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유치원을 의미함.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공공성의 개념, 외국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공공성 실태,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공공 정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검토

나. 설문조사 및 분석

□ 육아지원기관 조사

- 대상: 전국의 민간보육시설 2,000개소, 사립유치원 2,000개소. 이중 최종 930개 육아지원기관으로부터 조사응답지 회수
- 내용: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공공성 수행 현황,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 공무원 조사

- 대상: 전국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담당 공무원 40명
- 내용: 공공성 수행 현황 평가,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공공성 확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 대상: 학계 전문가, 육아지원기관 종사자, 육아지원업무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총 4차례 개최
- 내용: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제고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

3. 이론적 배경

-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육아지원이 왜 공공서비스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으로 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공공 영역으로서의 육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육아지원기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육아지원정책의 공공성 추진 현황으로는 육아관련 법, 주요 육아지원 정책, 육아지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외국의 육아지원정책과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공공성 제고 정책을 수행해 온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스웨덴,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4.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 실태

가. 육아지원기관의 시설 현황 및 원장 특성

- 총 930개 응답 육아지원기관의 유형은 보육시설이 447개소, 유치원이 483개소임.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48.7%(450개소), 중소도시 39.7%(367개소), 읍면지역이 11.6%(107개소)임.
- 건물 소유 형태는 자기 소유(자가)(681개소, 76.7%)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높았음. 특히 유치원에서는 대부분이 자가 건물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육시설 중에서 건물을 임대(41.6%)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유치원의 임대시설(6.7%) 이용 비율보다 높았음.
- 기관장들 중 25.8%가 추가로 1개 이상 다른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음. 유치원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14.4%(134개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5.7%(53개소), 보육시설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3.2%(30개소)임.

나.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제고 정책에 대한 의견

- 응답자의 69.9%인 536개소에서 육아지원기관은 ‘비영리기관’이라고 응답하였고, ‘영리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은 30.1%임. 보육시설장의 58.1%, 유치원 원장의 79.0%가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비영리사업라고 응답함.
- 임대여부는 육아지원기관을 영리기관 혹은 비영리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자가인 경우 비영리로 인식하는 비율이 73.3%, 임대인 경우는 비영리로 인식하는 비율이 58.2%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음(70% 수준).
- 정책참여에 대한 의견에서는 참여 의사가 높았음.
 - 행정전산화: 유치원 74.6%, 보육시설 79.6%
 - 회계장부관리·감독: 유치원 61.4%, 보육시설 72.4%
 - 법인화: 유치원 46.3%, 보육시설 63.9%

- 평가인증제: 유치원 56.8%, 보육시설 56.2%
- 운영위원회 설치: 유치원 45.5%, 보육시설 56.5%
- 정부지원금과 관리·감독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찬성하였음. 11.2%는 지원금과 관리·감독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지원금만 받고 관리·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의견은 19.2%임.
- 보육료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경우 52.6%가 보육료 상한제에 찬성하여 현 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극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유치원의 경우는 현행 수업료 자율화 유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0.9%임.
- 사립유치원/민간보육시설의 국가 매입 제의에 대한 의사에서는 보육시설 53.8%, 유치원 57.1%가 매도하겠다고 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매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이 차이가 없었음. 학급수가 적은 곳, 운영이 힘든 읍면지역, 소규모일수록 매도의사가 높았음.

다.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 현황

- 재정관련 현황을 보면, 대부분(평균 92.1%)이 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음(유치원은 자율화임).
- 보육료 및 납입금 수령 방법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모두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0.5%), 직접 수령(28.3%)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신용카드는 2.7%로 매우 낮음.
- 회계담당 형태를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89.1%, 유치원 58.1%가 시설장(원장)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특히 예·결산 수행을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21.4%, 유치원의 1.6%가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자가보다 임대에서, 대규모보다 소규모 시설에서 높게 나타남.
- 운영비 내역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보육시설장은 33.4%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치원 원장은 57.4%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82.5%가 보육/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보육시설 76.6%, 유치원 87.3%가 지원금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해 서로 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
- 관리·감독 및 지도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육시설 31.3%, 유치원 10.7%임. 운영위원회 결과의 공개여부에 관해

서는 63.9%가 공개한다고 응답하였음.

- 자체적 평가 실시에서는 응답자의 82%가 실시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2.4%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음.

라. 공공성제고 방안에 관한 의견

- 지원금이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분야로는 가장 우선순위로 교사인건비(86.3%)임. 다음으로 시설개선비와 교재교구비를 원하고 있었음. 이는 유치원과 보육 시설에서 비슷한 응답 경향임. 따라서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교사인건비가 가장 지원을 바라는 분야임.
- 기관/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보육시설의 경우는 38.2%, 유치원 52.5%가 찬성한다고 답하였음.
- 기관유형에 따라 법인화 추진 방안에 찬성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64.4%, 유치원 46.5%가 적극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하였음.
- 결론적으로, 현재 민간/사립의 공공성 수행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재정지원과 평가를 연계시키는 방안에 관해서 전체의 69.6%가 찬성하여 공공성 제고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지역, 자가 여부, 설립유형, 규모 등이 공공성 제고 의사와 관련된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5.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및 목표,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 첫째, 영유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가에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둘째,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양육지원은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비용이 책정되어야 함.
- 셋째, 지역별 유형별 육아지원기관의 분포를 살펴 수요자의 요구와 기관의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나.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목표 및 세부 추진 과제

- 육아지원기관의 보편성 확보: 보편성 확보에서는 기관의 접근성,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동질의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비용 지불 보장 등이 포함됨.

보편성 확보

- ▷ 시설의 접근성 보장
 - 국공립·법인 기관의 적절한 배치
 - 민간/사립기관의 공공역할 수행 지원
- ▷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감독
 - 유치원교육과정·보육과정 개발 및 보급
 - 평가인증/장학지도 등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의 관리
- ▷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비용 지불
 - 기관별 영유아 1인당 비용 조정
 - 기관 운영에 따른 지원의 차이 조정

- 기관운영 개방: 육아지원기관의 개방으로는 재정 운영 공개, 서비스 내용 공개, 인력운영 공개, 기타 기관 운영 공개 등이 있음.

기관운영 공개

- ▷ 재정 운영 공개
 - 연령별 이용비용(보육료/수업료) 고시
 - 육아지원기관의 예·결산 자료
- ▷ 서비스 내용 공개
 - 보육·교육 계획
 - 평가인증/장학 결과
 - 급·간식 운영 자료
- ▷ 교직원 공개
 - 시설장/원장 관련 자료
 - 교사 관련 자료
- ▷ 시설 운영 공개
 - 기관의 시설 설비 및 환경 구성
 - 학부모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운영위원회 결과
- ▷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 모색

- 국가의 공적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공적 지원 및 관리로는 기관운영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지원이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 관리를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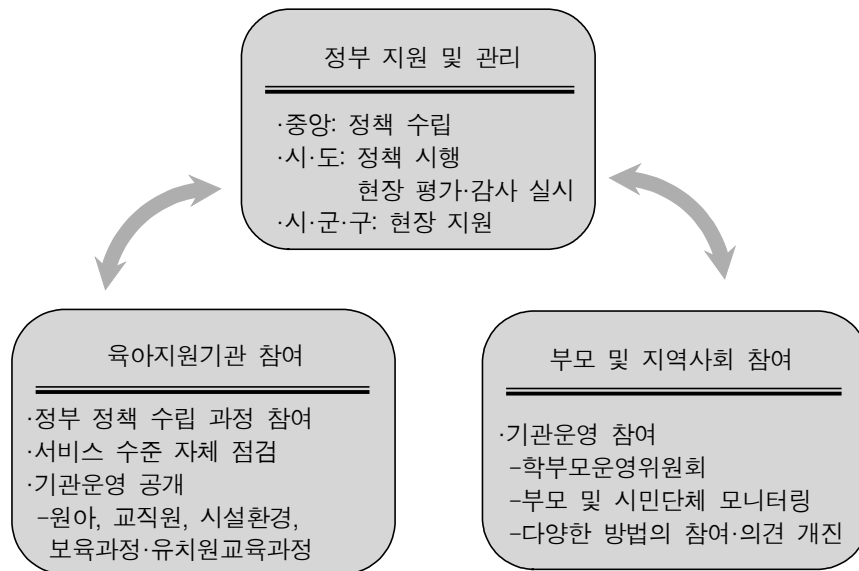
공적지원 및 관리

- ▷ 제도 및 기본정책 마련
 - ▷ 재정 지원 및 관리
 - ▷ 기관 수요·공급 조절
 - 국공립 및 법인/사립기관 간의 균형화
 - ▷ 인력의 양성 및 수급 조절, 전문성 향상
 - 기관장 및 교사 관리
 - 기타 직원 관리
 - ▷ 기관운영 지원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보육 정책 안내
 -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과정 보급 및 안내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조력
 - ▷ 기관운영 관리
 - 행정 관리: 원아, 교직원, 시설환경관리 규정 관리
 - 재정 관리
 - 재무회계/예·결산 관리
 - 정부지원금의 사용과 서비스 수준 향상과의 연계
 - 납입금 수령 방법의 투명화: 자동이체·지로 납부 원칙
 - 기관 운영 비용 사용의 투명화
 - 재무 및 회계 담당자 배치
 - 서비스 운영 관리
 - 장학 및 조력 참여 지원
 - 평가(인증) 참여 지원
 - 인력관리
 - 기관장 및 교사 관리
 - 기타 직원 및 종사자 관리
 - ▷ 정부의 지원 및 관리 시스템(전달체계) 구축
 - 행·재정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 육아지원기관 종합 전산망 구축
 - 예) 여성가족부의 보육행정전산망,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교육행정정보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과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
 - 담당공무원의 적절성
 - 담당공무원의 적절한 수와 역할을 고려한 배치
 -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다.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 공공성 제고 방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육아지원기관, 수요자, 정부 간의 협력과정이 있어야 함. 무엇보다도 육아지원 현장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육아지원기관이 만일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비영리로 전환하여야 하는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임.
- 민간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이 우선인가 기관정비가 우선인가를 놓고 주장이 다름. 현장에서는 기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선지원을 요구하고, 정부는 정부 재정 투자가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선 구축하라고 요구함. 만일 현재의 수준이 열악하다면 지원 없이는 수준의 향상이 어렵고, 정부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원되어서는 안됨. 대안으로는 일정 기간을 준비기간으로 설정한 후 정부지원과 현장관리 대비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준비기간이 지나면 투명성이 확보된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임.

1) 정책 수행 주체에 따른 추진과제



[그림]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 본 절에서는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성취하기 위한 과제들 중에서 정책 성공의 핵심이 되는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음. 선정 이유로는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기관 설치, 공공 서비스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된 비용이 서비스 수준 향상에 소요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고려되었기 때문임.

〈표〉 중점 추진 과제

중점 추진 과제

- 가) 재정지원의 확대
- 나) 기관 운영 지원
- 다) 국공립 및 법인 기관의 확충
- 라) 육아지원기관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가) 재정지원의 확대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소요비용이 요구됨. 우리나라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분담률은 보육 부문과 유아교육 부문을 합하였을 때 38% 수준임. 이는 OECD국가들의 70~85% 수준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되어야 함을 의미함.
- 육아지원 비용에 관해서는 서문희(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 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육아비용 분담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참고할 수 있음.
- 육아지원기관 지원은 영유아 1인당 소요비용이 기준임. 모든 영유아들에게 동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동일 수준으로 맞추도록 함.
- 영유아의 연령(0~5세) 및 특성(장애아 등), 이용시간(반일반, 연장반, 종일반, 야간반), 이용 가구의 특성(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놓여준 가정),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요인 변화가 소요비용 추계에 반영되어야 함.

- 가구의 소득에 따른 재정지원은 우선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장애아 무상지원, 그 다음으로는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되 중산층의 경우는 반일반은 무상, 종일반은 부모 자부담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1단계: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장애아 무상지원
 - 2단계: 지원 대상을 1단계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며 이 때 반일반은 무상지원하고 추가 종일반은 부모가 자부담
- 출산율의 변화 및 출산 대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이혼율 증가, 육아지원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에 따른 추가 수요, 비용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 전망 등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 추계가 변동될 것이므로 고려되어야 함.
- 동일기준에 의한 비용 지원을 추계할 때 어떤 수준을 기준으로 추계할 것인지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함. 예를 들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중 어느 유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추계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함. 혹은 바람직한 수준을 기준으로 1인당 표준육아비용을 다시 산출한다면 추계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영유아 인구수 추계 대비 총 육아비용이 추계될 수 있음. 이에 기초하여 육아지원기관의 공적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육아지원비용의 규모 및 정부 부담분에 관한 규모가 합의되어야 할 것임.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어느 대상까지, 총비용의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임.
- 보육재정의 확대가 가져오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담문제가 있음. 정부의 보육재정 증가분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예산은 지난 5년간 전년대비 30~50% 증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은 전년대비 37~70%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유아교육 재정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이 대폭 증가하였음. 이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보육재정이 부담이 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지원과 같은 특별조치가 요구됨.

나) 기관운영 지원

- 육아지원기관들이 사회적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의 수렴과 준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 및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제도 도입의 배경, 정책적 의의, 구체적 내용, 참여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대책과 육아지원 정책,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표준 보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 기본보조금 제도(이해비율: 유치원 70.6%, 보육시설 97.5%), 평가(인증)제도(동의비율: 유치원 56.8%, 보육시설 56.2%), 재무회계규칙의 적용(동의비율: 유치원 61.4%, 보육시설 72.4%), 행정전산화(동의비율: 유치원 74.6%, 보육시설 79.6%), 운영위원회(동의비율: 유치원 45.5%, 보육시설 56.5%), 기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임.
- 정책 안내 및 교육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인증지표가 함축하고 있는 7개 영역, 80개 문항에 기초한 기관 운영에 대한 준비와 이를 위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음. 유치원 장학 관련으로는 원내 자율장학, 지구별 자율장학, 담임장학, 요청장학, 종합장학, 표집장학, 사이버장학 참여 준비임.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방법, 교사 및 영유아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적용법, 그 외 기타 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들은 소규모인 특징을 지님. 보육시설은 40인 미만 시설이 70.1%(19,891개소)이고, 유치원은 1학급 기관이 38.8%(3,211개소), 2학급 18.3%(1,513개소)로 2학급 이하가 57.1%임. 소규모 기관에서는 기관장, 혹은 교사가 교육을 받고자 기관을 비우기가 어려우므로 이들 대상의 교육 실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대안으로는 이들이 교육기관으로 와서 받는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찾아가는 교육, 간편한 설명 자료의 배포, on-line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혹은 교육 참가를 위한 대체인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육아지원기관 기관장, 혹은 교사교육의 필수과목이 점검되어야 하며, 특히 재무회계규칙, 평가인증 운영 등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임.

- 기관지원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의미함.
 - 우선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음. 보육료/원비에는 환경 개선비가 산정되어 있지 못함. 그러나 국공립기관에는 별도로 기관 환경개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이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준을 준수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요구됨.
 - 교사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재 민간기관의 여건으로는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함. 교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여 기관의 교사 수급을 지원할 수 있음. 특히 현재 국공립(보육의 경우 법인시설 포함)의 경우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교사 수급이 원활하나 민간기관의 교사는 국공립 대비 60~70%수준으로 낮으므로 기본보조금이 교사 보수를 높이는데 제도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실제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사 보수는 국공립교사 보수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나정 외, 2005). 한편 보육시설은 국공립 대비 민간개인시설 교사 보수는 68%, 가정보육시설 교사 보수는 58% 수준임(서문희 외, 2006).
 - 보육·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재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계획안 작성시 영유아 관련 잡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44.2%이고 연구기관개발 자료 26.2% 등임. 사립유치원은 영유아 관련 잡지를 이용하는 경우 40.4%,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48.6%임. 따라서 육아지원기관들이 어떤 보육·교육과정에 준하여 기관을 운영하는지 점검되어야 함. 바람직한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놀이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영아보육, 장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놀이감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감의 개발·보급이 요구됨. 문서관리 지원에서는 일부 민간기관들에서는 문서관리가 아주 미흡하게 이루어지기도 함. 그러나 이들이 공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면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서류를 갖추어야 함. 가족 및 지역사회 정보 제공에서는 부모교육 자료, 가정에서의 영유아 양육방법,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정보 등의

기초자료를 일괄적으로 수집, 제공하여 기관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그 이외에도 육아지원기관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음. 따라서 무엇이 부족한 지 실태를 파악한 후 관리·점검에 들어가지 전에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요구됨. 공공성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투명한 공개 운영, 적절한 관리·감독이 기본 개념이라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다) 국공립 및 법인 기관의 확충

- 국공립 및 법인기관의 확충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함.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서는 국공립기관의 설치가 비교적 손쉬울 것임.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존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또한 기존의 도시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민간/사립기관 매입을 통한 국공립시설 확충도 가능함. 그러나 국공립기관 확충에서는 확충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이를 담당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만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상대방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부진될 수 밖에 없음.

□ 국공립 기관 신축

- 정부의 보육정책에서는 국공립시설의 수를 현재의 1,352개소에서 2010년 2,700개소로 확충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비율 11.3%를 3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임. 유치원 역시 단설 및 학교 병설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민간/사립기관의 법인화 방안 모색

- 민간/사립기관의 법인화 추진을 모색할 수 있음. 다만 민간/사립기관의 법인화 유도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사립기관들이 법인화에 참여할만한 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함. 법인화가 가능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다만 기초 수치가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과연 이들이 제안되고 있는 법인화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함.
- 민간보육시설 중 법인화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은 자가시설, 용자시설이

아닌 시설, 가정보육이 아닌 시설로 이러한 조건에 준하는 보육시설은 3,293개소임. 여기에 법인화 참여율 63.9%를 적용하면 법인화 가능 시설은 2,104개소 수준임. 이는 최초 민간 보육시설 총수 24,420개소 대비 8.6%임. 이상에서와 같이 민간 임대시설과 가정시설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인화를 통한 공공시설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민간개인시설(개인, 부모협동, 직장, 가정)	24,420개소
· 가정 11,346개소 제외	· 13,074개소
· 자가를 39.9% 적용 ¹⁾	· 5,216개소
· 용자시설 1,923개소 제외 ²⁾	· 3,293개소
· 법인화 참여의사 63.9% 적용 ³⁾	· 2,104개소

- 동일한 방식으로 유치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3,347개소 중 자가 운영은 2,948개소임. 여기에 법인화 찬성률 46.3%를 적용하면 법인화 가능 유치원은 1,364개소 수준임. 유치원은 보육시설에 비하여 자가 비율이 높으므로 법인화 가능 기관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최초 대상 유치원 3,347개소 대비 40.8%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합하면 법인화가 가능한 민간/사립 기관은 3,468개소임.

사립유치원	3,347개소
· 자가를 88.1% 적용	· 2,948개소
· 법인화 참여의사 46.3% 적용	· 1,364개소

1) 여성부(2005). 2004 전국보육실태조사.
 2) 초기 용자시설 3,497개소중 완전상환 1,385개소, 경매완료 189개소(2002)를 감안하면 현재 용자보육시설 1,9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3) 본조사 결과임.

- 민간개인의 자산을 법인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충분한 지원책이 선 제시되어야 함.
 - 법인 출연금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자산 보상 관점에서의 일정 금액 지원
 - 국가 헌납 자산 보상에 준하는 국공립시설 수준의 안정적 운영 보장
 - 김병주(2005)는 유치원의 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 ‘유치원 법인화 지원 센터’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법인화를 원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지원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 때 법인화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가칭 ‘육아법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함.

□ 민간/사립기관의 국가 매입

- 민간/사립기관의 국가 매입이 시도되고 있으며, 2005년도 3개소(인천 3개소), 2006년도 3개소(경기 1개소, 경남 2개소)임⁴⁾.
- 다음은 조사 결과에 준하여 국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고려되는 민간/사립기관을 추계해보면 다음과 같음. 민간개인시설의 경우 자가시설 5,216개소 중 매입 찬성률 53.8%를 적용하면 매입 가능한 시설은 2,806개소임.

민간개인시설(개인, 부모협동, 직장)	13,074개소
· 자가를 39.9% 적용	· 5,216개소
· 매입 찬성률 53.8% 적용 ⁵⁾	· 2,806개소

- 사립유치원은 자가 시설 2,948개소 중 매입 찬성률 57.1%를 적용하면 매입 가능한 기관은 1,683개소임.

사립유치원	3,347개소
· 자가를 88.1% 적용	· 2,948개소
· 매입 찬성률 57.1% 적용	· 1,683개소

4) 여성가족부(2006. 11).

5) 본 조사 결과.

- 이상에서 민간/사립 육아지원기관 중 국가 매입이 가능한 기관은 보육 시설은 2,806개소, 사립유치원 1,683개소로 총 4,489개소임.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이나 건물 매매의 경우 정부 공시지가와 실 매매가가 있는데 인천의 사례에서와 같이 실 매매가를 적용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대략 4,489개소의 매입이 예측 가능함.
- 정부가 운영한 바 있는 국공립기관 확충 TF/T에서 정책 추진이 가능함. 다만 국공립기관의 확충은 신축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매입금을 부담하는가 하는 것과 이후 운영지원금 부담의 문제에 대하여 세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확충의 규모를 늘릴 경우 중앙정부가 특별추진계획에 의하여 비용 부담을 전담하여야 함.

라) 육아지원기관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관들이 어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할 때 성공할 수 있음. 재정운영의 공개 및 서비스 수준 점검이 핵심임. 본 절에서는 육아지원기관의 관리·감독 방안을 수행 주체별로 제시하였음.

□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정부의 주요 관리·감독 기능이란 육아정책의 방향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에 전달한 후 기관들이 이에 준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 후 다시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하는 것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관리·감독 방안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동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현장의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행정전산화 동의: 77.0%(유치원 74.6%, 보육시설 79.6%)
- 평가인증제도 동의: 56.5%(유치원 56.8%, 보육시설 56.2%)
- 법인화 동의: 54.7%(유치원 46.3%, 보육시설 63.9%)
- 운영위원회 동의: 50.8%(유치원 45.5%, 보육시설 56.5%)
- 회계장부관리 동의: 66.7%(유치원 61.4%, 보육시설 72.4%)

-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전달체계의 단계에 따라 중앙정부, 16개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수 있음.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원과 관리·감독체계 연결 - 전국 단위의 관리·감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 기관 평가체계 구축 - 16개 시·도의 관리·감독 역할 지원
16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운영지침 마련 - 16개 시·도별 관리·감독 실시 방안 마련 -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감사 실시 및 사후관리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장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지원, 교육지원 등 - 정부의 평가제도 참여 지원 - 육아지원기관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지도

① 중앙정부

- 육아지원기관에 관한 전국 단위의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함.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육아행정전산화, 담당공무원의 확보,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등이 있음.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리·감독시스템을 반드시 조건으로 연계하여야 함.

② 16개 시·도

- 기관 지원을 위해 시·도가 준비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설치 및 인가 관련 사항으로 육아지원기관 설치인가 기준의 준수, 육아지원 재정 및 보육료/원비 관련 사항으로 시·도의 보육료/원비 단가표, 기관운영비 내역, 정부 보조금 관련 사항으로 운영비 보조금, 교직원 보수표, 기관 운영비 기준이 있음. 육아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관련법, 육아지원기관 운영 점검내용(항목), 구비문서 내용, 직원근무계약(근로기준법), 비상

재해관리 지침, 질병관리 지침, 사고발생 처리 지침 등임.

- 16개 시·도의 주요 관리·감독 업무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16개 시·도별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지한 후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 기본적으로는 우선 예·결산 감사와 기관 운영의 기본적인 인가사항 준수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함. 그 다음으로는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감사의 기능이 시·도로 넘어갈 경우 시·도에서 감사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구축하여야 함.

대안1) 감사 내용을 행·재정 감사와 서비스 수준 평가로 분류하여 시·도는 행·재정 감사만을 담당함. 서비스 수준 평가는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함. 행·재정 감사 역시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최대한으로 이용한다면 업무의 과중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대안2) 우리나라는 소규모 시설이 많으므로 권역을 나누어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들, 혹은 유형별로 기관들을 그룹화 하여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때 그룹에 속한 기관들은 무작위로 선택되어 실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임. 감사 결과는 거점 기관이 책임을 지게 됨.

대안3) 시·도의 여력에 따라 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처음에는 격년으로, 이후 점차 년 1회로 점검 횟수를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임.

- 예·결산 감사와 행정감사는 16개 시·도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그 이유로는 육아지원기관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군·구가 감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다만 16개 시·도가 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시·군·구가 동행하여 감사 준비 및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음. 현재는 시·군·구가 감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감사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음.

구분	장부, 명부 등
1. 기관 관리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인허가증, 운영 규칙 - 교직원 취업규칙(시간외 근무, 급여규정, 여비규정, 경조규정, 경리규정), 고용보험 등 각종보험 - 사업계획, 사업보고서철, 업무일지
2. 영유아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기본서류: 영유아 명부, 기관 입소 관련 서류 - 아동건강진단기록부 - 보호자 연락 문서철 - 교육·보육일지
3.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육계획: 연간 및 월간(주간)지도계획, 하루일과 운영 - 급·간식 운영
4. 교직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채용, 퇴직에 관한 서류 - 업무 분담표 - 직원명부: 이력서, 자격증 - 직원 출근부 - 직원건강진단기록부: 채용 시의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계 서류 - 소득세, 주민세 관계서류 - 직원회의기록부, 직원연수기록부
5. 재무회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 재산목록: 부동산대장, 고정 자산물건대장 - 비품대장 - 총계정원장(계산표) - 급여대장 - 보조금청구서 - 예산서 - 결산보고서 - 증빙서류철
6. 비상재해 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서류(긴급연락체계 포함) - 소방계획 및 소방용 설비 등 점검결과보고서 - 안전교육 결과

- 2005년도부터 사립/민간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지원대상의 조건도 동일하게 하여 기본보조금 제도의 서비스 수준 향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유치원 평가는 현재 보육시설이 적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유치원 대상의 평가체계를 별도로 구축할 수도 있음.

③ 사·군·구

- 사·군·구 단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원에 중점을 둘 수 있음. 특히 사·도의 감사 및 평가(인증)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인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함. 특히 예·결산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함. 인가사항 준수에서는 정원초과를 점검하는 일 역시 중요함.
- 정부의 재정지원이 점차 다양해지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을 연계하는 일은 필수적임. 사·도의 감사 결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사·도간 교차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임.

□ 육아지원기관의 역할

- 육아지원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역할은 기관 운영의 수준을 점검하고 향상 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임. 구체적으로는 자체 점검을 통하여 보육·교육서비스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해 나가는 일, 예·결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평가시스템에 참여하는 일 등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관장 및 교직원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요구됨.
-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수준 점검을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성인들과 어떤 과정(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준비하고 점검하여야 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장부·명부 등
<p>1. 보육 서비스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보육 및 교육 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이나 교실 공간배치 적절성 확보 · 충분한 놀이감 제공 -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사, 기타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 -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과정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과정의 계획 및 다양한 보육 활동 실시 - 아동 중심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를 위한 일상적 양육 및 교육과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 - 건강과 영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시설설비의 청결, 위생관리, 질병관리에 대한 준비, 영유아를 위한 급식과 간식 관리 -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시설 및 놀이감의 안전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안전한 보호방법, 안전교육 방법 -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족 및 지역사회관련 자료 확보 및 이들과의 다양한 협조 체제 구축 방법

<p>2. 기관 관련 공개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리규정 · 원아 1인당 원비/보육료(부모부담 내역) 및 정부지원금 내역 · 금전출납 및 예·결산자료 - 행정자료(인가사항 준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아 현황 · 교직원 운영 현황: 근무규칙, 근무계약, 채용·배치 및 퇴직 현황, 보수, 담당반 혹은 담당 원아 및 근무 현황, 보수교육 참가 현황 · 건물시설설비 현황, 학급 운영일지 · 장학 및 평가인증 참여(실시) 현황 · 직원회의 기록 - 시설 및 기관 운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운영 방침 · 프로그램: 연간, 월간, 일일 운영 프로그램, 시설설비 및 환경구성 - 건강·영양·안전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현황 · 식·간식 메뉴, 식간식 운영현황 · 안전교육 및 관리현황 - 기관의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 관련 자료
<p>3. 부모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들의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의견함, 편지, 연락장, 게시판 등을 활용

◦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는 기관장의 인식에 따라 좌우되므로 기관장의 공공성 참여 의지 고취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특히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여야 함.

□ 학부모 참여

- 육아지원기관이 투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학부모들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수 있음.
-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원이 교육·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안할 수 있음. 그러나 학부모 참여는 학부모 개인의 참여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며, 학부모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함.
- 학부모들의 기관운영 참여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해 가능함.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활성화는 운영위원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민주적인 운영절차, 회의내용 및 결과의 공개에 있음.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기관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 심의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보육내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또한 학부모 참여는 지역사회 육아지원 모니터링단 참여를 통해서도 가능함. 기타 육아지원기관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서도 참여가 가능함.
-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성공은 누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며 운영위원의 선출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추천된 인사들 중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위원이 결정되어야 함.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것 역시 중요함. 이러한 운영방식은 기관에 대한 부모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기관의 안정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임.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참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원아 입소 시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제도,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등에 대하여 설명되어야 함. 이로써 모든 부모들이 이를 인지하여 참여 희망자 모집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임. 참여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수도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용어 정의	12
II. 육아지원과 공공성	14
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14
가. 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	14
나. 공공 영역으로서의 육아	18
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육아지원기관	24
라.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25
2. 육아지원정책의 추진 현황	28
가. 육아지원 관련 법	28
나. 주요 육아지원 정책	30
다. 육아지원 현황	36
3.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외국의 정책	60
가. 스웨덴	60
나. 프랑스	63
다. 미국	65
라. 호주	67
마. 일본	70

III.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실태	73
1. 육아지원기관의 운영 현황	73
가. 육아지원기관의 시설 현황	73
나. 육아지원기관장 관련 현황	77
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의견	81
가. 기관 성격에 대한 인식(비영리/영리)	81
나.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인지도	84
다.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참여 의사	91
라. 정부 지원금과 관리·감독의 연계	99
마. 보육료 상한제/수업료 자율화	102
바. 민간시설/사립기관의 정부에 대한 매도 의사	104
사. 관리·감독과 서비스의 질	107
3.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 현황	110
가. 재정관련 공공성 수행 현황	110
나. 관리·감독 현황	120
4.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135
가. 정부지원금 투자의 우선순위	135
나.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135
다. 육아지원기관 법인화	140
5. 공무원 의견조사	143
가. 일반현황	143
나. 공공성 평가	145
다. 시설 현황 관련 사항	159
라. 관리·감독 관련 사항	161
마. 업무수행 관련 사항	169
6. 소결	170

IV.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180
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및 목표	180
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180
나. 공공성 강화의 목표 및 세부추진과제	182
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185
가. 정책 수행 주체에 따른 추진과제	185
나.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187
참고 문헌	208
부록	211
I. 설문지	213
II.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244
III.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254
IV. 유치원 장학 사례	271

표 목 차

<표 1- 1> 설문조사의 항목 및 내용	6
<표 1- 2> 보육시설 및 유치원담당 공무원용 면담 조사 항목 및 내용	9
<표 11- 1> OECD 국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01년)	15
<표 11- 2> 여성 취업 장애 요인	15
<표 11- 3> 모취업별 양육 지원 서비스 이용률	16
<표 11- 4> 미혼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	16
<표 11- 5>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7
<표 11- 6> 인구변동 추이	17
<표 11- 7> 영유아보육법 관련 개정 사항	29
<표 11- 8>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 현황(2002~2006년)	36
<표 11- 9> 보육아동 현황(2006. 6)	37
<표 11-10> 연도별 보육 영유아 현황	37
<표 11-11> 유치원 아동 현황(2006. 6)	38
<표 11-12> 연도별 유치원 영유아 현황	38
<표 11-13> 연도별 육아지원기관 이용 영유아 현황	39
<표 11-14> 보육시설 설치 현황 II(2005~2006년)	39
<표 11-15>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 현황(1995~2004년)	40
<표 11-16> 연도별 유치원 설치 현황(2000~2006)	40
<표 11-17> 유치원 장학협의 관점 양식	45
<표 11-18> 유치원 장학 종합표	47
<표 11-19> 유치원 장학 절차	49
<표 11-20> 주요 선진국의 육아 제도 현황	72
<표 111- 1> 설립유형별 조사대상 현황	73
<표 111- 2> 조사대상 기관의 현황	75
<표 111- 3> 조사대상 기관 규모 현황	77

<표 III- 4> 조사대상 시설장·원장 성별	77
<표 III- 5> 시설장 및 원장의 전공	78
<표 III- 6> 시설장 및 원장의 경력	79
<표 III- 7> 추가 운영기관의 유형	80
<표 III- 8> 시설(기관)장별 추가 운영 현황	80
<표 III- 9> 기관 성격에 대한 인식(영리/비영리)	82
<표 III-10> 설립유형별 기관 성격에 대한 인식(영리/비영리)	83
<표 III-11> 육아지원기관 운영을 비영리 사업이라고 보는 이유	83
<표 III-12> 육아지원기관 운영이 영리 사업이라고 보는 이유	84
<표 III-13>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	85
<표 III-14> 기본보조금에 대한 인지도	87
<표 III-15>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88
<표 III-16>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89
<표 III-17> 유치원 장학제도에 대한 인지도	90
<표 III-18> 교사 담임수당 지원에 대한 인지도	90
<표 III-19>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육아지원기관의 참여 의사	91
<표 III-20> 보육시설 및 유치원별 보육 행정전산화 참여 의사	93
<표 III-21> 보육시설 및 유치원별 평가제도 참여 의사	95
<표 III-22> 보육시설 및 유치원별 법인화 참여 의사	96
<표 III-23> 보육시설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참여 의사	97
<표 III-24> 보육시설 및 유치원별 보육 회계장부관리 정책 참여 의사	99
<표 III-25> 정부지원금과 관리·감독의 연계	100
<표 III-26> 설립유형별 정부 지원금과 관리·감독 연계에 대한 의견 비교	101
<표 III-27> 지역임대 여부·학급수별 지원금 관리·감독연계 정책에 대한 의견 비교	102
<표 III-28> 설립유형별 보육료 상한제/수업료 자율화에 대한 인식	103
<표 III-29> 보육료 상한제/수업료 자율화에 대한 인식	104
<표 III-30> 기관유형별 매도 의사	105
<표 III-31> 국가에 대한 시설/기관 매도 의사	105
<표 III-32> 지역별 매도 의사	106
<표 III-33> 인가학급수별 매도 의사	106

<표 III-34> 설립유형별 평가제도와 서비스 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	107
<표 III-35> 평가인증제도와 서비스 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	108
<표 III-36> 장학지도와 교육의 질 관계에 대한 유치원 원장의 인식	109
<표 III-37> 국정 보육료 공개 여부	110
<표 III-38> 보육료 및 납입금 수령 방법	111
<표 III-39> 회계담당자 유형	112
<표 III-40> 예·결산 수행 현황	114
<표 III-41> 기관유형별 예·결산 공개여부	115
<표 III-42> 시설(기관) 임대여부별 예·결산 공개여부	116
<표 III-43> 인가학급수별 예·결산 공개여부	116
<표 III-44> 설립유형별 예·결산 공개여부	117
<표 III-45> 예·결산 공개 방법	118
<표 III-46> 지원금과 서비스 질 향상의 관계	119
<표 III-47> 설립유형별 지원금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	120
<표 III-48> 운영관련 정보 공개	121
<표 III-49> 운영비 공개횟수	122
<표 III-50> 설립유형별 운영비 공개횟수	123
<표 III-51> 설립유형별 운영비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3
<표 III-52> 지역별 운영비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4
<표 III-53> 임대여부별 운영비공개 필요성 인식	125
<표 III-54> 예·결산 공개가 불필요한 이유	126
<표 III-55>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127
<표 III-56> 설립유형별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128
<표 III-57> 운영위원회 미설치 이유	128
<표 III-58>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129
<표 III-59> 운영위원회의 결과 공개 실태	130
<표 III-60> 설립유형별 운영위원회 결과 공개 실태	130
<표 III-61> 지역별 자체평가 실시 현황	132
<표 III-62> 인가학급수별 자체평가 실시 현황	133
<표 III-63> 설립유형별 자체평가 현황	134

<표 III-64> 교사임면사항 보고 시기	134
<표 III-65> 정부지원금 투자의 우선순위	135
<표 III-66> 기관유형별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의견	136
<표 III-67>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지역별 의견	137
<표 III-68>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임대여부별 의견	138
<표 III-69>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인가학급수별 의견	139
<표 III-70>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설립유형별 의견	139
<표 III-71> 기관유형별 법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	140
<표 III-72> 지역별 법인화 활성화 찬성 여부	141
<표 III-73> 시설규모별 법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	141
<표 III-74> 설립유형별 법인화 활성화 찬성 여부	142
<표 III-75> 면담 대상	143
<표 III-76> 면담 대상 공무원의 일반사항	144
<표 III-77> 보육시설/유치원의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인식	146
<표 III-78> 공공성 제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공통)	149
<표 III-79> 공공성 제고 정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보육시설)	150
<표 III-80> 공공성 제고 정책에서의 우선순위	151
<표 III-81> 설립유형별 지원금 운용의 투명성	153
<표 III-82> 설립유형별 예·결산 공개 여부	154
<표 III-83> 설립유형별 회계장부 관리의 정확도	155
<표 III-84>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	157
<표 III-85> 재정지원의 방향	158
<표 III-86> 사립의 법인화 가능성	160
<표 III-87> 공무원의 설립유형별 운영 파악 정도	162
<표 III-88> 설립유형별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63
<표 III-89>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164
<표 III-90> 관리·감독 시 중점 사항	165
<표 III-91> 설립유형별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66
<표 III-92> 관리·감독의 횡수	168
<표 III-93> 민간 및 사립이 겪는 어려움	168

<표 III-94> 공무원의 어려움	169
<표 IV- 1> 중점 추진 과제	187
<표 IV- 2> 육아지원 재정의 변화	190

그 립 목 차

[그림 I -1] 육아지원의 이중적 개념	13
[그림 II-1] 유아교육 정책 환경	34
[그림 II-2] 유치원 장학 체계의 사례	43
[그림 II-3] 평가인증 운영 체계	52
[그림 II-4] 평가인증 단계별 절차	53
[그림 II-5] 평가인증 지표(21인 이상 기준)	58
[그림 IV-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및 목표	181
[그림 IV-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186

부 표 목 차

<부표 II-1> 담임장학협의록 양식	278
<부표 II-2> 장학결과 분석 보고 양식	279
<부표 II-3> 유치원 요청 장학 신청서 양식	280
<부표 II-4> 유치원 장학지도 결과 보고서 양식(I)	281
<부표 II-5> 유치원 요청 장학 신청서 양식(II)	282
<부표 II-6> 장학 운영 일정의 예: 인천시	283
<부표 II-7> 육아지원기관의 시설의 전용성 확보 현황	28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간 정부의 육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육아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저출산과 더불어 자녀양육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으로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정책방안(2004. 6)」을 발표한 데 이어 2005년 5월에는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2006년 6월에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여성가족부는 2006년 7월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 새싹플랜」을 발표하였다. 자녀양육을 포함하는 이 모든 정책에 육아지원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정책의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육아지원을 공적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서비스의 표준화, 소비자의 능력, 규제 환경 등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나 생산물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경쟁을 통해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 힘든 경우, 이를 공공부문에서 생산·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김종해, 2006). 육아지원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육아지원이 가지는 긍정적 외부효과,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소비자 선택의 한계,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육아지원 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효용 등을 고려한다면 육아지원을 공공재나 준공공재, 또는 가치재로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사립/민간 설립 육아지원기관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공공부문으로서의 육아를 정립시키고자 한다면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육아지원기관이 가진 공공성이란, 정부가 육아지원을 위해 적절한 공적 재정을 지원하고, 이러한 재정지원이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연결되는지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육아서비스에 대하여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수요자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육아지원 현장을 적절하게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이 희망하는 육아지원기관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일정 수준이 보장된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육아지원기관이 공공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기관이 보다 적절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비율이 낮고, 사립 및 민간의 분담 비율이 70~80%로 높아 민간기관들을 통한 공공성 강화방안이 모색되어져 왔다(민간개인보육시설 89.1%, 사립유치원 46.7%, 2005). 지금까지 민간기관의 육아지원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국공립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서는 민간 및 사립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민간 및 사립기관이 육아지원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육아지원에 있어 선진 각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민간 및 사립 육아지원기관에 공적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반 행·재정 관리·감독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공공성 확보의 중요한 논의의 다른 한 축은 육아지원기관들이 바람직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현재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육/교육 서비스 수준과 행·재정 관리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선 유치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수준 관리를 위해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연 1회의 담임장학을 포함하여 연간 3~5회의 장학지도를 받는다. 사립유치원은 연 1~2회 정도의 장학지도를 받는다. 유치원의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은 연 1회의 감사를 받는다. 사립유치원 역시 연 1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지역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실제로는 2~3년에 1회 실시되고 있다.

보육시설 역시 행·재정 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우선 행·재정 관리로는 국공립과 법인시설의 경우 연간 1회 이상의 관리·감독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위생·급식관리가 이루어져

연간 2~3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민간시설 역시 연간 1회 이상의 관리·감독과 위생·급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해서는 보육시설들의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지표개발(2003), 시범운영 준비(2004)를 거쳐 2005년도 시범운영이 실시되어 627개 보육시설이 국가인증서를 받은 바 있다. 2006년도에는 보육시설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08년도까지 1차적으로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한 후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이 왜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육아지원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면 현재의 육아지원기관들은 공공의 역할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공공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이 사회적 요구에 의한 공공성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육아지원기관들의 공공성 수행 실태를 파악한 후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육아와 육아지원, 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공공 영역으로서의 육아,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적 특성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나.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육아정책 추진현황 파악

정부가 그간 육아정책에서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아정책에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추진 방안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육아지원기관의 현황 및 취원아 현황, 서비스 수준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공공성 수행 실태 파악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들이 육아지원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나아가 앞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라.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제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점에 기초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공공성 강화의 방향 및 목표,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으로 정책 수행 주체에 따른 추진과제와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공공성의 개념, 외국의 육아지원 정책,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공공성 실태,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공공 정책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의 문헌, 인터넷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공공성의 개념에 관해 살펴보았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아우르는 의미의 통합적인 접근으로서, 본 연구에서 최초로 논의되는 것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에 적합한 ‘공공성’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분야에서 공공성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조사하고 수집하였다. 그간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해 온 육아지원관련 정책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발간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외국의 육아지원정책과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실태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공공성 제고 정책을 수행해온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공공성 수행 실태에 관한 세미나 및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설문조사

1) 조사 대상 선정

전국의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전국의 민간/사립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성 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표집은 도시별 규모를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보육시설 2,000개소, 유치원 2,000개소(총 4,00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본 연구의 성격상 국공립보육시설이나 국공립유치원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제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지 개발

조사지 개발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진이 제작하였다.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진, 자문위원 및 현장의 보육시설장 및 원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설문지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하였으며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이에 따른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국 민간보육시설 대표 14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4일 제 1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제 2차 간담회는 2006년 4월 10일 개최되었으며, 전국 사립유치원 대표 7명이 참석하였다.

3) 사전조사 실시

설문지 문항 및 내용 검토를 목적으로 민간보육시설(개인·가정) 시설장 20명 및 전국의 사립유치원장 20명을 대상으로 2006년 6월 23일~6월 30일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육시설장 대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이 때 사전조사를 위한 표집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가 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조사에서는 문항의 적정성과 문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문구에 대한 수정 검토사항을 자세히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회수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본 연구팀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직접 회수하였다.

유치원 원장 대상 사전조사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2개 지구 대표자들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방문 면담 및 이메일 회신이 사용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과 설문지의 오류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설문지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1〉 설문조사의 항목 및 내용

항목	조사 내용
일반사항	1. 육아지원기관 - 설립 유형 - 지역 - 건물유형 - 임대여부 및 임대료 - 시설의 전용성 확보 여부 - 기관 규모(학급, 아동수, 교사수) 2. 육아지원기관장 - 성별(남, 녀) - 자격증 - 전공 - 경력 - 보유 육아지원기관 수

<p>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성격에 대한 인식(비영리/영리) 2. 정부의 공공성 추진 정책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5세 무상교육/보육 - 기본보조금 - 운영위원회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유치원 장학제도 3. 향후 공공성 추진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행정전산화 - 평가인증제도 - 법인화 - 학부모/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 예·결산 공개/회계 장부 관리 4. 공공성 제고 방안의 추진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기관의 지원금과 관리·감독의 연계 - 납입금 자율화 - 사립 기관의 국가적 매입 -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장학지도와 서비스의 질 -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p>공공성 수행 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인증제/유치원 장학 참여 여부 2. 보육료·납입금 수령 방법 3. 운영비의 예·결산 및 공개 여부 4. 예·결산 수행 방법 5. 재무·회계 담당자 확보 여부 6. 정부 지원금의 수령 7.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 내용 8. 규정의 준수 9.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10. 보육료 공지 여부 11. 교사 임면 사항 보고 여부
<p>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보조금 제도 확대 2. 평가인증 및 장학제도와 재정 지원의 연계 3.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기타 제언

4) 조사 실시

전국의 민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 시설장 2,000명과 전국의 사립유치

원장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는 2006년 7월 3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우편조사로 실시하였으며 930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23.3%였다. 회수한 조사지는 보육시설 447부, 유치원 483부로 회수율은 각각 22.4%, 24.2%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5) 조사 결과의 분석

통계프로그램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다. 면담조사

1) 면담용 설문지 작성

면담조사는 육아지원기관 담당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공공성 수행 현황,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면담용 설문지는 보육시설담당 공무원과 유치원담당 공무원용으로 구성되었다. 보육시설/유치원 관련 정책 인식, 관리·감독 실태 및 육아지원기관들의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설문지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보육시설담당 공무원과 유치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이에 따른 면접설문조사와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서울 및 지방 대표 5명을 대상으로 2006년 6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 사전조사 실시

설문지 문항 및 내용 검토를 목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육담당 공무원 사전면담조사로는 서울의 보육시설담당 일반행정직 공무원(3명), 경기도·안양시(1명), 인천시(2명) 등으로 총 6명의 공무원을 면담 조사하였다.

유치원담당 공무원 사전 면담조사 대상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내 지방교육청의 장학사 2명과 관리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2명, 경기도 안양시(1명)와 인천광역시(2명)의 담당 장학사(2명)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면접용 질문지 1종, 유치원담당 공무원 면접용 질문 1종이 개발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2> 보육시설 및 유치원담당 공무원용 면담 조사 항목 및 내용

항목	조사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근무 지역 - 직책, 근무처, 관련 업무 경력
공공성 수행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비의 예·결산 수행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결산 수행 정도 및 방법, 공개 현황 - 회계장부 사용 현황 - 정부 지원금 운영의 투명성 2. 관리·감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및 관리·감독의 횡수 및 내용 3. 담당공무원의 업무 파악 정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성격에 대한 인식(영리/비영리) 2. 향후 공공성 추진 정책의 가능성 및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자율화 - 행정전산화 - 평가인증제도와 지원금의 연계 - 평가인증제의 확대·실시 - 법인화 -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위원회 - 계좌이체 및 카드 사용 의무화 - 예·결산 공개 3. 국공립 및 법인시설 확대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시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지역 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 공공시설 4. 재정 지원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대한 의견 -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에 대한 요구 - 예·결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5. 감사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 횡수 및 내용 -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활용안 6. 공무원의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요구
공공성 확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지원기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 확보의 장애 요인 2.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사항 3. 감사 및 관리·감독의 개선 방안

3) 면담조사

전국의 보육담당 공무원 14명과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방문·조사하였다. 면담은 2006년 7월 18일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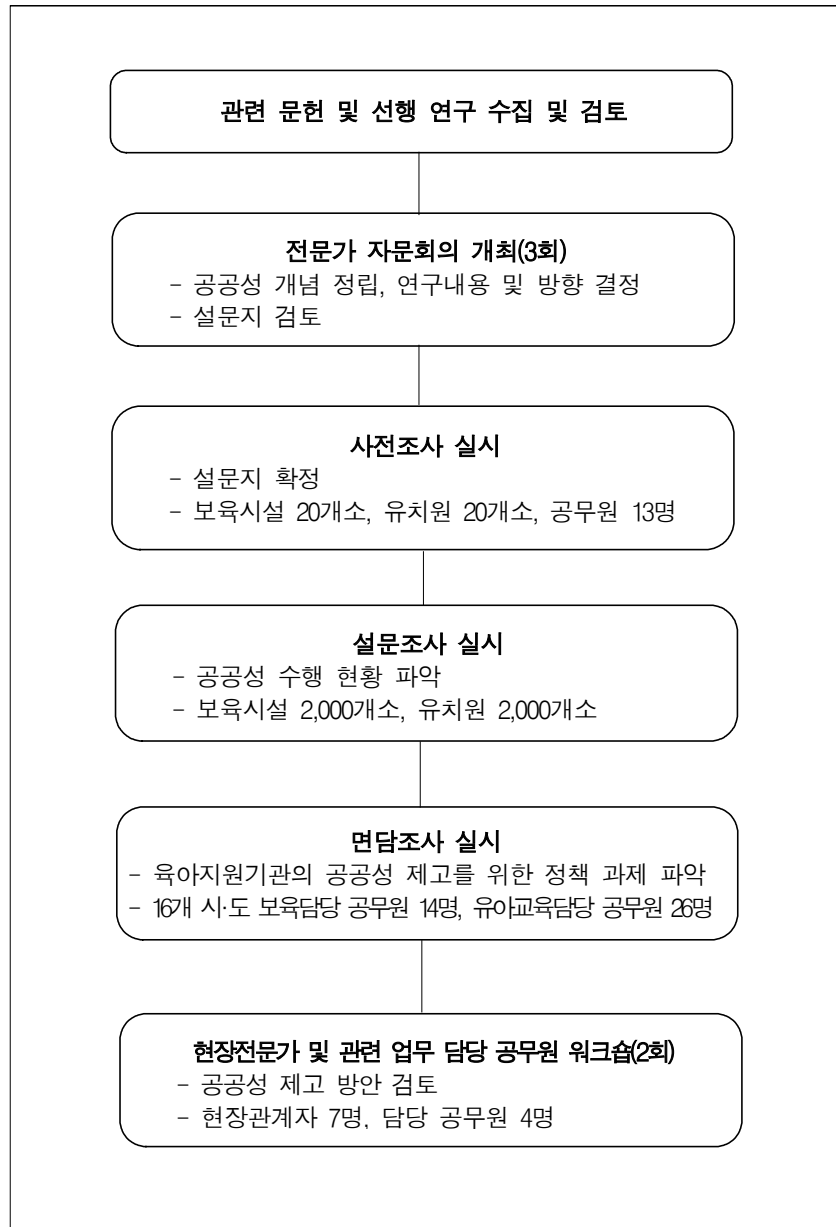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월 중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연구진행의 틀에 대한 자문과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에 관한 올바른 개념의 정립 및 이를 충실히 반영한 설문조사지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 분야 전문가 1명, 사회복지 및 보육분야 전문가 1명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 전문가 워크숍

설문조사와 담당공무원 대상 면담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육아지원기관 종사자, 육아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안된 방안의 현장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였다. 워크숍은 2회에 걸쳐 육아지원기관장들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제1차 워크숍: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2명, 유치원담당 일반직 공무원 1명, 유치원담당 장학사 1명 참석.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 제2차 워크숍: 민간보육시설장 7명 참석.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

바. 연구체계



4. 용어 정의

가. 육아

육아란 말 그대로 아이를 기른다는 뜻으로,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되고 더 이상 부모의 적극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부모 또는 부모 대리자가 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며 가르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육아는 아이가 출생에서부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시기에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러나 보다 어린 시기인 영아기와 유아기의 아동은 그 이후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 육아라는 말은 이 시기의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도 취학 이전 시기까지의 아동인 영아와 유아에 대한 육아만으로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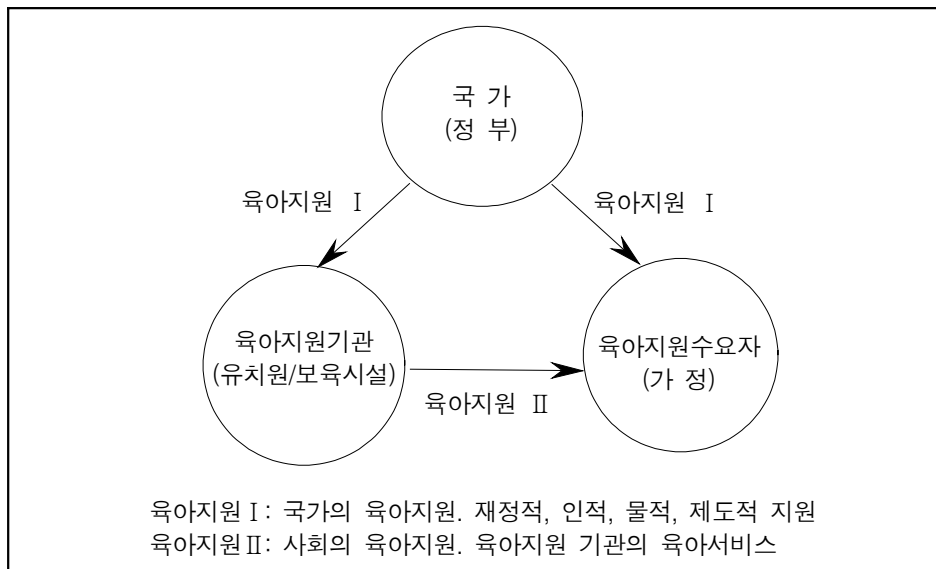
나. 육아지원

전적으로 육아는 가정 내 부모의 역할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진 한편,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현대 사회의 육아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기관, 또는 가족이 아닌 개인에 의해서도 행해지는 변화가 생겼다. 즉, 육아는 개인 및 가정으로부터 이를 포함한 사회 및 국가로 그 책임 소재가 넓어져가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육아는 사회 또는 국가로부터의 육아지원이라는 개념을 수반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육아지원이란 육아를 돕는다는 뜻이나 돕는 주체에 따라 국가의 육아지원과 사회의 육아지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가의 육아 지원은 정부가 국민의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육아를 주로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하며 재정지원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사회의 육아지원은 1차 양육자 이외의 타인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육아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육아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아동 양육을 위한 모든 도움 활동, 즉 사회가 제공하는 육아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육아지원은 때로는 국가차원에서, 때로는 사회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육아지원기관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할 때의 ‘육아지원’은 육아지원기관의 육아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의 육아지원을 뜻한다. 그러나 ‘육아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의 ‘육아지원’은 국가의 육아지원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1] 육아지원의 이중적 개념

다. 육아지원기관

본 연구에서 ‘육아지원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준하여 운영되는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유치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의미에서 학원, 선교원 등도 육아지원기관에 속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보다 많이 공공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지원 및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만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고자 한다.

II. 육아지원과 공공성

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육아를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일로 남겨 두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제 육아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공공의 과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은 ‘공공 부문으로서의 육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육아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국가의 육아 지원에 대해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하게 되며 나아가 정부의 육아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육아에 공공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육아지원기관이 가진 공공적 특성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

우리는 앞 절에서 현대사회의 육아는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공의 영역임을 지적한 바 있다. 육아 지원의 공공성에 대한 필요성 제기는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 구조의 변화와 공공영역으로서의 육아 간 관계를 보여주는 김종해(2004)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볼 때, 육아가 공공의 과제이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를 위해 육아는 사회 공동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2004년 49.8%로 높아졌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조하며(<표 II-1> 참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선행연구(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에 따르면, 취업 기혼 여성은 출산 후 취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첫째아 출산 전후 49.9%, 둘째아 출산 전후 19.3%, 셋째아 출산 전후 22.8%의 취업모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에 대한 부담’(31.4%)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 참조).

<표 II-1> OECD 국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01년)

단위: %

국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OECD 평균
참가율	76.1	75.5	72.7	76.4	60.3

자료: 김애실(2006.4).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 실현 가능한가? 보육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위한 3차 공개 토론회 자료집.

<표 II-2> 여성 취업 장애 요인

단위: %

구분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관행	불평등한 근로조건	가사부담	직업의식 부족	기타	능력부족	계
여성	31.4	27.6	13.0	10.8	8.1	5.0	4.0	100.0
남성	29.3	28.2	12.5	10.6	10.0	5.2	4.3	100.0

자료: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보육·교육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둘째, 약해진 전통적 가족의 기능은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정이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육아 관련 문제는 조부모를 비롯한 대가족이 제공하는 가정 내 지원에 의해 자급자족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는 가정 내에서 육아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에 대한 가정 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급증으로 편부, 편모 가정이 증가하는 것도 가정의 자녀양육 진담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한편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육아활동의 일부를 가족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통계는 육아를 더 이상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II-3>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육아 담당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사회가 육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유희정, 2003).

〈표 II-3〉 모취업별 양육 지원 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 분	취업	미취업	모부재
기관 이용률	71.1	48.9	77.4
보육시설	42.8	20.1	37.0
유치원	16.2	16.3	28.3
선교원	2.4	1.6	1.9
반일제이상 학원	8.5	8.0	11.1
일반학원	10.6	7.6	11.3
공부방	0.3	0.1	-
초등방과후	-	-	-
기타	2.9	4.6	-

자료: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보육·교육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셋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 및 서비스 분야 확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으며(김중해, 2004) 또한 높아진 생활수준과 다양화된 노동시장이 가져오는 상대적 수입의 하락으로 남성의 소득에만 의존하여 가정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현대 가정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지난 12년간 미혼 여성의 취업 태도 변화를 분석해보면, 결혼 후 여성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6.7%를 차지하여 가족 모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표 II-4〉 참조). 따라서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으로 사회는 육아지원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표 II-4〉 미혼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

단위: %, 명

	가정에만 전념	혼인 전 까지만 취업	자녀 성장 후 취업	혼인전과 자녀 성장 후	가정과 관계없이	기타
1990년	21.1	20.2	22.4	22.5	13.7	-
2002년	8.1	5.2	13.8	25.4	35.4	12.0

자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 참고자료(2004. 01.15).

넷째, 노령화 사회를 가속시키는 출산율의 저하는 육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다. 인구의 노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5> 참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표 II-6> 참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기준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절한 노령화 인구의 부양부담(노인인구/경제활동 인구)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계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은 국가의 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

<표 II-5>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단위: 년, %

구 분	도달 년도			소요 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14%	14%→20%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표 II-6> 인구변동 추이

단위: 명(%)

구 분	1970년	1980년	1992년	2002년	2017년	2030년	2050년	2100년
총인구	3,224	3,812	4,375	4,764	4,925	4,822	4,046	1,621
0~14세	1,371(42.5)	1,295(34.0)	1,079(25.6)	979(20.6)	625(12.7)	516(10.7)	324(8.0)	120(7.4)
15~64세	1,754(54.4)	2,372(62.2)	2,970(69.3)	3,407(71.5)	3,630(73.7)	3,154(65.4)	2,201(54.4)	772(47.6)
65세이상	99(3.1)	146(3.8)	220(5.1)	377(7.9)	670(13.6)	1,152(23.9)	1,521(37.6)	729(45.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및 보건사회연구원(2003) 인구추계자료

다섯째, 여성인력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로서 국가의 육아지원은 필요하다. 현 정부가 제시한 국민 소득 2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기관의 확충은 모든 취업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공공 분야로서의 육아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나. 공공 영역으로서의 육아

‘육아가 공공 분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육아의 공공성에 대한 경제학적 입장과 사회복지학적 입장, 그리고 교육학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1) 경제학적 입장에서 본 가치재로서의 육아

경제학 분야의 일부에서는 육아는 공공재(public goods)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육아시장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에 한해서만 정부가 개입할 때 사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비경합성(non-rivalness)은 어느 누가 그것을 소비해도 그 재화의 양이 줄지 않으므로 어느 누구도 그 편익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TV 교육방송은 100만 명이 시청하든 200만 명이 시청하든 그것이 다른 사람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이란 어떤 재화가 집단에 공급되면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어떤 성원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현진권, 2004). 예를 들자면, 등대를 보고 암초를 피함으로써 등대의 혜택을 본 배를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재화들은 시장에서의 실패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정부의 개입이 요청되는 공공재로 분류가 된다(나병현, 2004).

육아의 경우 아동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지원을 일부 경제 계층이나 지역에 속한 아동으로 제한함으로써 육아지원 아동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배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현진권, 2004).

그러나 육아가 경제학적 재화 규정에 의한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육아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김종해, 2004; 김태성, 2006). 즉 이러한 논리는 경제학에서 가치

재에 대한 정부투자의 필요성을 간과한 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가치재란 어떤 재화의 소비가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그 재화를 선택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여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기초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화를 들 수 있다(나병현, 2004).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는 아니나 가치재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지만, 공공성을 갖는 이유이다.

육아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포함된 개념이다. 초·중등학교 교육을 육아와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 아동에 대한 육아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교육이 육아의 연장선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의 대상과 육아의 대상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러므로 교육이 가치재로서 중요성을 인정받는 만큼 육아도 분명한 가치재이다.

2) 사회복지학적 입장에서의 육아의 공공성

사회복지정책이 왜 국가에 의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가를 논하면서 김태성(2006)은 사회복지가 공공 부문이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들었다.

첫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엄격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나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 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수요를 숨기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도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장기제에만 맡겨두면 사회구성원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기제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란 어떤 사람들의 행위가 시장의 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선을 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줄인다면 자선을 안 한 사람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이득, 즉 범죄율의 감소, 집값의 상

승 등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두면 그것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를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게 되면 나도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본인이 제공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면 나도 그것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자선행위에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는 충분한 정보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이나 의료보험, 교육 등을 공급자가 개인일 경우 높은 투자비용 요구와 실패 위험으로 인해 시장에 의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넷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의 선택이란 수요자가 자기 자신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공급자는 정보에 상대적으로 무지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표적인 예는 실업보험으로, 실업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제공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위험의 발생에 대한 예방적 행위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험사들 간의 경쟁이 심한 시장경제에서 민간 기업이 가입자들의 도덕적 태만을 통제하기 위해 수요자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도덕적 태만을 통제하기 위한 기재를 마련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므로 현실적인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지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단일 보험 제공자로서 독점적 상황에서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제·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섯째,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업보험이나 불확실한 미래의 물가수준과 연결되어 있는 노령연금의 경우 국가가 아니고서는 그 위험부담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

일급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경제 주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독점함으로써 재화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에 속하는 대중교육, 전국민 의료서비스, 대량의 공공주택 건설 등은 대규모 경제 주체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김태성, 2006).

지금까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 서비스의 하나인 육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타당성을 갖게 된다.

첫째, 현재와 같은 저출산·핵가족화 사회에서 육아서비스는 아이를 가진 대부분의 국민이 수요를 가지고 있으나 시장의 원리로만 공급을 해결하려 한다면 모든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특히 서비스 이용의 부담이 클 경우, 부모들은 좋은 육아지원기관을 기피할 수 있고, 비용부담 능력의 차이로 인해 서비스의 계층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경제적 능력 차에 기인한 육아서비스의 차별성은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어 사회 결속력과 통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육아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육아서비스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자가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비용을 낮춤으로써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Musgrave, 1959; 김종해, 2006 재인용). 즉, 활성화된 육아서비스의 제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수요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육아가 가진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서비스는 외부효과가 크다. 충분한 육아지원이 있다면 이는 여성 경제 참가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체계적, 과학적인 육아서비스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줄어드는 인구와 변화하는 가치관은 육아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정보를 줄 수 있고, 폐쇄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있는 육아서비스는 개인의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소비자에게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함으로써 국가적인 손실을 낳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와 재화가 공공의 영역으로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며, 사회복지

지적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육아지원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더불어 육아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과 국제화 시대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저해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김종해, 2004).

3) 공교육 개념이 육아의 공공성에 주는 시사

교육학에서 교육의 공공화 즉, 공교육은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고전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나병현(2004)은 공교육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이 하나의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육아는 이러한 교육에 관한 논의로부터 공공 분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교육은 교육의 제공자가 국가이다. 협의로서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에 의한 교육을 의미한다. 광의로서는 교육 관계법과 정책을 통하여 통제, 관리, 지원되는 교육을 말한다. 이는 국가 사무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준하여 교육도 정의로워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학원은 설립요건, 교육비, 교습과목 등의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공교육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공교육의 개념을 국가사무로서의 공교육을 관계법과 정책을 통해 통제, 관리, 지원받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의미로서의 공교육을 규정할 때 교육의 제공자보다는 비용의 주체자에 의해 공교육의 의미가 규정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병현, 2004 재인용).

둘째, 공교육은 공비로 제공되는 교육을 말한다. 미국에서의 바우처(voucher)나 차터스쿨(charter school)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설립·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관점을 넘어서서,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며 정부는 학생의 교육비를 공적으로 조달하여 제공한다(Nadler, 1998; 나병현, 2004). 비용 측면에서 공교육은 의무·무상의 원리에 따라 공비에 의해 지원이 이뤄진다.

셋째, 공교육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계급주의 사회와는 달리 민주사회에서는 교육이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교육 대상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교육은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은 지식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단순히 이미 생산된 지식을 전달하는 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공교육은 공익을 추구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동선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동선의 추구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다. 그래서 국가나 준국가적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표준으로 보고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공교육의 특성을 육아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첫째, 공공 영역으로서의 육아는 국가가 그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종해(2004)와 유희정(2003)에 의하면, 육아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국공립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후원’과 육아지원기관이 공공이 원하는 수준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란 두 가지의 개념에서 육아지원의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둘째, 보편주의적 육아지원(서문희, 2002) 원리에 의해 육아는 모든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셋째, 육아서비스의 내용 또한 보편적이고 공통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으로서의 육아는 공익을 추구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경제학적 논의의 ‘가치제’라는 개념과도 유사하며 사회복지학적 논의의 ‘긍정적 외부효과’와도 연결된다. 즉, 공공 부문으로서의 육아에 대한 지원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미래 인적자원의 개발 등 많은 영역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발생적 인식론자인 피아제(J. Piaget)는 그의 인지발달이론을 통해 인간의 인지적 능력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일임을 제시하였고(문용린, 1996) 유아 및 아동기에 접하게 되는 질 높은 환경과 풍요로운 자극이 인간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의 발달심리학자인 에릭슨(E. Erikson)은 인간의 사회성이 발달하는 것은 생애 초반기부터이며 특히,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 등은 취학 전에 이미 완전히 갖추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육아”라고 일컬어지는 영유아기에 일어나는 활동이 개인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깨우침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육아는 이제 가정을 넘어선 사회와 국가 전체의 과업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초등학교 이상을 포함하는 교육만이 가치로운 것으로서 국가가

개입하여 소비를 균형되게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일직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육아도 가치재로서 국가의 지원이 동일하게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육아를 가치재로 분류함으로써 공적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경제학에서 육아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개입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배치되며, 사회복지적 서비스는 국가의 지원 위에 성립될 수 있다는 사회복지학적 입장에 부합하며, 또한 육아를 공교육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게 하는 교육학적 논의와도 상치되지 않는다.

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육아지원기관

육아가 공공분야의 일이라면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공공 기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육아지원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국공립시설만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웠으므로, 육아는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더 많이 의존해왔다. 이런 까닭으로,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을 육아라는 공공의 역할을 지원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수용해야 할 것인가는 국가의 육아 정책 수립 및 재정 지원의 문제와 맞물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취학 전 육아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의 경우를 보자. 가치재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학교는 국공립과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 재단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전체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들은 누구에 의해서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며 공공의 과업으로서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립 중·고등학교가 공공기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법(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며 무엇보다 '학교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민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사무의 검사, 정관변경, 또는 임원개선의 명령 등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민법 제37조). 즉, 초·중등 사립학교는 공히 영리를 추구

하지 않는 법인이므로 그 역할과 위상에 있어 공공성이 의문시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예로부터 민간 또는 사립 육아지원기관이 공공의 영역이 되기 위해 무엇이 담보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육아지원을 민간 설립 기관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이들을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차선책으로 국가의 공비(公費)를 지원함으로써 그 공공적 기능을 확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처럼, 육아지원기관이 비영리적 성격을 띤 공공 기관으로 변환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국가의 공비를 이용해 사인(私人)의 영리추구를 지원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공공성 제고의 방법은 모든 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보육시설이나 사립유치원 등 민간이 설립한 육아지원기관들은 그 재정규모 면에서 법인화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애당초 설립 의도가 개인의 영리추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가치관은 정부로 하여금 육아를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공공성 제고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되는 방안이 민간이 설립한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공교육의 기준이 주는 시사점에 비추어, 육아지원기관의 육아서비스가 보편적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내용을 공익 추구의 방향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감독되어야 한다.

라.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일반적으로 ‘공공성(publicness)’이란 ‘공적인 특성이나 상태, 혹은 대중에 의해 소유된 것’, ‘사회 일반이나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 즉 ‘공공인 것’은 공동체나 국가 전체의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들을 위해 이루어지며, 국민 전체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사무가 관련되어 공비(公費)와 공적 통제에 의해 유지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공성’은 세 가지의 구분된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 행정에 관계된 공

적(official)인 것, 특정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통의(common) 것, 누구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는(open) 것이다(나병현, 2002).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하위 개념에 비추어, 육아지원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공적 측면의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육아지원기관은 국가 행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육아비용은 국가의 자금, 즉 공비(公費)이므로 지원이 전달되는 체계는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절차를 거친다. 또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육아지원기관은 공비를 공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지원된 공비의 사용이 불합리하고 사적이 되면 그 기관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지원한 비용의 사용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즉, 국가 지원이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그 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복리를 위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아지원기관이 가지는 첫번째의 공공적 특성은 ‘공적 지원 및 관리’와 관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관리를 살펴보면, 정부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원아수, 교사, 재정, 시설 환경에서 관련법과 행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효율적으로 행정적 재정을 위해 적정 수와 역할을 고려한 공무원의 확보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육아지원기관은 공통적 또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다. 사회의 육아지원, 즉 육아지원기관의 육아서비스는 어느 특정 부류, 특정 계층,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大衆), 모든 계층의 국민이 대상이 되며 동일한 내용, 동일한 질적 수준의 서비스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기관 간 질적 형평성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즉, 각 육아지원기관이 일정한 수준이 보장되는 시설 및 환경을 구비하고 일정한 수준이 보장되는 교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한 수준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서의 보편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보편성 확보의 정책적 방안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실시, 유치원장학 지도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학부모나 지역 성원들이 공익의 준거

를 제시하는 대변인으로서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 왔다.

셋째, 육아지원기관은 개방적이다. 즉 육아지원기관은 관련된 모든 공간과 정보, 육아 활동, 국가 지원 등을 개방하여 누구나 그 기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한다. 더불어 육아지원기관은 임의적, 선택적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국가 및 육아 수요자가 원하는 한 언제라도 자신들의 육아 지원 현장을 개방하여 정보가 폐쇄되고 사적으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육아지원기관은 누구에게나 자신들이 받은 공적 지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예·결산의 시행 및 운영이 원장에 의해 집행되는 체제에서는 과대 책정 예산, 정부 지원금의 누수 사례 등이 종종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방성의 확보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예·결산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지원이 서비스 향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는 첫번째의 공공적 특성인 공적 지원 및 관리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국가의 지원 및 관리는 육아지원기관의 개방성 준수와 보조를 같이 할 때 그 실효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개방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회계장부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다. 육아지원기관의 수입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 지원금의 운영에 대한 공개와 자동이체, 지로 납부 등을 통한 투명한 납입금 수령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개방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함께 제시되고 있다. 육아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의 의무화 등의 방안도 제안되어 왔다. 또한 재정 운영에 대한 윤리교육의 강화와 재정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 온 정책이다.

개방성은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질적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방성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계장부의 공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서비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함으로써 사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육아지원기관의 재정, 서비스 및 운영 전체를 학부모로부터 평가받고 수요자의 요구를 직접 수용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공공성의 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정착·확대를 위해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정규화 하도록 육아지원기관을 계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육아지원정책의 추진 현황

정부가 육아지원을 공공정책으로서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에 대하여 관련법의 제정, 재정투여 현황, 시설 및 영유아 확대 현황, 서비스 수준 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육아지원 관련 법

육아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들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의 법적 기반과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이 일어난 2004년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영유아보육법 이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근거가 되는 최초의 법은 아동복지법(1961. 12)이다. 이로써 탁아사업은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이후 아동복지법이 전문 개정되어 아동복지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이유는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 특성과 능력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1982년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은 「유아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이 법에 의한 유아원을, 새마을유아원이라 함은 유아를 보육하거나 유아와 영아를 함께 보육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을 구분하였으며, 기존의 모든 탁아시설들(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은 통합되어 새마을유아원으로 명칭을 통일하게 되었다. 새마을유아원은 학령 전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설로서 특히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탁아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하였다.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직장탁아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보육을 포괄하는 최초의 법은 영유아보육법(1991. 1)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른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실시의 어려움이 있어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다. 이로써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된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까지 확대하여 민간보육시설과 놀이방이 법정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는 1993. 12. 31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04. 1)

영유아보육법의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편적 보육개념의 도입,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인가제 환원 등 관리·감독의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이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II-7> 영유아보육법 관련 개정 사항

보육목적	·선별적 보육 → 보편적 보육(모든 영유아 대상)
보육시설의 종류	·민간시설을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분리 ·부모협동보육시설 추가
보육시설 인가	·보육시설 설치 시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환원
보육교사 자격	·관련 학과 졸업에서 관련 학과목 및 학점 이수제로 변화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 교부 ·보육교사 경력: 시설→정부(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시설종사자·보호자 대표·지역사회 인사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연계 및 투명성 강화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개발원 설치	·보육에 관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총괄할 보육개발원 설치

2) 유아교육 관련법의 변천

우리나라 유아교육 관련 최초의 기본법은 ‘유아교육진흥법’으로 부터 발전하여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이다.

가) 유아교육법 이전의 법적 근거

유치원은 초기에 교육법(1949. 12)에 의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초·중등교육법(1952)이 유아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동법에서는 유치원의 설립인가, 원아 수, 교육과목, 교육 일수 등을 규정하였다.

최초로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된 것은 문교부령(1969)에 의해서이며, 이후 유치원 교육과정은 제 5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나) 유아교육법의 제정

유아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최초의 유아교육법이 2004년 1월 제정되었다. 동법은 유아교육 체제를 공교육화함으로써 기간학제화 하고 장기적으로 만 5세 무상교육화를 실현해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는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비용지원, 평가 등을 초·중등교육법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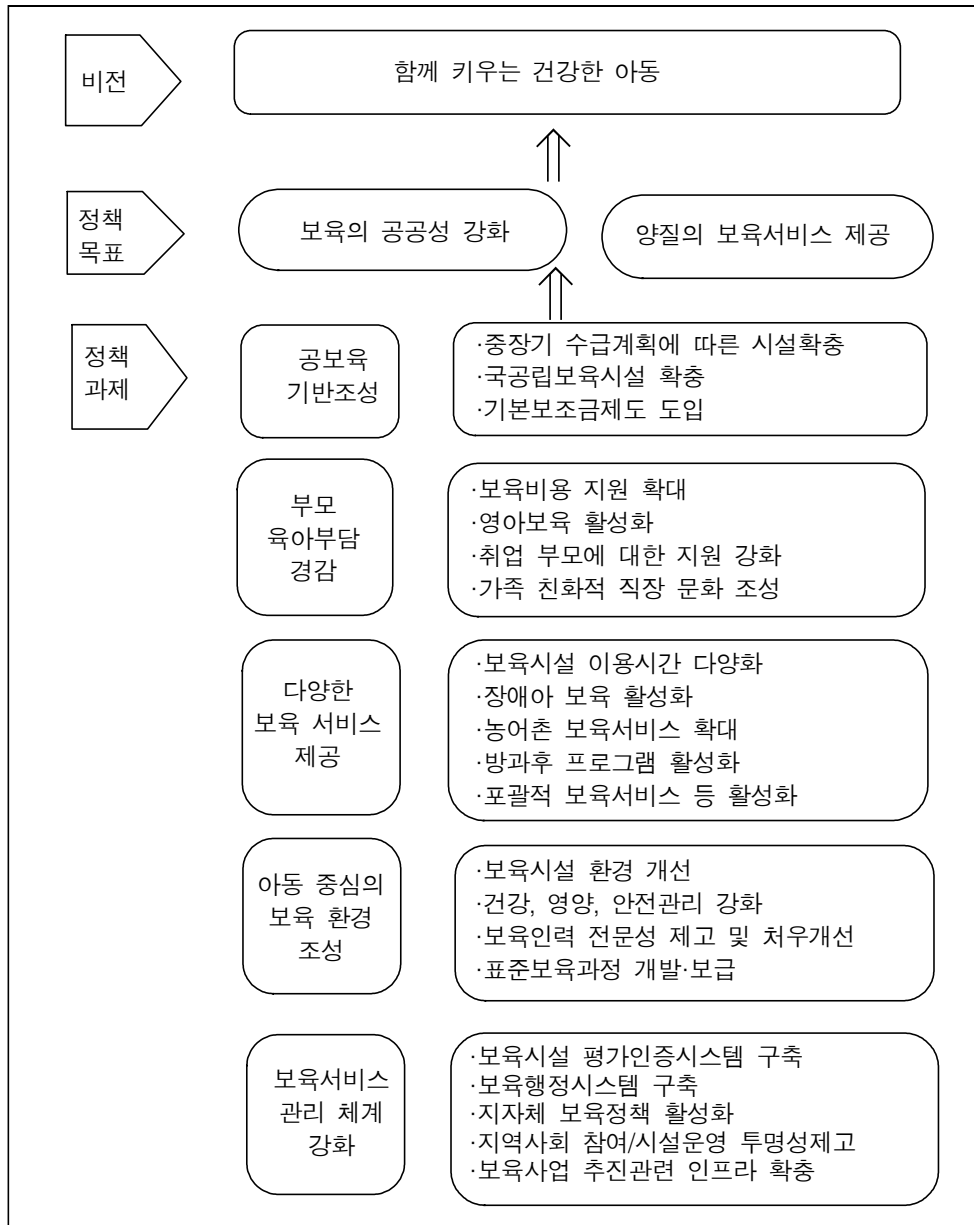
이상에서와 같이 보육과 유아교육은 2004년을 기점으로 공히 공교육·공보육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 주요 육아지원 정책

1) 보육정책

정부의 주요 육아지원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 새싹플랜」이 대표적이다.

가) 보육정책 추진 방향



나) 추진 과제

 기본 방향

- ▷ 지역별 수급 현황에 따른 중·장기 보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으로 보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05년 46.0% ⇒ '10년 60.0%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05년 1,352개소 ⇒ '10년 2,700개소
 - ▷ 기본보조금 및 보육료 지원 확대로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정부 재정분담률: '05년 35.8% ⇒ '10년 60.0%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지원 아동: '05년 41.7% ⇒ '10년 80.8%
 - ▷ 아동별 기본보조금 지원 확대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부모 육아부담 경감
 - 기존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지원방식 전환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보육료를 국공립·법인 수준으로 조정
 - ▷ 장애아,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 ▷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시설 환경 개선, 건강·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시설 평가인증제 및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강화
-

다) 주요 지표 변화

주요지표		2005	⇒	2010
보육비용 정부 재정 부담률		35.8%	⇒	60.0%
국공립보육시설 수		1,352개소	⇒	2,700개소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97만명	⇒	125만명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41.7%	⇒	80.8%
보육시설 종사자 수		131천명	⇒	180천명
민간보육시설 보육비용/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80%수준 (2006년)	⇒	100%수준
평가인증대상시설		1,000개소 (시범운영)	⇒	전면실시 (매년 1만 개소)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유아 영아	46.0%	⇒	60.0%
		68.6%	⇒	88.4%
		19.5%	⇒	33.4%

2) 유아교육정책

정부의 유아교육 중장기 계획이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방향과 과제⁶⁾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오고 있다. 최근의 검토 및 논의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유아교육 정책 환경 진단

대내외 환경을 진단해 볼 때 유아교육은 풍부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 정책 추진 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점 못지 않게 많은 약점과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음. 약점은 개선하고 위기요인은 적극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6) 박영숙(2006). 유아교육·보육정책 방향과 과제. 육아정책포럼 창간호, pp. 50-53.

구 분	내 부 역 량	외 부 환 경
강점/ 기획 요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우수한 교사 양성기반 확보 ·장학 등 행정 지원체제 구비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5세아 무상교육 실시 당위성 제고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유아학교로서의 위상 정립 요구 증가 ·유치원 기간학제 포함 요구 증가
약점/ 위기 요인	·보육서비스 제공 취약 ·소요자원 확보의 어려움 ·유아대상 학원의 지원 요구	·출산률 감소 ·보육 강조 분위기(여성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원 확대

[그림 II-1] 유아교육 정책 환경

나) 추진 과제

기본 방향

▷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 양극화 해소 및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유아들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취원율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초등교육과의 연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 '09년부터 전체아동의 80%(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30%까지 지원할 계획임.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06) → 100%('07, '08) → 130%('09, '10)

▷ 유아교육의 보편화 추진

- 인적자원 개발은 영아 보육 - 유아교육 - 초·중등교육 - 대학교육 - 평생교육 등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만 5세뿐 아니라 3, 4세 유아의 유치원 접근기회 확대를 통하여 유아교육을 보편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만 3, 4세 유아에 대한 차등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임.
- 유치원 설립기준을 검토하여 통합 육아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복합건물에도 유치원 설치를 인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구축,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고취 등을 위하여 유치원의 유아학교 체제 전환을 검토할 계획임.
- * 유치원은 일제식 표기이며, OECD 국가 대부분은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 맞벌이 부부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유치원의 보육 기능 확대가 불가피해졌음. 이를 위해 유치원의 수업일수 연장과 방학기간 운영을 유도하고 있음.
- * 2005년 현재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종일제 유치원의 비율은 62.5%이고, 이용 유아는 31.5%임.
- 유아교육과 보육기능을 통합한 육아지원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유휴시설에 병설유치원과 보육시설(영아반)을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영아보육 통합 실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유치원 교육의 책무성 제고

- 유치원의 교육 질적 수준 제고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을 적용받는 학교이기 때문임.
- 국가는 물론 단위 유치원의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및 NEIS 가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학·행정지도 강화, 유치원회계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임.
-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농어촌지역과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도시 40개 지역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함.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3,295명에 대한 월 11만원의 수당 43억을 확보함. 그 외 도시지역의 15,958개 학급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수업자료개발 제작비를 월 1백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160억원을 확보함.

다. 육아지원 현황

1) 육아지원 재정

육아지원 재정은 유아교육지원 예산과 보육지원 예산, 농어촌자녀지원예산이 있다. 이 세부분을 통합한 총액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1조 631억원으로 전년대비 34.3% 증가하였고, 2004년도에는 1조 3,494억원으로 전년대비 26.9%, 2005년도에는 1조 9,738억원으로 전년대비 46.3%, 2006년도에는 2조 9,555억원으로 전년대비 49.7%가 증가하는 등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육예산은 2006년도 7,817억원에서 2007년도 1조 446억원으로 33.6% 증액될 전망이다.

〈표 II-8〉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 현황(2002~2006년)

단위: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교육부/유아교육 지원	3,558 (209)	4,080 (257)	4,742 (345)	6,383 (871)	8,860 (1,996)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 지원	4,355 (2,102)	6,551 (3,120)	8,752 (4,050)	13,355 (6,001)	20,381 (7,817)
농림부/농어촌자녀 양육비	-	-	(255)	(223)	(314)
계	7,913 (2,311)	10,631 (3,377)	13,494 (4,650)	19,738 (7,095)	29,555 (10,127)

주: ()는 국비지원액임.
자료: 니정, 서문희(2005)에서 재인용. 교육인적자원부, 각 년도 예산현황 및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여성부, 각 년도 『보육사업 안내』.

2) 기관 및 영유아 현황

가) 영유아 현황

보육영유아는 2006년 6월 현재 총 1,006,842명으로 국공립시설 112,746명(11.2%), 민간법인 및 법인 외 176,698명(17.6%), 민간개인 566,142명(56.2%), 직장보육 14,044명(1.4%), 가정보육 136,156명(13.5%)이다.

<표 II-9> 보육아동 현황(2006. 6)

단위: 명(%)

구 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법인 외 보육시설	개인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보육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영유아수	1,006,842 (100.0)	112,746 (11.2)	121,396 (12.1)	55,302 (5.5)	566,142 (56.2)	1,056 (0.1)	136,156 (13.5)	14,044 (1.4)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2006. 11)

보육영유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66,799명 증가, 2003년 57,354명, 2004년 71,907명, 2005년 50,360명, 2006년 6월 15,849명 증가하여 매년 영유아 수가 크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 연도별 보육 영유아 현황

단위: 명(%)

년도	총 영유아수	보육시설 취원아수	증가영유아수
1995	3,977,000	293,747 (7.4)	증 74,439
1997	4,002,000	520,959(13.0)	증 117,958
2000	3,969,179	686,000(17.3)	증 45,085
2001	3,854,184	734,192(19.0)	증 48,192
2002	3,720,013	800,991(21.5)	증 66,799
2003	3,598,194	858,345(23.9)	증 57,354
2004	3,497,255	891,028(25.5)	증 71,907
2005	3,158,538	941,388(29.8)	증 50,360
2006	3,011,800	957,237(31.8)	증 15,849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 6세이상 49,605명(2006)

유치원 취원아는 2006년 6월 현재 총 545,812명으로 국공립시설 121,324명(22.2%), 사립 424,488명(77.8%)이다.

〈표 II-11〉 유치원 아동 현황(2006. 6)

단위: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립
영유아수	545,812(100.0)	121,324(22.2)	424,488(77.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6)

유치원 취원아 수는 보육시설 취원아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연도에 따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매년 54만~5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12〉 연도별 유치원 영유아 현황

단위: 명(%)

년도	총 영유아수	유치원 취원아수	증가 영유아수
2000	3,969,179	545,263(13.7)	증 11,097
2001	3,854,184	545,142(14.1)	감 121
2002	3,720,013	550,256(14.8)	증 5,114
2003	3,598,194	546,531(15.2)	감 3,725
2004	3,497,255	541,713(15.5)	감 4,818
2005	3,158,538	541,603(17.1)	감 110
2006	3,011,800	545,812(18.1)	증 4,20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해당 년도.

유치원과 보육시설 취원아를 합하였을 경우의 취원율은 2000년도 31.0%에서 2003년도 39.0%, 2005년도 47.9%, 2006년도 49.9%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3〉 연도별 육아지원기관 이용 영유아 현황

단위: 명(%)

연도	총 영유아수	총취원아수			취원율
		보육시설 취원아수	유치원 취원아수	계	
2000	3,969,179	686,000(17.3)	545,263(13.7)	1,231,263	31.0
2001	3,854,184	734,192(19.0)	545,142(14.1)	1,279,334	33.2
2002	3,720,013	800,991(21.5)	550,256(14.8)	1,351,247	36.3
2003	3,598,194	858,345(23.9)	546,531(15.2)	1,404,876	39.0
2004	3,497,255	891,028(25.5)	541,713(15.5)	1,432,741	41.0
2005	3,158,538	941,388(29.8)	541,603(17.1)	1,482,991	47.9
2006	3,011,800	957,237(31.8)	545,812(18.1)	1,503,049	49.9

나) 기관 현황

2006년 6월 현재 총 보육시설 수는 28,761개소로 이중 국공립시설은 5.2%(1,507개소)이며 민간법인 및 법인 외 시설은 8.7%(2,479개소)이다. 민간 개인시설은 44.7%(12,860개소)로 전년대비 0.3% 줄었으며 반면 놀이방은 40.2%(11,575개소)로 2000년 이후 매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1.0%(291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개인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86.1%(24,775개소)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육현장이 민간에 의존한 운영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관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II-14〉 보육시설 설치 현황 II(2005~2006년)

단위: 개소(%), 명

연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법인 외 보육시설	개인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보육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2005	28,367 (100.0)	1,473 (5.2)	1,495 (5.3)	979 (3.5)	12,769 (45.0)	42 (0.1)	11,346 (40.0)	263 (0.9)
2006	28,761 (100.0)	1,507 (5.2)	1,484 (5.2)	995 (3.5)	12,860 (44.7)	49 (0.2)	11,575 (40.2)	291 (1.0)

○〈표 II-15〉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 현황(1995~2004년)

단위: 개소(%), 명

연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놀이방 (가정)	아동수
			소계	개인	법인 외	법인			
1995	9,085 (100.0)	1,029 (11.3)	4,125 (45.4)	3,175 (34.9)	22 (0.3)	928 (10.2)	87 (1.0)	3,844 (42.3)	293,747
1997	15,375 (100.0)	1,158 (7.5)	8,172 (53.2)	6,388 (41.6)	150 (1.0)	1,634 (10.6)	158 (1.0)	5,887 (38.3)	520,959
2000	19,276 (100.0)	1,295 (6.7)	11,304 (58.6)	8,970 (46.5)	324 (1.7)	2,010 (10.4)	204 (1.1)	6,473 (33.6)	686,000
2001	20,097 (100.0)	1,306 (6.5)	11,794 (58.7)	9,490 (47.2)	313 (1.6)	1,991 (9.9)	196 (1.0)	6,801 (33.8)	734,192
2002	22,147 (100.0)	1,330 (6.0)	12,679 (57.0)	10,471 (47.0)	575 (3.0)	1,633 (7.0)	199 (1.0)	7,939 (36)	800,991
2003	24,142 (100.0)	1,329 (5.5)	13,644 (56.5)	11,225 (46.5)	787 (3.3)	1,632 (6.8)	236 (1.0)	8,933 (37.0)	858,345
2004	26,903 (100.0)	1,349 (5.0)	14,728 (54.7)	12,225 (45.4)	966 (3.6)	1,537 (5.7)	243 (0.9)	10,583 (39.4)	930,252

자료: 여성가족부(2004. 12). 보육통계

유치원의 기관수 역시 취원아수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다. 2000년도 8,494개소이던 유치원은 2002년 8,308개소, 2005년 8,275개소로 다소 감소하여 2006년도에는 8,290개소이다.

〈표 II-16〉 연도별 유치원 설치 현황(2000~2006)

단위: 개소(%), 명

연도	계	국공립	사립	원아수
2000	8,494(100.0)	4,176(49.2)	4,318(50.8)	544,771
2001	8,329(100.0)	4,209(50.5)	4,120(49.5)	545,152
2002	8,308(100.0)	4,219(50.8)	4,089(49.2)	550,150
2003	8,292(100.0)	4,284(51.7)	4,008(48.3)	546,531
2004	8,246(100.0)	4,328(52.5)	3,918(47.5)	541,713
2005	8,275(100.0)	4,412(53.3)	3,863(46.7)	541,603
2006	8,290(100.0)	4,460(53.8)	3,830(46.2)	545,81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2006년도에는 보육시설 28,761개소, 유치원 8,290개소로 총 37,051개 육아 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3) 서비스 수준관리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행·재정 감사가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다. 서비스 수준 지도에서는 유치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장학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보육시설은 2005년도부터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 유치원

유치원의 장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유치원 장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장학의 유형별 특징, 장학의 절차를 소개하였으며 최근의 다양한 장학의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1) 유치원 장학 개관

유치원 장학의 목적은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유아의 인성교육과 단위유치원 교육력의 자율적 향상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성과 책무성의 강조와 장학 결과를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장학에서는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도 교육감의 권한 하에 각 단위 유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유치원은 중앙 정부에 의한 획일적 장학 방식이 아닌 각 시·도 교육감의 자치 권한 하에 유치원 장학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 및 지역 교육청별로 각 지역과 단위 유치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장학이 수행되고 있다. 물론 국가수준에서 유치원 교육의 질을 보장 및 유지하기 위해서 유치원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함으로써 단위 유치원의 책무성도 강조되고 있다. 현재는 6차 유치원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수업 구성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이 지역 및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주체(교원)와

교육의 대상(유아 및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유치원 공동체의 유치원 경영의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원과 학부모가 단위유치원의 자율장학을 계획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수업과정 운영에 있어서 보다 민주적인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 장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수 사례의 일반화 및 개선 요망 유치원의 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과 단위유치원 차원에서 실시된 장학은 공통적으로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학지도가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유치원 장학은 각 시·도 교육감의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유형의 장학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각 단위유치원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단위유치원 별로 스스로 유치원 장학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치원 장학은 그 유형과 실시 횟수에 있어서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치원 장학의 특성과 지역별 다양성과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장학의 유형별 특징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유치원 장학의 차이를 정리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장학의 유형별 특징

지역별로 다양성을 지니는 장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과 인천의 장학의 유형에 대해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유치원의 행정체계는 크게 교육청, 지역교육청, 유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도교육청은 본청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데 전국 16개 시·도에 하나씩 분포하고 있다. 매해 시·도 교육청은 유아교육 계획, 지역교육청은 유치원운영 종합계획, 단위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육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계획들에 장학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장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장학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시·도 교육청 주관, 지역교육청 주관, 유치원 주관 장학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서울시

서울특별시 교육청(본청)	서울시 유아교육 계획 표집장학
지역 교육청	() 교육청 유치원 운영 종합계획 담임 장학, 종합 장학, 요청 장학, 사이버 장학, 지구 자율 장학
유치원	() 유치원 교육계획 원내 자율 장학

② 인천시

인천광역시 교육청(본청)	인천시 유아교육 계획 지구별 자율협의 장학, 특별 장학, 요청장학, 통신 장학
지역 교육청	() 교육청 유치원 운영 종합계획 맞춤 지원 장학, 담임 장학, 요청 장학, 지구 자율 장학, 사이버 장학 및 통신 장학
유치원	() 유치원 교육계획 원내 자율 장학

[그림 II-2] 유치원 장학 체계의 사례

서울시와 인천시 장학의 다양성과 유치원 장학의 주체에 따른 차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된 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시와 인천시의 장학의 주체에 있어서 차이에 주목해 보면, 서울시의 경우 시교육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학은 표집장학이 있으며, 지역교육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학은 담임장학, 종합장학, 요청장학, 사이버장학, 지구자율장학이 있다. 그리고 유치원 단위로 이루어지는 원내 자율장학이 있다. 반면에 인천시의 경우에는 시에 의해 주관되는 장학이 좀 더 많다. 예를 들면(서울시의 종합장학과 담임장학을 합쳐 놓은 성격의) 지구별 자율협의 장학, 특별장학, 요청장학, 통신

장학이 있다. 그리고 유치원에 의한 장학에는 서울과 같이 원내 자율장학이 있다.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장학의 유형과 명칭 및 주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치원 장학의 특성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유치원 장학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전국의 유치원 전체 장학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각 지역별로 수행되는 장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본 절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유치원 장학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유치원 장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집장학은 서울시교육청이 세운 유아교육계획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단위 유치원의 수행실태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장학이다. 평가 주체는 시의 장학관과 장학사이다. 지역교육청은 3배수 정도의 유치원을 시교육청에 추천하며, 시에서는 무선표집에 의해서 지역교육청별로 1~2개원을 표집장학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학의 결과에 따라 학교경영우수유치원 표창을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해의 유아교육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표집장학의 성격을 띤 장학이 지구별자율협의장학이라고 불려진다.

담임장학이란 각 유치원별로 배정된 담당장학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학이다. 지역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담임장학을 실시하며 장학사는 결과를 담임장학협의록(<부표 II-1> 참조)에 기록하여 유치원의 특색·개도 사항을 파악 및 기술한다. 이렇게 수집된 결과를 본청에 년 2회 보고한다. 담임장학은 가장 보편적인 장학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개도의 책임은 원장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단위 유치원의 의지 정도에 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도가 결정된다.

종합장학은 장학요원제라고 해서 장학사 뿐만 아니라 교원, 일반직공무원, 지역인사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을 이루는 집단에 의한 유치원 평가이다. 장학담당자는 종합장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개도 사항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장학은 담임장학에 비해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이 더욱 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 II-17〉 유치원 장학협의 관점 양식

유치원 장학협의 관점

유치원

영역	장학협의 관점	평점		
		상	중	하
1.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1. 유치원 교육의 정상 운영			
	2. 6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한 교육계획 수립			
	3. 유아의 흥미, 요구, 발달단계를 고려한 놀이 중심의 수준별 일과 운영			
	4.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 전개			
	5. 독서교육의 활성화			
	6.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 평가 실시(유치원, 교사, 원아)			
2. 인성 교육 내실화 추진	1. 기본생활습관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도			
	2.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육 및 근검절약의 생활화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전개			
	4. 세계문화 이해교육 및 통일교육 실시			
3.유치원 자율성·책무성 제고	1. 자율, 책임과 참여를 존중하는 유치원 운영			
	2. 교원의 연수기회 및 자율 연수 기회 제공			
	3. 자율장학 활동의 활성화(원내: 수업, 동료, 자기장학 등)			
	4. 원장 중심의 책임 경영제 운영			
	5. 교원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임면보고, 교원연금 가입)			
4.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	1.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및 부모교육 실시			
	2. 지역사회 문화를 위한 센터 역할			
	3. 지역의 요구에 적절한 에듀-케어 교육 실시			
	4. 기 보급된 장학자료의 적극 활용			
5.유치원 운영관리	1. 실·내외의 다양한 흥미영역 구성(풍부한 교재·교구)			
	2. 유·희실·실외놀이 시설확충 및 안전관리 철저			
	3. 통원버스 운행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보험가입)			
	4. 유치원 실·내·외 환경의 위생 상태(급·간식, 식수, 교구 등)			
	5. 각종 문서 관리 상황			

자율적으로 교육청에 의뢰하여 실시되는 장학에는 요청장학과 사이버장학이 있다. 요청장학은 종합장학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유치원의 자율요청에 의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지역교육청에 의해 지정되어 실시되는 종합장학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장학사와 유아교육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학팀에 의해 평가팀이 구성되며 유아교육 전문가, 일반직 공무원을 장학요원으로 하여 실시된다는 점과 종합장학 시 사용된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종합장학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장학결과는 장학협의 관점 양식(<표 11-17> 참조)에 기록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의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다.

사이버장학이란 지역교육청이나 단위유치원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자율장학의 한 형태이다. 인천시의 경우 사이버장학이 주관부처에 따라 약간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통신장학, 지역교육청과 유치원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사이버장학 및 통신장학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지구별 자율장학은 지역교육청 안의 지구라는 구성단위 안의 유치원 간 자율장학을 의미한다. 간사유치원 주관 하에 다양한 장학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구별 장학의 형태는 지역교육청 주관 하에 수행되지만 인천의 경우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구별자율장학협의를 주최하여 지구별 장학을 더욱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치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장학에는 원내 자율장학이 있다. 원내 자율장학은 원장, 원감, 유아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원내 자율 장학협의회를 통한 장학계획을 수립하고 교사의 실정에 맞게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을 실시한다. 임상장학은 신입교사를 위한 장학이며, 동료장학은 교사 간의 장학이며, 자기장학은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수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 이외에도 개별 유치원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안전점검이 매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로 인해 개별 단위유치원은 격년 주기로 점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8〉 유치원 장학 종합표

주관처	종류	국공립	사립	담당기관 및 담당자	주요내용 (도구 등)	비고
본청 (시·도 교육청)	표준장학 학	·지역교육청의 3배수 추천 →본청에서 무선 표집 →지역교육청별 1~2개원(학기별)		·본청(서울시) 장학관(사)		·1, 2학기 분할 실시 ·우수유치원은 교육감 표창 (별도 심의)
지역청 (시·군·구 교육청)	담임장학 학	·학기별 최소 1회 이상 *지정위탁 기관 포함	·년 1회	·지역교육청 담임장학사 →학기별로 본청에 보고	·「유치원 장학협의록」 (원장결재), 자체평가표 작성·제출	
	요청장학 학	·지역 내 전체(10개) ·3월 중 신청	·6개 (71개 중)	·유치원 요청 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팀 구성, 장학요원 (전문가) 위촉 →유치원에 안내	·장학협의록	·「요청장학신청서」 제출 →장학담당자는 결과 보고서(시설·행정·전산 관리포함) 작성 →교육장 결재 →지역청 내에서의 지원책 강구
지역청 (시·군·구 교육청)	중앙장학 학	·2~3년에 한번씩 *병설은 초등장학 지도시 실시 *단설은 별도 계획수립		·장학사, 일반직 공무원, 지역인사로 구성	·1일 장학 원칙	·장학담당자는 결과 보고서 작성 *담임장학과 겸하여 실시 가능
	사이버장학 학			·지역교육청별 홈페이지, 유치원 홈페이지, 이메일 이용 *주로 자율장학 요원들에게		
	지구자율장학 학			·지역교육청 내 유치원 *간사유치원 중심으로 운영 →지역교육청에 보고		·「지구자율장학협의회」 조직·운영
유치원	원내자율장학 학			·각 유치원 *담임장학사 확인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원내자율장학협의회」 구성·운영 ·영역별연구회, 「지구 자율장학협의회」와 연계·운영
지역청 (시·군·구 교육청)	안전점검 검	·초등학교 점검시 포함	·매해 50%의 유치원 실시 (격년)	·지역교육청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유치원 장학은 각 시·도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위 유치원별 장학의 횟수와 유형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유치원의 장학지도는 국공립은 연간 3~5회, 사립은 연간 1~3 회 정도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매년 3회 정도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1회 이하로 실시되고 있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실시되는 장학과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는 시·도에 보고하게 된다.

참고로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인증제도 이외의 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이 없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는 년 1회,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년 1회 미만의 관리·감독이 실시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서로 다른 관리·감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올바른 질적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장학의 실제: 요청장학을 중심으로

단위 유치원 간에 외부장학의 횟수의 주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요청장학의 횟수이다. 요청장학은 유치원의 요구에 따라 행해진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학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우선은 유치원 교육 현황 안내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유치원의 기본현황, 유치원 교육의 운영 방향, 2006년 유치원 교육 노력 중점 사항 등을 파악한다. 참석자는 담당장학사, 자율장학요원, 원장과 원감이다. 준비물은 요람과 유치원 운영 계획이다. 다음 단계는 교육활동 및 시설의 공개이다. 공개 내용은 교육활동 공개, 실내·외 시설의 공개이다. 참석자는 담당장학사, 자율장학요원, 원장과 원감이다. 이를 위해 일일교육계획안을 준비한다. 다음으로는 교육 실천사항을 협의한다. 2006년 유치원 교육 실천 내용, 장학협의 중점 실천 사항, 유치원 특색사업 추진 현황이다. 참석자는 담당장학사, 자율장학요원, 원장, 원감, 교사이다. 준비물은 학급별교육과정 운영사항, 부모교육내용, 종일반 운영 실태, 유·초 연계교육, 생활기록부, 특색사업 추진 실적, 수행평가 실태이다. 셋째 단계는 전체 협의의 시간이다. 교육활동 전개 내용에 대한 협의 안건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준비물은 일일교육계획안, 협의 안건 자료, 교육활동우수사례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유치원의 장학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II-19>와 같다.

〈표 II-19〉 유치원 장학 절차

단계	절차	내용	참석자	준비물
1	유치원 교육현황 안내	·기본현황 ·유치원교육의 운영 방향 ·2006 유치원 교육 노력 중점	·담당 장학사 ·자율장학요원 ·원장, 원감	·요람 ·유치원운영 계획
2	교육활동 및 시설공개	·교육활동 공개 ·실내·외 시설	"	·일일교육계획안
3	교육 실천사항 협의	·2006 유치원 교육 실천 내용 ·장학협의 중점 실천 사항 ·유치원 특색 사업 추진	·담당 장학사 ·자율장학요원 ·원장, 원감, 교사	·학급별교육과정운영 ·부모교육 ·종일반 운영 ·유·초 연계교육 ·생활기록부 ·특색사업추진 실적·수행평가
4	전체협의	·교육활동 전개 내용에 대한 협의 ·안건 및 문제점 개선 방안 협의	"	·일일교육계획안 ·협의 안건 자료 ·교육활동우수사례

요청장학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장학 실시 일주일 전, 사립유치원은 당해 3월 말까지 유치원 요청장학신청서(<부표 II-3> 참조)를 제출한다. 장학지도 후에는 소정의 양식(<부표 II-4> 참조)에 맞게 장학 결과를 보고한다. 그리고 장학지도 개선 및 보완 사항 결과 보고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개선 사항을 보고한다. 서면으로 장학지도를 받는 것을 요청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당해 6월 말까지 유치원에서 원내 자율장학 후(<부표 II-5> 참조)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보고를 하게 된다.

(5) 최근 장학지도의 새로운 유형

멘토링 장학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치원 장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논의 및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유치원 장학은 장학사가 문제 발생시 장학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유치원장학 주체(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와 유치원이 수평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서 한시적

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발생시 장학, 시책 중심적 장학, 문제해결 장학, 업무제시 장학, 일방적 대상 선정 장학, 획일적 장학, 수업개선 요구 장학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장학의 방향이 상호적이지 못하다는 현황 분석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기존 정부에 의한 장학의 형태에서 야기되어 왔던 장학의 위계성, 일시성, 문제해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평적이고 지속적이며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멘토링 장학이 각광을 받고 있다.

멘토링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우선은 지역교육청 별로 멘토-멘티를 구성한다. 그리고 단위유치원 및 인접 지역별로 자율적 멘토-멘티 간의 결연을 맺고, 이후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에서 개인 간 실제로 멘토와 멘티 관계 형성하게 된다. 멘토-멘티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멘토는 연수 실시 및 멘토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둘째 단계는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룹별 「만남의 날」 운영으로 우수 정보 공유 및 좋은 수업 1·2·3 운영 효과를 증진한다. 셋째로 좋은 수업 1·2·3단계를 운영한다. 우선 수업을 참관하게 된다. 단위 멘토 수업, 우수 수업 및 시범 수업, 지구별 공개수업, 시범운영 보고회 수업을 참관하게 된다. 다음으로 수업을 연구한다. 좋은 수업 수집 및 분석, 확산적 발문법, 질 높은 교수 학습 방법을 연구를 한다. 다음으로는 수업실천. 멘토와 멘티는 협의 수업안을 작성, 좋은 수업 실천하게 된다. 넷째는 좋은 수업의 일반화 단계이다. 정보 공유를 위한 우수 수업안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된다.

나)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관리는 유치원의 장학제도와는 다르게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보육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준 관리시스템이 없었음이 지적되었고, 2000년도를 전후하여 평가 인증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조항이 삽입되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개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현장을 일정한 지침(평가인증지표)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개별 보육시설들의 자발적인 평가인증 참여 신청을 전제로, 보육시설의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국가가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에 의한 자체점검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비·보완하고, 현장관찰 및 전문적인 평가로 보육시설의 현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받은 보육시설을 알려 학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 시에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평가의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이다. 평가인증 주기는 3년이다.

평가인증지표는 2003년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모형개발』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를 기본모형으로 하여 수정·보완되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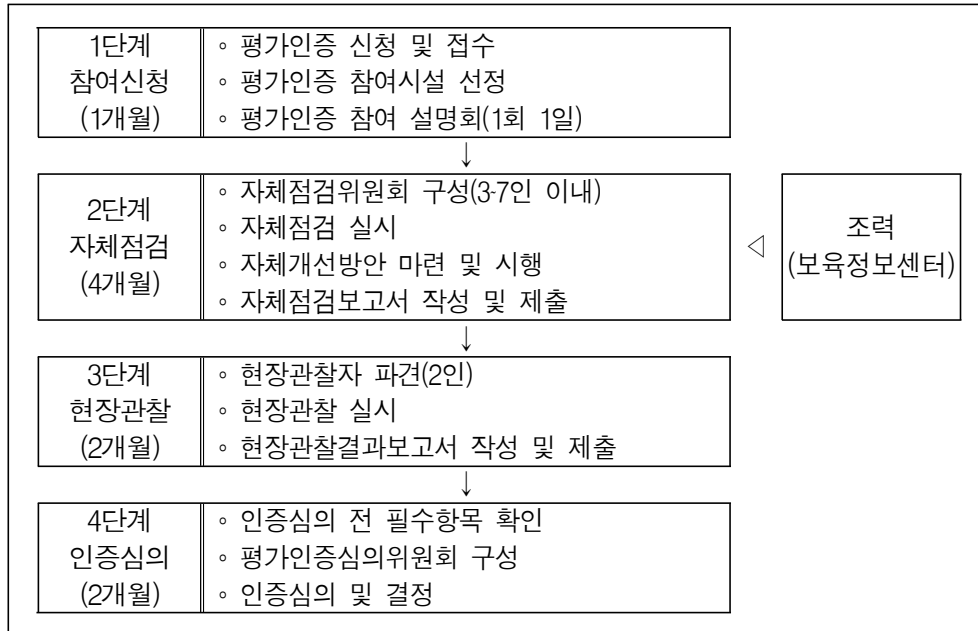
2005년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전담기구로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2) 운영체계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시범운영에서 실시되었던 운영체계 중 일부가 수정, 보완되었으며, 2006년도 운영체계는 [그림 11-3]과 같이 인증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결정의 4단계로 진행된다. 인증참여는 1개 시설당 9~10개월이 소요된다 ([그림 11-3] 참조).

▷ 1단계: 참여신청

참여자격은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 지침 등 보육과 관련된 법령사항을 준수한 보육시설로 평가 인증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가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육시설에 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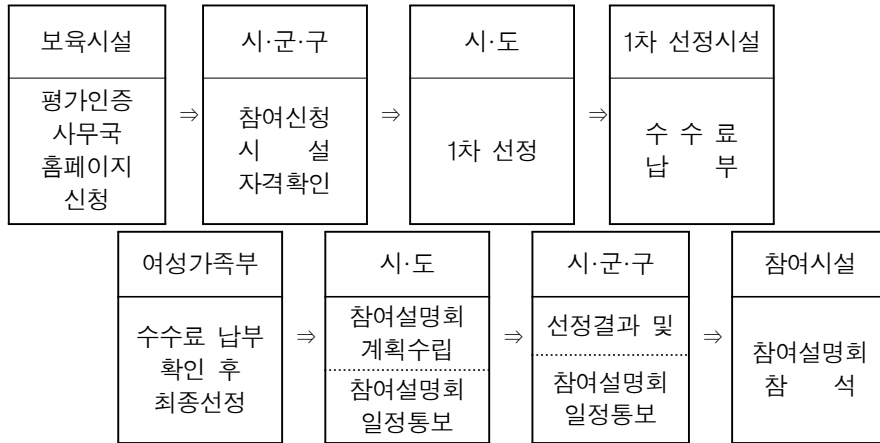


[그림 II-3] 평가인증 운영 체계

신청방법은 2006년도는 3월2일~3월 8일, 4월 1일~4월 8일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http://www.kcac21.or.kr>)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선정방법은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시·군·구에서 평가인증 참여 신청서의 자격(인가사항 등)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시설 명단을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시·도에 송부하면, 시·도에서 시·군·구별 참여시설을 선정하여 5일 이내 여성가족부에 송부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시·도가 선정한 보육시설 중 참여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시설에 한하여 시·도에 최종선정 보육시설 명단을 송부한다.

참여 설명회를 시점으로 참여가 시작되는데 평가인증 참여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에서 개최하는 평가인증 참여설명회에 시설장과 교사 등 1인 이상이 참석하여 참여과정 및 평가인증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그림 II-4] 평가인증 단계별 절차

▷ 2단계: 자체점검

2단계는 자체점검 기간이다. 각각의 참여시설은 학부모, 시설장, 보육교사로 구성된 자체점검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지표에 따른 시설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체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이후 자체점검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2단계를 끝내게 된다. 자체점검 단계에서는 시설이 희망하는 경우 전국의 26개 정보센터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자체점검 기간: 자체 점검은 4개월 동안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자체점검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3단계: 현장관찰

현장관찰 단계로 현장관찰자를 모집하고, 교육, 선정하여 자체점검을 마친 보육시설에 현장관찰자를 파견,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관찰자는 시설당 2인이 하

루 동안 파견되며 가능한 한 당일 현장관찰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상으로 제출하고 원본을 우편 발송하도록 한다. 현장관찰자 교육은 3박 4일로 진행된다.

▷ 4단계: 인증심의

인증심의를 보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인증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며, 인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① 인 증: 총점 및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에는 인증된다.
- ② 인증유보: 총점이 기준 점수를 통과하였으나, 영역별 점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증유보된다.
 - 21인 이상,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하
 -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③ 불인증: 총점이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총점은 기준점수를 통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인증된다.
 - 21인 이상,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증결정은 인증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현장관찰 결과보고서, 부모설문지 결과, 행정처분 자료 등을 기초로 인증을 결정한다. 평가인증 심의 전에 시도에서 송부된 필수항목(정원준수,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을 점검하여 평가인증 심의대상 시설을 확정한다.

인증에 통과된 시설은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서를 수여받게 되며 여성가족부 및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 전국 보육정보센터 등에 홍보된다. 인증유보 및 불인증 시설은 개별 통지된다. 이후 인증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시설은 결과 통지 수락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평가인증지표 소개

평가인증지표는 2003년도 연구시범에서 2종(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7개영역 79항목,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5개영역 58항목)이 개발되었고, 이를 기초로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 지표를 확정하였다.

평가인증지표는 3종으로 운영된다. 3종은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7개 영역 80항목),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7개 영역 85항목)이다. 지표에서는 필수항목이 지정되어 ①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준수, ② 재정관리의 투명한 운영, ③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시설의 책임 등이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기본형인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7개 영역을 살펴보면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다.

7개 영역에 따른 80항목 중 보육환경 영역은 시설 환경과 보육활동 자료에 관한 10항목이다. 운영관리 영역은 시설의 운영관리와 보육인력에 관한 13항목이다. 보육과정 영역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및 보육활동에 관한 15항목이다. 상호작용 영역은 일상적 양육과 교사의 상호작용에 관한 11항목이다. 건강과 영양 영역은 청결과 위생 및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에 관한 13항목이다. 안전 영역은 실내외 시설의 안전과 영유아의 안전보호에 관한 10항목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역은 가족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에 관한 8항목이다.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5개 영역은 환경 및 운영관리(12항목), 보육과정 (13항목), 상호작용 (11항목), 건강과 영양(14항목), 안전(10항목)이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7개 영역은 보육환경(14항목), 운영관리 (13항목), 보육과정(15항목), 상호작용(11항목), 건강과 영양(14항목), 안전(10항목),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8항목)이다.

각 지표의 평가는 3단계 기술평정척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3점(우수한 수준), 2점(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1점(부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합계 처리된다.

▷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7개 영역 80항목)

영역	하위 영역
영역1. 보육환경 (10항목)	<p>가. 보육시설 환경 (5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1-1. 보육시설 실내의 자연 채광과 조명 대 1-2. 보육실의 공간 배치 대 1-3.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 대 1-4.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장소 대 1-5. 실외 놀이터와 놀이시설 <p>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1-6. 대·소근육 활동 자료 대 1-7. 언어활동 자료 대 1-8. 탐구활동 자료 대 1-9. 창의적 표현활동 자료 대 1-10. 역할 및 쌓기놀이 자료
영역2. 운영관리 (13항목)	<p>가. 시설의 운영관리 (7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2-1.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안내 대 2-2. 보육실의 교사대 영유아 비율(필수항목) 대 2-3. 재정관리 체계(필수항목) 대 2-4. 정기적인 교사회의 및 회의내용 대 2-5. 시설장과 종사자의 업무분장 대 2-6. 신입원아 적응을 위한 절차 대 2-7. 원아에 대한 문서 관리 <p>나. 보육인력 (6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2-8. 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 대 2-9. 새로운 보육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대 2-10. 보육교사용 참고자료의 구입과 사용 대 2-11.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와 복무 규정 대 2-12. 보육교사를 위한 공간과 개인용 가구 대 2-13.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보육교사 비율

영역	하위 영역
<p>영역3. 보육과정 (15항목)</p>	<p>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대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대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 대 3-3. 자유선택활동 시간 대 3-4. 일과의 통합적 운영 대 3-5. 일상생활 관련 활동 대 3-6. 실외활동 시간 대 3-7. 보육과정 평가</p> <p>나. 보육활동 (8항목) 대 3-8. 대·소근육 활동 대 3-9. 언어활동 대 3-10. 친사회적 활동 대 3-11. 기본생활습관 활동 대 3-12. 사고력 및 탐구 활동 대 3-13. 창의적인 음률활동 대 3-14. 창의적인 미술활동 대 3-15. 역할 및 쌓기놀이</p>
<p>영역4. 상호작용 (11항목)</p>	<p>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대 4-1. 식사와 간식 시간 대 4-2. 영유아의 낮잠 시간 대 4-3. 기저귀 갈기 및 화장실 사용</p> <p>나. 교사의 상호작용 (8항목) 대 4-4.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의 말과 행동 대 4-5.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교사반응 대 4-6.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평등한 대우 대 4-7.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 지도 대 4-8. 또래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대 4-9. 영유아의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대 4-10.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수용 대 4-11.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p>

영역	하위 영역
<p>영역5. 건강과 영양 (13항목)</p>	<p>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대 5-1. 실내시설의 청결 유지 대 5-2. 보육실 환기와 온도 및 습도 조절 대 5-3.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유지 대 5-4. 조리실과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대 5-5. 마실 물과 물 컵의 관리 대 5-6.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손 씻기 대 5-7.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대 5-8. 놀이감의 청결</p> <p>나. 질병관리 (3항목) 대 5-9.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대 5-10.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대 5-11. 영유아와 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p> <p>다. 급식과 간식 (2항목) 대 5-12. 영유아를 위한 급식 대 5-13. 영유아를 위한 간식</p>
<p>영역6. 안전 (10항목)</p>	<p>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항목) 대 6-1.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대 6-2. 실내시설(보육실 외)의 안전관리 대 6-3. 보육실내 설비와 놀이감의 안전관리 대 6-4. 위험한 물건의 보관</p> <p>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 대 6-5.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대 6-6. 영유아의 인계 과정 대 6-7. 등원 및 귀가용 차량 운행 대 6-8.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시설의 책임 한계 대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설비와 대처방안(필수항목) 대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p>
<p>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8항목)</p>	<p>가. 가족과의 협력 (6항목) 대 7-1.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대 7-2.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대 7-3. 정기적인 부모 개별면담 대 7-4. 부모교육 활동의 제공 대 7-5. 부모 간의 교류 기회 제공 대 7-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p> <p>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대 7-7.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조체제 대 7-8. 영유아와 가족을 돕기 위한 전문가와의 협조</p>

[그림 II-5] 평가인증 지표(21인 이상 기준)

(4) 2005년도 시범운영 결과 및 2006년도 사업계획

2005년도 시범운영 참여를 신청한 보육시설은 1,089개소였으나 이중 809개소만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중도에 138개소가 탈락하여 최종 인증심의 대상 보육시설은 671개소이었다. 이중 인증통과 보육시설 627개소, 인증유보 보육시설 31개소, 불인증 보육시설 13개소이다. 따라서 심의대상 671개 보육시설 대비 인증율은 93.4%(627개소)이고, 인증유보 4.6%(31개소), 불인증율 1.9%(13개소)이다. 그러나 참여 선정시설 809개소 대비 인증율은 77.5%이다. 현장관찰자는 보육관련 자격을 기준으로 신청자 429명 중 1차, 2차, 3차 교육을 통과한 76명이 최종 선발되어 관찰을 실시하였다.

2006년도부터는 평가인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2006년도 사업대상 목표 시설수는 4,000개소로 소요기간은 1개 시설당 9개월이다. 2006년도 10월 현재 4,420개소가 참여를 신청한 상태이다.

2005년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2005년도에는 평가인증 전 과정이 중앙에서 이루어졌으나 2006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강화되어 시설의 신청 접수 및 선정, 사후관리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2005년도 활용된 4종의 평가인증지표를 조정, 통합하여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3종으로 진행한다. 현장관찰자 교육을 강화하며 2005년도 2박 3일간 실시되었던 교육일정을 2006년도부터는 3박 4일로 교육일정을 확대, 실시한다.

정부의 보육시설평가인증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새싹플랜: 제 1차(2006~2010) 중장기 보육계획안(2006. 6)'에서 밝히고 있는 평가인증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2006년부터 평가인증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하여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이 1차적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매년 10,000개소씩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후 2009년도부터는 모든 보육시설이 매 3년마다 1회씩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인증의 원활한 확대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며, 중앙정부는 자체평가, 현장관찰 평가 및 인증심의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참여시설 선정을 담당한다.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중으로 2007년도부터는 인증통과 시설의 교사 1인당 50만의 참여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3.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외국의 정책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선진적 정책을 펴고 있는 스웨덴,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의 지원 정책과 관리·감독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가. 스웨덴

1) 육아지원정책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아동의 보육과 교육은 가정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한유미 외, 2005),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이념 하에, 1970년대 이후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 및 공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오고 있다(이재인 외, 2005). 스웨덴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1998년 교육법 개정과 더불어 영유아 및 초등생의 보육과 교육은 교육부의 고유 업무로 귀속되었다.

육아정책은 가족지원정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스웨덴의 가족지원정책에는 입양을 포함한 출산지원, 육아휴직, 부모보험, 아동수당을 포함한 기타수당 등이 있다. 출산지원으로는, 출산시부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이 무료로 실시될 뿐 아니라 불임치료나 입양지원 등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한편, 노동법의 일종인 ‘육아휴직법’을 통해 육아휴직, 임신·출산 휴가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경제적 급여를 보상하는 규정으로 ‘부모보험법’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다. 부모보험에는 임신급부와 부모급부가 있으며 임신급부는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최대 50일간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며 부모급부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한 국가이며 육아휴직의 대상에는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 부모, 법정 양육권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육아휴직은 전일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두 가지 형태로 실시되는데, 전자는 자녀가 1세 반이 될 때까지 가능하며, 후자는 근로시간의 50% 또는 25% 단축하는 것으로 자녀가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수당으로는 아동의 생활보장을 위한 현금급부인 아동수당, 부모의 의무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최저선을 지불하는 부양수당,

장애가 부모를 위한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의 자립적 삶 지원을 위한 보조인 수당, 부나 모가 사망한 18세 또는 20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연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주택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스웨덴의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유형 및 체계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출생부터 1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보살펴야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처럼 자녀가 1세 반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제도와 부모보험 등을 통해 가정 육아를 장려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육아지원기관이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5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유아학교(preschool)’와 ‘개방형 유아학교(open preschool)’ 등이 있고 6세를 위한 기관으로 ‘예비학급(preschool class)’, 또한 6-12세의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는 ‘레저타임센터(leisure time center)’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한유미 외, 2005). 개방형 유아학교와 예비학급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 교육시설이며 다른 두 기관은 정부가 91%의 비용을 지원하는 공립시설이다. 이 외에 몇몇 형태의 사립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여기에도 공립과 동일한 정도의 국가 지원과 보조금이 들어간다. 참고적으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현황을 보면, 1~2세아의 45%, 2~3세아의 86%, 3~4세아의 91%, 5~6세아의 96%가 유아학교에 등록하고 있고, 6~7세 사이 아동의 91%는 예비학급에, 나머지 대부분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Starting Strong II, 2006).

육아지원재정 면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2004년 기준 GDP 대비 1.9%로 보고되었다(Starting Strong II, 2006). 중앙정부의 재정투자 규모로는 세계적으로 덴마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당 12,097달러(이하 미국달러(USD)를 말함)의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부모부담은 유아학교비용의 9%수준이며 이는 평균 가정 소득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1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 개월당 최고 135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 아동별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바우처(vouchers; service checks)를 이용해 보육료를 납부한 부모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를 하고 있다.

7) 2004년 통계 기준

8) 부모협동, 자원단체, 직원협동, 특수교사조합 보육 등이 있다.

2)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육아지원기관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교육/보육을 지향하는 스웨덴에서는 오래 전부터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중앙 집권적인 규칙과 규제를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여, 교사 대 아동의 비율, 학급 크기, 건물구조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엄격화하여 질 제고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1995년에는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법규에 “육아지원기관의 구조적 질(quality)”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그 후 2003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질을 관리하게 하여 자체평가나 평가보고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03년에 들면서 전국의 보육시설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감사를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면, 3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개별 시설 수준의 자율적 관리·감독이다. 자체적으로 육아지원활동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아동과의 면담, 부모 설문 등을 통해 보육/교육의 수준을 평가하고 별도로 표준화된 평가도구도 사용한다. 더불어 교사들 간의 활동계획, 교육목표 및 과정에 관한 평가도 포함된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지자체가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관할 육아지원기관들의 자체 보고서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국립교육원에 제출한다. 셋째, 중앙정부수준의 평가로서, 교육시찰단을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시설에 파견하여 시찰을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바탕하여 스웨덴 국립교육원은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전국 육아지원기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스웨덴의 취학전 교육기관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대부분 교육부에서 제정된 “취학전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방형 유아학교의 경우는 국립교육원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학교장이 시설장을 겸하게 되는 레저타임센터는 국정 의무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보급과 앞서 살펴본 관리·감독 과정을 통해 스웨덴의 육아지원기관들은 육아지원활동의 보편성 즉,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과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신뢰감을 지니게 되었다.

나. 프랑스

1). 육아지원정책

프랑스 육아정책의 방향은 자녀양육은 국가와 가정의 공동책임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에 입각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친가족적이고 친출산을 지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육아정책의 원칙은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양적 확충 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의 부응, 여성에 대한 지원에 있다.

프랑스는 국가의 육아비용 전액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채택한다. 따라서 공적투자의 규모를 보면 유아원 1인당 연간 4,040유로로 초등학생에 대한 투자비용(4,320유로)과 비슷한 정도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만 3세를 기준으로 하여 제도적, 기능적으로 구분된 육아지원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0~2세 육아는 보육시설에서 주로 담당하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관할하고 있다. 반면, 3~5세 교육은 유치원에서 담당하며 교육부 관할이다. 그러나 실제로 2세 중 35%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OECD, 2006). 보육시설은 70%가 공립이며 사립 중에서도 28%는 비영리기관이 설치주체이다. 유치원의 경우는 거의 100% 공립이다.

최근 OECD보고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GDP의 0.7%를 취학전 아동 보육과 교육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중 0.65%는 공립에 0.03%는 사립에 지원되고 있다. 아동 1인당 육아지원비용은 4,512달러(USD)로 보고되었다(OECD, 2006). 프랑스의 육아지원기관은 3~5세가 다니는 유치원 이외에 40~60명 규모의 보육시설인 크레쉬(crèche), 부모협동보육, 가정보육, 일시보육시설 등이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총비용은 GDP 대비 0.5% 정도이다. 0~3세아 부모는 평균적으로 27%정도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 3~6세아 자녀의 경우는 무료로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2002년 기준 만3세이상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거의 100%이다. 3개월 이상 2세 이하 아동은 약 36% 정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유치원을 제외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시설보육 이용 3세이하 영아 수가 170,000명, 일시보육

시설 이용 영유아 수 600,000명에 이르고 있다.

육아비용의 지원을 통한 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가족수당, 가족보조수당, 출산 및 영아관련수당, 자녀양육보조금 등이 있다. 가족수당은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수당제도로 아동 수와 아동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며 정부지원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총 400만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가족보조수당은 최소 3세이상 3자녀 이상 가족이 지급 대상이 되면 일정 소득계층 이하에게만 제공되는 수당으로 2001년 기준 11세 이상은 월 30유로, 16세 이상은 월 54유로가 지급되고 있다. 출산 및 영아관련수당은 임신 7개월에 800유로를 출산 수당으로 지급하고 출산후부터 3세까지는 월 150유로를 지불하는 제도이며, 자녀 양육보조금은 소득과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제도로 가정보육모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최대 100%까지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다. 그 외, 부모가 직업을 그만 두었을 경우 3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적용되는 취업중단 보조금, 아동에게 지급되는 학교입학수당, 입양수당,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특별양육수당, 부모 중 한 쪽만 생존한 경우에 지급되는 한부모 수당, 자녀수를 고려하는 지급하는 소득공제제도, 영유아보육비의 25%, 가정보육 비용의 50%까지 환급하는 세금환급 제도 등이 육아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제도로 들 수 있다.

2)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모든 유치원은 5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국정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의 원활한 연계교육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인 교육조사국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교육을 감독하고 있다. 감독자가 3~4년 주기로 모든 개별 교사를 관찰하고 면담한다.

그러나 0~2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보육과정이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교사에 대한 자격규제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질 관리에 애쓰고 있다. 육아지원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는 연령 및 근무처에 따라 유아교육교사와 보육교사로 나눌 수 있다. 유치원교사는 2년제 대학 입학 후 2년 경력부터 가능하고 초봉은 7,500프랑 정도이다. 보육교사는 고졸 이후 2년 경력부터 가능하며 초봉 6,000프랑 정도이다. 보육 교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 면허를 소지한 보육전문가
 - ② 보육전문가: 3년 이상의 간호대학을 이수하여 간호사나 조산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학교에서 1,4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국가자격증을 받은 사람
 - ③ 육아전문가: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육아전문가 양성학교에서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1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④ 준육아전문가: 중등교육을 마친 후 보육학교에서 1년 정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 국가 자격증을 받은 사람
- 교사의 신분은 공립과 사립이 다르고 공립의 경우에만 공무원 자격이 주어진다. 소규모 보육시설(20인이하)은 육아전문가 이외에 5개 시설당 1명의 유아교육교사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규모 시설은 1명 이상의 유아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다. 미국

1) 육아지원정책

미국은 자유주의 모델의 육아정책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재인 외, 2005)이다. 즉,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과 가족에 있고 국가와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연방재원은 저소득층 및 장애를 가진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헤드스타트(Head Start)를 비롯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으나 3~5세아 대상 의무교육과 특수교육은 교육부 소관 업무이다 (OECD, 2001). 연방정부는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민영화 중심으로 재정, 규제, 인가, 교사 및 참여인구 등도 주마다 차이가 있다.

육아지원과 관련한 법규로는 ‘개인적 책임성과 노동 기회조정법 (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가족의료 휴가법(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등이 제정되어 있다.

3세 이하는 90%가 사립 또는 가정보육시설에 취원하며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연령별 취원율은 만 5세 86.5%, 만 4세 59.2%, 만 3세 37.2%이다. 유

치원 또는 유치학년(K-grade)을 제외한 육아지원기관은 국공립 포함 비영리 기관이 65%이고 영리추구 기관이 35% 정도이다. 대표적인 국공립 육아지원 프로그램으로 1964년 경제기회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헤드스타트가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만 2~6세 아동과 그들 가족을 위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역할을 해왔다.

무상지원되는 헤드스타트를 제외하고 그 외 육아지원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의 분담은 연방정부가 25%, 주정부가 15%, 부모가 나머지 60%를 평균적으로 부담하며, 저소득층인 경우 아동당 가족수입의 평균 18%가 지불되고 있다(2006, OECD). 4세 이하(pre-kindergarten) 유아교육비용 지출은 GDP 대비 0.4% 정도이며, 3~6세 아동 1명당 평균 유아교육/보육 비용은 7,200달러(USD)이다.

연방재원은 저소득층 및 장애를 가진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국가정책적 차원의 자녀양육비 지원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 지원금 제도로 여기에는, 헤드스타트와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수입이 주 전체 중앙치 85% 수준이하 취업모 가정의 13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되는 유아보호 발달기금, 사회복지 정책교부금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교육부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아가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I 프로그램(Title I Program), 가족문제 프로그램인 이븐스타트(Even Start), 3~5세 및 3세 이하 장애아와 그 가족용 서비스를 위한 IDEA 교부금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 외 연방재원으로서 부양자 보호 조세 감면, 아동 및 성인 식품 프로그램, 부양자 보호 보조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세지원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어, 13세 미만 아동의 부양 및 보호에 드는 비용에 대해 비반환 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부양자 보호 조세 감면제도, 0~14세 아동의 보호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에서 연간 5,000달러를 감면해 주는 부양자 보호 보조 계획 등이 시행되고 있다.

2)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경우 유아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헤드스타트 실행기준뿐 아니라 주와 지방의 인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간 보고서와 3년마다 이루어지는 현장방문에 의해 확인을 받고 있으며 실행기준에 못 미치는

프로그램은 재원을 잃게 된다(나정 외, 2002).

교육과정은 2002년 GSGS(Good Start, Good Smart) 정책으로 각 주마다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을 개발하고 따르도록 장려하기 시작했다.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주의 특성에 맡겨진 관리·감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립의 경우는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어 자기규제, 경쟁, 수요자 감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민간단체들이 프로그램의 질을 보편화하고자하는 노력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유아교육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AEYC)의 육아 지원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이다. 1986년 19개 육아지원기관이 최초로 인증을 받았으며 2005년에는 13,000여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이는 인가된 8만 여개 중 15% 해당하는 수치이다. 인증평가자는 15년간 4,000명을 훈련, 배출하였으나 현재 1,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증비용은 등록 아동수에 따라 개별 육아지원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인증절차는 3단계 즉, 자체-평가 단계, 2) 확인 단계, 3) 인증결정 단계로 진행된다. 인증결과는 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되며, 5년간 유효하다. 인증받은 시설을 위해서는 NAEYC 인증서명, 인지, 인증서, 포스터, 로고, 및 기타 인증표시들의 사용이 허락되는 혜택이 돌아간다.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체제 속에서도 이러한 자율적인 규제 방법의 도입은 전반적인 사립기관의 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 호주

1) 육아지원정책

호주는 자유주의적 육아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나 미국보다는 육아의 공공성과 보편성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정부가 육아를 책임지는 쪽으로 정책을 변화해가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정부부담의 90%를 담당한다. 각 주들은 최저기준 및 인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 민간시설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 201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15시간 무료 보육·교육을 제공하고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이 가구소득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육아지원정책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의 주책임은 ‘가족 및 지역사회부’에 있고 유아학교(preschool) 및 학교 관련 행정은 ‘교육, 훈련 및 청소년부’에서 관할한다(OECD, 2000). 관련법 규로서 영유아보육법이 1977년에, 가족지원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전체 육아지원기관 중 15.5%가 국공립이며 이외는 비영리 및 영리 사립으로 사립의 비중이 크다. 육아지원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보육시설은 다시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가보육에는 대부분의 종일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방과전후보육시설, 방학보육시설, 일부 가내보육시설, 일시보육시설 등이 있다. 등록보육에는 가족지원국에 등록된 보조(nannies), 조부모, 친인척, 이웃, 친구 그리고 일부 사립유치원, 유아원, 일시보육시설, 학교 밖 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보육 등이 포함된다.

육아지원 기관의 이용 현황을 보면, 0~1세는 부모 및 비정규적 형태의 보호가 압도적이다. 약 6.9%만 인가된 서비스에 등록하고 있다. 1~4세의 경우는, 유아의 22%정도가 주로 영리목적의 사립보호센터(58%)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보호센터(23%),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가정 탁아체제(18%)에 종일 혹은 시간제로 등록되어 있다. 가정탁아는 0~12세의 영·유아 및 아동에게 제공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98%이상에게 아동보호수당체제를 통한 비용보조 혜택이 돌아간다. 4~5세는 학교병설 유치원 혹은 예비학급을 통해 매일 6시간씩 학기 중에 제공되는 유아교육의 대상이며 5세에 유치원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서부 호주 80.4%, 퀸즈랜드 96.3% 정도이다.

호주는 유아교육 및 보육 투자 비율이 GDP의 0.45%이다(OECD, 2006). 부모 육아비용 분담을 보면 보육시설은 31%, 유치원 22% 정도이다. 취학 직전 해(5세) 유아교육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호주는 52주까지 무급 혹은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있으며 ‘아동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를 지급함으로써 양육비지원을 하고 있다. 2000년 채택된 이 제도는 과세기준액, 시간당 보육료, 주당 보육료 지원시간, 소득과 자녀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료지원과 모든 가정의 보육료 환불 제도를 아우르고 있는 광범위한 급여이다. 그 외에도 조세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양육서비스 제도가 있다. 조세지원제도로는 보육비용의 30%까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보육비용공제제도와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

세제가 있으며, 소외계층 보육서비스로는 ‘돌봄 제공자 휴식제공 프로그램’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아 아동을 돌보는 일차적 보호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보육을 할 수 없을 때 그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특수한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또 지역지원팀이라는 제도를 두어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2)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호주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문서화된 보육과정은 없으나 유치원은 각 주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과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즉, 유치원 아동에 대해 3~5세용과 4~6세용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5년마다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정부부처인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가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수요자인 부모의 평가에 일차적 감독을 맡기고 있으나 한편으로 일정 수준의 확보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인가제도와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즉, 보육시설 설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편 3년 간격으로 정부의 인증을 통과하여야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위탁한 민간기구인 호주 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Inc.: NCAC)에서 전국을 담당하며 1회 소요 총기간은 3년으로, 자체점검기간 2년 6개월, 인증기간 6개월을 거치게 된다. 자체점검기간 중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참가시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며 비용은 일부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인증결과에 따라 인증통과, 인증 미통과로 구분되며 인증 미통과 2회의 경우 경고, 3회 미통과시 지원이 중단된다. 인증은 1) 등록, 2) 자체 연구와 지속적인 향상, 3) 현장관찰(확인), 4) 조정, 5) 인증 결정 등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보육시설 인증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직접 연결되어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방법이 되고 있다.

마. 일본

1) 육아지원정책

일본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를 부모로 본다. 그러나 근로,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재해 또는 가정 내 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부모를 대신하여 국가가 아동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아동복지법 제24조)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으로서의 육아 지원 또한 인정하는 체제이다.

육아정책 방향은 1965년 이래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유치원, 육아지원기관의 협력적 운영 관계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취업모를 우선하는 선별적 육아 정책을 취하고 있다.

육아 행정은 이원화된 병행 체제를 가지며 유치원은 문부성, 보육시설은 후생성에서 관할하고 있다. 유치원은 별도로 할 때 일본의 보육시설은 공립이 전체의 약 54.6%(12,352개소), 법인 45.4%(10,169개소)로 법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2005). 그 유형으로는 기초지자체(시정촌) 설립 보육소, 광역지자체설립(도도부현) 보육소, 계절보육소, 벽지보육소 등 공립보육소와, 인가 또는 미인가로 나눌 수 있는 사립보육소가 있다. 사립보육소에 속하는 것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종교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립사업소설립, 가정보육실 등이 있다. 그 외 공공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보육시설로 인정되는 베이비호텔, 베이비시터, 유아교실 등의 유형도 있어 일본의 다양한 서비스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2005년도 유치원은 총 13,949개소로 국공립 5,595개소(40.1%), 사립 8,354개소(59.9%)이다(보육백서, 2006).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공립과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며 운영비 중 부모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 부담 중 1/2은 중앙정부, 1/4은 광역지자체, 1/4은 기초지자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2003년도 중앙정부는 아동 1인당 약 년 884,000엔, 월 73,700엔 정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 비용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와 출생순위별로 차등지원 하는 아동수당 등이 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보육단가제도를 통하여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연령기준에 의해 차등적으

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표준보육단가는 매년 산출된다. 여기에는 인건비, 관리비, 아동일반생활비 등이 포함되며 아동연령, 지역, 시설규모, 민간 시설 개선비 등에 따른 가산금이 고려되어 책정된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가 산출한 보육단가이고 각각의 광역자치체별로 보육단가를 재산출하여 적용한다. 지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동수당은 만9세까지 지원되며 둘째까지는 월 5천엔, 셋째이하는 월 1만엔까지 지급한다. 조세 및 연금제도를 통한 육아지원제도로는 아동부양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중 보험료 면제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2)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마련하여 배포하는 보육소 보육지침과 문부성의 유아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육아지원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제3자 평가」가 2003년도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으나 2006년 현재 큰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 이유로는 제3자 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평가기관 및 평가자에 보육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3자 평가의 운영절차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자 평가인증기구가 있으며 이곳에서 다시 평가업체에 시설평가를 맡기게 된다. 동경도에 121개소의 평가업체가 있다. 평가기간은 2~3개월이며 비용은 60~80만엔이다. 정부가 부담하며 참여시설 수는 비교적 적다. 제3자 평가 실시기관은 하나의 회사와 같은 단체가 맡게 되며 은행계열 연구소나 MPO 법인 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적으로 평가자의 자격은 복지서비스 실무경험 3년 이상, 복지관련 학식경험 3년 이상,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중 한 가지 조건 충족자로 제한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보육소의 설비, 조건 등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육아지원기관의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 하에 아동을 입소시킨 이상, 보육소의 소재지가 전국 어느 지역에 있든 시설의 설비 등은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육소의 설비, 조건, 운영에 있어 일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육소의 최저기준이 1948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최저기준은 아동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공립·법인보육소의 인가기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저기준의 내용을 향상시킬 것도 함께 명기하고 있다.

〈표 II-20〉 주요 선진국의 육아 제도 현황

구 분	스웨덴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육아정책방향	·사회민주주의 ·육아는 사회 책임	·보편주의 ·육아책임은 가정과 국가	·자유주의 ·육아책임은 가정	·자유주의 ·정부책임육아 정책수용	·취업모 중심 ·선별적 보육정책
행정체계	·교육부일원화	·0-2세 복지부 ·3-5세 교육부	·영유아보육-복지부 ·5세 유치원-교육부	·보육-가족부 ·교육-교육부	·보육시설-후생성 ·유치원-교육부
육아지원기관	·대부분국공립 ·소수 사립	·70%공립/28% 비영리사립 ·유치원100% 공립	·비영리 65% /영리 35% (유치원제외)	·15.5% 국공립 ·민간비중 큼	·54.6% 공립 ·45.4% 법인
육아지원기관 이용현황	·1-2세: 45% ·2-3세: 86% ·3-4세: 91% ·5-6세: 96%	·영아 36% ·시설이용 ·유아 100%	·3세: 37.2% ·4세: 59.2% ·5세: 86.5%	·0-1세 6.9% ·1-2세 26.3% ·3-4세 61.5% ·4-5세 80.9%	·약 60%가 공립이용
교사자격	·대학졸업을 통한 자격취득	·국가 자격증	·민간 주도 보육교사 자격증 ·공립유치원: 주정부 자격	·주별 ·유치원교육 과정	·유치원교사: 대학졸업 ·보육교사: 자격시험
국정교육 /보육과정	·교육부의 취학전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주별유치원 교육과정	·없음	·문부성의 유치원 교육과정 ·후생성의 보육지침
육아지원비용	·1.9% (영아포함)	·0.7%	·0.4%	·0.45%	-
비용의 부모부담 비율	·9%	·0-2세 27% ·3-6세 0%	·60% (유치원제외)	·보육시설31% ·유치원 22%	·약50%정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Ⅲ.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실태

본 조사는 전국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각각 2,000개소의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을 무선으로 표집하였으며, 이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93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회수율 23.3%).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정부의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의견, 공공성 수행 현황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육아지원기관의 운영 현황

본 절에서는 육아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기관 현황, 보육시설장 및 유치원 원장 관련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육아지원기관의 시설 현황

1) 설립유형

조사된 930개 육아지원기관의 유형은 보육시설이 447개소, 유치원이 483개소이다(<표 III-1> 참조). 설립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민간개인보육시설 213개소(47.7%), 가정보육시설 206개소(46.1%)로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법인 외(단체) 보육시설 15개소(3.4%), 법인보육시설 10개소(2.2%)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치원은 사립유형이 456개소(94.4%)였고 법인이 23개소(4.8%)였다.

<표 III-1> 설립유형별 조사대상 현황

단위: 개소(%)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가정	미기재	법인	사립	미기재
930(100.0)	10(2.2)	15(3.4)	213(47.7)	206(46.1)	3(0.7)	23(4.8)	456(94.4)	4(0.8)
계			447(100.0)				483(100.0)	

2) 지역별, 건물유형별 및 이용형태별 분포

조사대상 육아지원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48.7%(450개소), 중소도시 39.7%(367개소)로 나타났고, 읍면지역이 11.6%(107개소)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III-2> 참조). 세부적으로 조사대상을 기관유형에 따라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중소도시에 45.3%(202개소), 대도시에 40.1%(179개소)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분포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읍면 지역에 14.6%(65개소)가 조사되었다. 이는 본 조사대상 보육시설이 주로 도시에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치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많이 분포하는데 대도시 56.7%(271개소), 중소도시 34.5%(165개소), 읍면지역 8.8%(42개소)의 순이었다.

건물유형을 살펴보면 단독건물이 557개소(6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유치원 중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442개소로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치원과 대조적으로 보육시설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육시설의 건물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35.4%, 단독 건물 30.5%로 다른 건물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상가 13.1%, 기타 9.9%, 단독 주택 9.0%, 연립주택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이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본 조사 대상 보육시설 중 가정보육시설(206개소, 46.1%)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치원의 건물 유형을 보면 단독건물이 93.4%이고, 이외에 상가 2개소(5.5%), 단독주택 5개소(1.1%)로 나타나 유치원의 경우 단독건물을 이용하는 기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본 조사 대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건물 이용 형태를 보면 자기 소유(자가)(681개소, 76.7%)의 시설(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대부분이 자가 건물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육시설 중에서 건물을 임대(41.6%)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유치원 임대시설(6.7%) 이용 비율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이용 형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육시설장의 58.4%가 자신 소유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물 이용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가 27.2%, 건물 전체 임대가

8.7%, 기타인 경우가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는 93.3%가 자신의 소유 건물로 높게 나타났고 임대인 경우는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가 2.1%,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가 4.3%로 미미했다(<부록표 III-1> 참조).

<표 III-2> 조사대상 기관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지역			
계	924(100.0)	446(100.0)	478(100.0)
대도시	450(48.7)	179(40.1)	271(56.7)
중소도시	367(39.7)	202(45.3)	165(34.5)
읍면지역	107(11.6)	65(14.6)	42(8.8)
건물유형			
계	895(100.0)	443(100.0)	452(100.0)
단독 건물	557(62.2)	135(30.5)	422(93.4)
단독주택	45(5.0)	40(9.0)	5(1.1)
상가	83(9.3)	58(13.1)	25(5.5)
아파트	210(23.5)	157(35.4)	-
기타	44(9.9)	44(9.9)	-
연립주택	9(2.0)	9(2.0)	-
건물이용형태			
계	888(100.0)	423(100.0)	465(100.0)
자가	681(76.7)	247(58.4)	434(93.3)
임대	207(23.3)	176(41.6)	31(6.7)

3) 학급수, 아동수, 교사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학급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4.3(표준편차 2.2)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 참조). 기관유형에 따른 학급수를 보면 보육시설의 평균 학급수는 3.8개, 유치원의 평균 (편성)학급수는 4.8개 학급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대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등록 아동수는 평균 80.9명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평균 등록 아동수는 35.7명, 유치원은 122.2명 이었다. 유치원의 기관당 평균 원아수가 보육시설의 시설당 원아수에 비해 3.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아동정원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이 41.7명, 유치원이 149.4명으로 나타나 기관별 차이가 컸으나, 보육시설의 경우 가정보육 등 소규모 보육시설이 포함된 비율이 높아 아동정원이 적게 나타났다고 보이며 평균에 비해 큰 표준편차가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육아지원기관 전체로 볼 때 아동정원은 97.6(표준편차 80.3)명인데 등록아동수는 80.9(표준편차 69.4)명으로 정원보다 등록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관유형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즉,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모두 인가를 받은 정원보다 현재(조사시점: 2006년 7월)의 등록아동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 전체를 볼 때, 기관당 원장포함 평균 교사수는 6.0(표준편차 3.5)명이었으며, 보육시설은 4.5(표준편차 2.6)명, 유치원은 7.4(표준편차 3.6)명으로 조사되었다. 원장을 제외한 경우에는 전체 평균 5.1명(표준편차 3.4명)으로 학급수의 분포가 평균 2.1~6.5개인데 비하면 1.7~8.5명으로 학급수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를 보였다.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해 두 경우의 교사수(원장포함, 원장제외)를 구하여 비교해보면, 보육시설은 사례수에서 27개가 줄어 이 수만큼의 시설에서 원장 1명이 교사를 겸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는 5개원이 원장겸 교사 1인이 운영하는 체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균으로 볼 때 보육시설의 교사수에 비해 유치원의 교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의 경우 다양한 시설유형과 규모가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교사당 아동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원장을 제외했을 경우, 교사 1인이 평균 15.1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경우는 교사당 아동수가 평균 9.6명, 유치원의 경우는 19.9명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이용 아동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유치원에 비해 어린 아동이 많아 교사 대 아동수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 조사대상 기관 규모 현황

단위: 학급, 명, 개소

구분		학급수	아동정원	등록아동	교사수		교사당 아동수	
					원장포함	원장제외	원장포함	원장제외
전체	평균	4.3	97.6	80.9	6.0	5.1	11.9	15.1
	표준편차	2.2	80.3	69.4	3.5	3.4	5.9	6.8
	사례수	864	921	914	914	882	914	882
보육시설	평균	3.8	41.7	35.8	4.5	3.7	7.0	9.6
	표준편차	2.0	38.5	34.1	2.6	2.5	3.2	3.7
	사례수	386	443	437	437	410	437	410
유치원	평균	4.8	149.4	122.1	7.4	6.4	16.4	19.9
	표준편차	2.3	74.1	67.8	3.6	3.6	4.0	5.0
	사례수	478	478	477	477	472	477	472

나. 육아지원기관장 관련 현황

1) 성별

육아지원기관장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91.0%)이 남성(9.0%)보다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장의 성별은 여성이 93.4%, 남성은 6.6%, 유치원 원장의 성별은 여성이 88.7%, 남성이 11.3%였다(〈표 III-4〉 참조).

〈표 III-4〉 조사대상 시설장·원장 성별

단위: 명(%)

구분	합계	보육시설장	유치원장
계	918(100.0)	442(100.0)	476(100.0)
여성	835(91.0)	413(93.4)	422(88.7)
남성	83(9.0)	29(6.6)	54(11.3)

2) 전공

보육시설장과 원장의 전공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 전공자가 전체의 49.3%(455명)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 관련 전공자가 3.5%(32명)로 나타났다

(<표 III-5> 참조). 보육시설장 가운데는 보육학 전공이 51.7%(230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사회복지학이 24.3%(108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시설장 전공은 아동학 5.4%, 유아교육학 7.9%, 가정학 1.6%, 기타 9.2%로 모두 10%미만이였다.

이에 반해 유치원장의 전공은 유아교육학이 90.5%(420명)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아동학 1.7%(8명), 초등교육관련 3.2%(15명), 중등교육관련 4.5%(21명)로 나타나 유아교육 이외에는 전공별 비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 시설장 및 원장의 전공

단위: 명(%)

구분	아동 관련	유아교육 관련	사회복지 관련	보육 관련	가정(관련) 관련	초등교육 관련	중등교육 관련	기타	계
보육시설장	24(5.4)	35(7.9)	108(24.3)	230(51.7)	7(1.6)	-	-	41(9.2)	445(100.0)
유치원장	8(1.7)	420(90.5)	-	-	-	15(3.2)	21(4.5)	-	464(100.0)

3) 경력

육아지원기관 기관장의 경력을 보면, 유치원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평균 유치원 경력 14.5년, 보육시설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평균 경력 7.6년으로 총 경력으로 보면 평균 13.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 참조). 보육시설장의 경우는, 보육시설 근무 경력 7.4년, 유치원 근무 5.9년이었으며 평균 총 경력년수는 8.9년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의 경우는 유치원 근무나 운영 경력이 있는 경우 평균 16.2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보육시설 근무 경력의 경우는 평균 8.3년, 평균 총 경력 9.4년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장보다 유치원 원장의 평균 경력이 조금 높았다.

〈표 III-6〉 시설장 및 원장의 경력

구분	단위: 년		
	전체 평균(표준편차)	보육시설장 평균(표준편차)	유치원장 평균(표준편차)
보육시설 경력	7.6(4.8)	7.4(4.2)	8.3(6.9)
유치원 경력	14.5(8.7)	5.9(4.7)	16.2(8.3)
기타 경력	9.4(8.7)	9.3(9.7)	11.0(7.8)
총 경력	13.8(9.5)	8.9(6.4)	9.4(8.2)

4) 추가 운영기관

현재 조사대상인 된 시설(기관) 이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시설(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있을 경우 그 유형이 무엇인지, 더불어 몇 개 시설(기관)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III-7> 참조).

전체 900명의 보육시설장 및 유치원 원장 중 추가 운영시설(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32명(25.8%)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장 447명 중 52명(11.9%), 유치원 원장 483명 중 180명(37.3%)이 추가로 운영하는 시설(기관)이 있었다.

유치원 원장의 경우 134명(27.8%)이 추가로 또 다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보육시설장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11명(2.5%)으로 유치원 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⁹⁾. 유치원장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42명(8.7%)으로 보육시설장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합쳐 총 900명 중 53명(5.9%)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장 중 30명(6.7%)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이외 또 다른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운영체계와 규모가 다른 유아대상학원을 추가로 운영하는 비율은 보육시설장(11명, 2.7%)이 유치원 원장(4명, 0.8%)보다 높게 나타났다.

9) 이는 조사대상이 된 보육시설장이 보육시설장으로서 표집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이고 만일 유치원 원장으로 표집이 되었다면 다른 양상으로 결과가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어느 시설(기관)을 먼저 시작했느냐에 상관없이 단순히 두 기관(시설) 동시 운영자로 분류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본 결과에서는 조사된 형식대로의 내용을 보고하는데 충실하고자 한다.

육아지원기관장 가운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이외의 추가 운영기관(시설)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I-8> 참조). 보육시설장의 경우, 1개의 추가 운영기관을 가진 경우는 52명 중 46명(88.5%), 2개의 추가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5명(9.6%), 3개 이상의 추가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1명(1.9%)이었다. 유치원 원장의 경우 1개의 추가 운영기관을 가진 경우는 162명 중 131명(80.9%), 2개의 추가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26명(16.0%), 3개 이상의 추가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5명(3.1%)이었다.

<표 III-7> 추가 운영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유치원	보육시설	유아대상학원	계
전체	900(100.0)	145(16.1)	72(8.0)	15(1.7)	232(25.8)
유치원 원장	483(100.0)	134(27.8)	42(8.7)	4(0.8)	180(37.3)
보육시설장	447(100.0)	11(2.5)	30(6.7)	11(2.7)	52(11.9)

<표 III-8> 시설(기관)장별 추가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추가 운영 시설(기관) 개수			계
	1	2	3이상	
전체	177(83.1)	31(14.6)	5(2.3)	213(100.0)
유치원장	131(80.9)	26(16.0)	5(3.1)	162(100.0)
보육시설장	46(88.5)	5(9.6)	1(1.9)	52(100.0)

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의견

가. 기관 성격에 대한 인식(비영리/영리)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자(보육시설장, 유치원 원장)들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기관인지 아니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전체 767개소 중 69.9%인 536개소에서 육아지원기관은 비영리 기관이라고 응답하였고, 영리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은 30.1%였다(<표 III-9> 참조). 즉 비영리기관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40% 가까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장 또는 원장이 육아지원기관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사회적, 국가적으로 공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공 기관으로서 기능하는 데 있어 국가의 지원과 그에 따른 규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보육시설장과 유치원 원장을 구분하여 그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장의 58.1%, 유치원 원장의 79.0%가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비영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일을 비영리사업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보육시설장이 보육시설운영을 비영리사업으로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치원이 보육시설보다 시설장/원장의 비영리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운영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장들은 유치원 운영이 비영리 공공사업인 이유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33.3%)’, ‘학교법을 따르는 학교이기 때문이다(30.5%)’ 등을 들었고, 보육시설장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22.8%)’,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14.9%)’ 등을 들었다(<표 III-11> 참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에서 중요한 이유로 꼽았으며 전체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25.5%)을 차지한, 육아지원기관이 비영리인 이유이다. 육아지원사업을 영리로 생각하는 시설장/원장들의 경우 가장 큰 이유로 ‘국가나 국민이 공공기관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지원도 없다’(48.1%)를 들었고 ‘사유재산이다’가 다음 순위로, 46.2%의 응답자가 선택한 영리인 이유였다(<표 III-12> 참조).

지역이나 학급수에 따른 비교는 영리/비영리 인식에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임대여부는 육아지원기관을 영리기관 혹은 비영리기관으로 보는 관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가인 경우 비영리로 인식하는 비율이 73.3%로, 영리로 인식하는 비율(26.7%)보다 46.6%가 높았으나 임대인 경우는 비영리로 인식하는 비율(58.2%)이 영리로 인식하는 비율(41.8%)에 비해 16.4%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인 시설(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가 보다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9〉 기관 성격에 대한 인식(영리/비영리)

단위: 개소(%)

구분	비영리	영리	계
기관유형			
합계	536(69.9)	231(30.1)	767(100.0)
보육시설	194(58.1)	140(41.9)	334(100.0)
유치원	342(79.0)	91(21.0)	433(100.0)
	$\chi^2(df) = 39.13(1)^{***}$		
지역			
합계	516(69.2)	230(30.8)	746(100.0)
대도시	246(69.1)	118(30.9)	364(100.0)
중소도시	205(69.7)	89(30.3)	294(100.0)
읍면지역	65(73.9)	23(26.1)	88(100.0)
	$\chi^2(df) = 0.77(2)$		
임대여부			
합계	513(69.9)	221(30.1)	734(100.0)
자가	417(73.3)	152(26.7)	569(100.0)
임대	96(58.2)	69(41.8)	165(100.0)
	$\chi^2(df) = 13.87(1)^{***}$		
학급수			
합계	509(70.2)	216(29.8)	725(100.0)
1~4학급	309(69.3)	137(30.7)	446(100.0)
5학급이상	200(71.7)	79(28.3)	279(100.0)
	$\chi^2(df) = 0.47(1)$		

***p<.001

이러한 영리/비영리에 대한 인식을 보육시설 및 유치원 각각 설립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표 III-10> 참조),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개인시설의 시설장들이 영리사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48.8%) 법인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22.2%). 유치원의 경우도 사립의 21.1%가 육아지원사업을 영리로 인식하는데 비해 법인은 13.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II-10> 설립유형별 기관 성격에 대한 인식(영리/비영리)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비영리	영리	계	비영리	영리	계
합계	193(58.1)	139(41.9)	332(100.0)	341(79.3)	89(20.7)	430(100.0)
법인	7(77.8)	2(22.2)	9(100.0)	19(86.4)	3(13.6)	22(100.0)
법인 외	8(66.7)	4(33.3)	12(100.0)	-	-	-
민간개인	84(51.2)	80(48.8)	164(100.0)	-	-	-
가정	94(63.9)	53(36.1)	147(100.0)	-	-	-
사립	-	-	-	322(78.9)	86(21.1)	408(100.0)
	$\chi^2(df) = 7.05(3)$			$\chi^2(df) = 0.77(1)$		

<표 III-11> 육아지원기관 운영을 비영리 사업이라고 보는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487(100.0)	202(100.0)	285(100.0)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25(25.7)	30(14.9)	95(33.3)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0(6.2)	24(11.9)	6(2.1)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94(19.3)	46(22.8)	48(16.8)
국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54(11.1)	29(14.4)	25(8.8)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6(5.3)	20(9.9)	6(2.1)
학교이며 학교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87(17.9)	-	87(30.5)
보육은 국가사업이므로	39(8.0)	37(18.3)	2(0.7)
기타	32(6.6)	16(7.9)	16(5.6)

〈표 III-12〉 육아지원기관 운영이 영리 사업이라고 보는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260(100.0)	173(100.0)	87(100.0)
국가나 국민이 공공기관으로 대우하지 않고 지원도 없다	125(48.1)	76(43.9)	49(56.3)
사유재산이다	120(46.2)	88(50.9)	32(36.8)
학부모가 교육비를 낸다	5(1.9)	1(0.4)	4(4.6)
소수를 위한 기관이다	1(0.4)	1(0.4)	
기타	9(3.5)	7(2.5)	2(2.3)

나.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로는 ‘5세 무상교육·보육제도’, ‘기본보조금제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유치원장학제도’, ‘교사담임수당’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육시설장과 유치원장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표 III-13〉 참조). 이 조사의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수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제도가 시행에서 가장 인지도가 낮은지 등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여섯 가지 정책 중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에만 해당하는 제도인 반면 ‘유치원장학제도’나 ‘교사담임수당’은 유치원에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즉 ‘5세 무상교육·보육제도’, ‘기본보조금’, ‘운영위원회제도’ 등은 두 시설/기관 모두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겠다. 관리·감독의 일종인 보육시설평가인증제는 새로이 시행된 제도이므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에 질문을 하였으나 유치원 장학제도는 유치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오래된 제도이므로 보육시설에만 선택적으로 질문하였다. 담임수당제는 유치원만 해당하는 새로운 제도이어서 그 인지여부에 대해 유치원 원장에게만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치원장학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70%이상의 비율로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5세 무상교육·보육제도’에 대해서는 99.1%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반응에 있어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차이는 없었다. 5세 무상교육·보육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섯 가지 정책 중 가장

잘 알려진 정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본보조금’(83.6%), ‘보육시설평가인 증제’(78.0%), ‘보육시설·유치원 운영위원회’(73.5%) 순이었다. 유치원에만 질문 하였던 ‘교사담임수당제’는 76.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시 설에만 질문하였던 ‘유치원장학제도’는 27.4%만이 알고 있다고 답하여, 보육시 설은 장학에 대해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5세 무상교육·보육			
계	924(100.0)	443(100.0)	481(100.0)
알고 있음	916(99.1)	439(99.1)	477(99.2)
모름	8(0.9)	4(0.9)	4(0.8)
$\chi^2(df) = 0.001(1)$			
기본보조금			
계	920(100.0)	444(100.0)	476(100.0)
알고 있음	769(83.6)	433(97.5)	136(70.6)
모름	151(16.4)	11(2.5)	140(29.4)
$\chi^2(df) = 239.0(1)***$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계	914(100.0)	441(100.0)	473(100.0)
알고 있음	672(73.5)	383(86.8)	289(61.1)
모름	242(26.5)	58(13.2)	184(38.9)
$\chi^2(df) = 77.72(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계	913(100.0)	444(100.0)	475(100.0)
알고 있음	712(78.0)	408(91.9)	362(76.2)
모름	201(22.0)	36(8.1)	113(23.8)
$\chi^2(df) = 97.37(1)***$			
유치원 장학제도			
계	416(100.0)	416(100.0)	-
알고 있음	114(27.4)	114(27.4)	-
모름	302(72.6)	302(72.6)	-
교사 담임수당			
계	475(100.0)	-	475(100.0)
알고 있음	362(76.2)	-	362(76.2)
모름	113(23.8)	-	113(23.8)

***p<.001

기본보조금의 경우 최근 시범 시행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은 97.5%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유치원장이 알고 있는 비율은 70.6%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II-14> 참조). 이와 같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육시설·유치원 운영위원회’,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보육시설과 유치원 간에 정책인지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세 무상 교육·보육제도’를 제외하고는 보육시설에서 정책인식 정도가 모두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보육시설이 최근 정부로부터 지원과 함께 규제가 많아짐으로써 공공성과 관련한 국가 육아정책 방안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5세 무상 교육·보육 제도

지역에 따라 무상 교육·보육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읍면지역의 경우 100%, 중소도시의 경우 99.7%, 대도시의 경우 98.4%가 안다고 대답하였다. 즉, 이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시설이 잘 알고 있었고 지역별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2) 기본보조금 제도

육아지원기관의 시설장이나 원장의 기본보조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대도시 시설(기관)장의 76%, 중소도시 시설(기관)장의 91%, 읍면지역의 시설(기관)장의 90.4%가 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임대여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건물 소유의 시설(기관)장의 경우 80.4%, 임대의 경우 92.3%가 기본보조금 지원에 관해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시설(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기본보조금 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가의 경우가 임대 경우보다 기본보조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기본보조금에 대한 인지도

단위: 개소(%)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
지역			
합계	765(83.6)	150(16.4)	915(100.0)
대도시	338(76.0)	107(24.0)	445(100.0)
중소도시	333(91.0)	33(9.0)	366(100.0)
읍면지역	94(90.4)	10(9.6)	104(100.0)
$\chi^2(df) = 27.03(2)^{***}$			
임대여부			
합계	410(97.6)	10(2.4)	420(100.0)
자가	540(80.4)	132(19.6)	672(100.0)
임대	191(92.3)	16(7.7)	207(100.0)
$\chi^2(df) = 16.04(1)^{***}$			

***p<.001

3) 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시설장과 사립유치원장에게 각각 보육시설운영위원회나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지역별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읍면지역(80.8%), 중소도시(78.5%), 대도시(67.9%)로 나타났다(〈표 III-15〉 참조). 이러한 지역에 따른 보육시설운영위원회나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의 시설(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건물 소유의 시설(기관)장의 경우 71.2%, 임대의 경우 79.6%가 운영위원회에 관해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시설(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가의 경우가 임대 경우보다 운영위원회에 대해 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단위: 개소(%)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
지역			
합계	669(73.6)	240(26.4)	909(100.0)
대도시	301(67.9)	142(32.1)	443(100.0)
중소도시	284(78.5)	78(21.5)	362(100.0)
읍면지역	84(80.8)	20(19.2)	104(100.0)
$\chi^2(df) = 14.43(2)**$			
임대여부			
합계	640(73.1)	235(26.9)	875(100.0)
자가	476(71.2)	193(28.8)	669(100.0)
임대	164(79.6)	42(20.4)	206(100.0)
$\chi^2(df) = 5.74(1)**$			

**p<.01

4) 평가인증제도

시설장과 유치원장의 지역에 따른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안다는 응답이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비율은 각각 88.5%, 85.3%,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의 시설(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건물 소유의 시설(기관)장의 경우 75.3%, 임대인 경우 84.5%가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관해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표 III-16〉 참조). 시설(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가의 경우가 임대 보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관해 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개소(%)

구분	안다	모른다	계
지역			
합계	710(78.2)	198(21.8)	908(100.0)
대도시	310(70.0)	113(30.0)	443(100.0)
중소도시	308(85.3)	53(14.7)	361(100.0)
읍면지역	92(88.5)	12(11.5)	104(100.0)
	$\chi^2(df) = 34.72(2)^{***}$		
임대여부			
합계	676(77.4)	197(22.6)	873(100.0)
자가	502(75.3)	165(24.7)	667(100.0)
임대	174(84.5)	32(15.5)	206(100.0)
	$\chi^2(df) = 7.63(1)^{**}$		

p<.01 *p<.001

5) 유치원의 장학제도

지역에 따른 보육시설장의 유치원장학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7〉 참조).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유치원 장학제도에 대해 안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보육시설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유치원 장학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가 건물 소유의 시설장의 경우 30.1%, 임대의 경우 24.9%가 유치원 장학제도에 관해 알고 있다고 답하여 시설장들이 유치원 장학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시설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유치원 장학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보육시설의 보육경력에 따른 유치원 장학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10년 22.9%, 11년 이상이 41.6%가 안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유치원 장학제도에 관해 모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경력에 따른 유치원 장학제도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경력이 많아질수록 유치원 장학제도를 아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7〉 유치원 장학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개소(%)
구분	안다	모른다	계
지역			
합계	114(27.5)	301(72.5)	415(100.0)
대도시	55(32.4)	115(67.6)	170(100.0)
중소도시	43(23.4)	141(76.6)	184(100.0)
읍면지역	16(26.2)	45(73.8)	61(100.0)
$\chi^2(df) = 3.63(2)$			
임대여부			
합계	110(27.8)	285(72.2)	395(100.0)
자가	68(30.1)	158(69.9)	226(100.0)
임대	42(24.9)	127(75.1)	169(100.0)
$\chi^2(df) = 1.32(1)$			
경력			
합계	114(27.4)	302(72.6)	416(100.0)
1-10년	72(22.9)	243(77.1)	315(100.0)
11년이상	42(41.6)	59(58.4)	101(100.0)
$\chi^2(df) = 13.48(1)^{***}$			

***p<.001

6) 유치원교사 담임수당제

지역에 따른 유치원장의 교사담임수당지원에 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360명의 원장 가운데 읍면지역의 97.6%, 중소도시의 87.3%가 ‘안다’고 응답하여 도시가 소규모일수록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8〉 참조). 도시 지역은 담임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점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 준다. 담임수당제에 대한 질문은 유치원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표 III-18〉 교사 담임수당 지원에 대한 인지도

			단위: 개소(%)
구분	안다	모른다	계
지역			
합계	360(76.4)	111(23.6)	471(100.0)
대도시	176(66.4)	89(33.6)	265(100.0)
중소도시	144(87.3)	21(12.7)	165(100.0)
읍면지역	40(97.6)	1(2.4)	41(100.0)
$\chi^2(df) = 35.68(2)^{***}$			

***p<.001

다.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참여 의사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다섯 가지의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하여 보육시설장과 유치원장의 참여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III-19>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육아지원기관의 참여 의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행정전산화			
계	910(100.0)	437(100.0)	473(100.0)
참여	701(77.0)	348(79.6)	353(74.6)
불참	209(23.0)	89(20.4)	120(25.4)
$\chi^2(df) = 3.21(1)$			
평가인증제도 (유치원평가)			
계	908(100.0)	436(100.0)	472(100.0)
참여	513(56.5)	245(56.2)	268(56.8)
불참	395(43.5)	191(43.8)	204(43.2)
$\chi^2(df) = 0.03(1)$			
법인화			
계	894(100.0)	427(100.0)	467(100.0)
참여	489(54.7)	273(63.9)	216(46.3)
불참	405(45.3)	154(36.1)	251(53.7)
$\chi^2(df) = 28.14(1)***$			
운영위원회			
계	907(100.0)	435(100.0)	472(100.0)
참여	457(50.8)	243(56.5)	214(45.5)
불참	443(49.2)	187(43.5)	256(54.5)
$\chi^2(df) = 10.83(1)***$			
회계장부관리			
계	907(100.0)	435(100.0)	472(100.0)
참여	605(66.7)	315(72.4)	290(61.4)
불참	302(33.3)	120(27.6)	182(38.6)
$\chi^2(df) = 12.27(1)***$			

***p<.001

조사 표적이 된 다섯 가지 정책은 행정전산화, 평가인증제도(유치원평가제도), 법인화, 기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회계장부관리·감독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로 참여를 찬성한 정책은 행정전산화(77.0%)이고 다음이 회계장부관리·감독(66.7%)이었다(<표 III-19> 참조). 나머지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50%대의 찬성률을 보였다. 따라서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전산화에 대해서는 현장 시설장 및 원장들이 대다수 참여할 것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설치(50.8%), 법인화(54.7%), 평가인증제도(56.5%) 등은 참여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응답을 나누어 분석한 기관유형별 비교에서 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행정전산화나 평가인증제도에의 참여여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법인화를 유도할 경우 참여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 보육시설은 63.9%가 동의한 반면 유치원은 46.3%가 동의하여 보육시설이 법인화에 참여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부에서는 보육시설은 56.6%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유치원의 경우는 45.5%만이 참여에 동의하였다. 회계장부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은 72.4%, 유치원은 61.4%가 참여에 동의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 행정전산화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른 육아행정전산망운영 참여의사를 확인해 본 결과, 사립유치원장의 75.0%, 법인유치원장의 65.2%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정전산화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반면 법인유치원장의 34.8%, 사립유치원장의 25.0%에서 행정전산망 참여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III-20> 참조).

보육시설의 설립형태에 따른 육아행정전산망운영 참여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100%의 참여의지를 나타내었고 법인 외 보육시설의 경우 86.7%, 민간개인보육시설의 경우 75.5%,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82.6%가 '참여 하겠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민간개인보육시설의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응답률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시설장/원장이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자가/임대 여부에 따라 행정전산화 참여여부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보육시설장의 경우, 건물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시설장은 78.3%, 임대의 경우는 82.2%가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가 건물 소유 원장의 74.9%, 임대 원장의 61.3%가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즉, 보육시설의 경우와는 달리 자가로 운영하는 원장이 행정전산화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13.6% 정도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0> 보육시설 및 유치원별 보육 행정전산화 참여 의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설립유형						
합계	697(77.0)	208(23.0)	346(79.7)	88(20.3)	351(74.5)	120(25.5)
법인	25(76.8)	8(24.2)	10(100.0)	0(0.0)	15(65.2)	8(34.8)
법인 외			13(86.7)	2(13.3)	-	-
민간개인	672(77.1) ^{주1)}	200(22.9)	157(75.5)	5(24.5)	-	-
가정			166(82.6)	35(17.4)	-	-
사립			-	-	336(75.5)	112(25.0)
	$\chi^2(df) = .031(1)$		$\chi^2(df) = 6.33(3)$		$\chi^2(df) = 1.10(1)$	
임대여부						
합계	669(76.8)	202(23.2)	330(79.9)	83(20.1)	339(74.0)	119(26.0)
자가	511(76.2)	160(23.8)	191(78.3)	53(21.7)	320(74.9)	107(25.1)
임대	158(79.0)	42(21.0)	139(82.2)	30(17.8)	19(61.3)	12(38.7)
	$\chi^2(df) = 0.70(1)$		$\chi^2(df) = 0.98(10)$		$\chi^2(df) = 2.80(1)$	

주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설립유형 구분이 달라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설립유형의 응답수를 비법인으로 분류하여 모두 합산하였음.

2) 평가인증제도 및 유치원평가제도

보육시설장에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유치원장에게는 향후 유치원평가제도가 생긴다

면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표 III-21> 참조).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참여의지에 관한 물음에 법인보육시설의 90.0%가 '참여하겠다'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참여의지를 보였고 법인의 보육시설이 60.0%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민간개인보육시설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각각 53.4%와 57.5%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의지를 보였다. 보육시설의 설립유형별 평가인증제도 참여의지에 대한 물음은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치원의 경우도 사립유치원장의 56.8%, 법인유치원장의 60.9%에서 평가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설립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육아지원기관 전체의 자가 여부에 따른 평가제도의 참여의사를 조사해 본 결과, 자가 운영의 58.6%가 평가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고 임대는 47.8%가 참여하겠다고 하여 임대 보다 자가인 경우의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시설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평가인증제도 참여 의지를 살펴본 결과, 자가 건물 소유의 시설장의 경우 60.0%, 임대의 경우 50.6%가 참여하겠다고 답하여, 참여에 동의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평가제도 참여 의지를 보면, 자가 건물 소유의 원장인 경우 57.7%, 임대의 경우 32.3%가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경우는 자가 소유인 경우 42.3%, 임대인 경우 67.7%를 보여, 임대의 경우 평가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건물 임대 여부에 따른 평가제도 참여의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수에 따른 평가인증제도 참여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54.5%, 5학급이상 63.1%가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답해 학급수가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유치원의 학급수에 따른 평가제도 참여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53.5%, 5학급이상 61.0%가 평가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표 III-21> 보육시설 및 유치원별 평가제도 참여 의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설립유형						
합계	512(56.7)	391(43.3)	244(56.4)	189(43.6)	268(57.0)	202(43.0)
법인	23(69.7)	10(30.3)	9(90.0)	1(10.0)	14(60.9)	9(39.1)
법인 외			9(60.0)	6(40.0)	-	-
민간개인	489(56.2) ^{주1)}	381(43.8)	111(53.4)	97(46.6)	-	-
가정			115(57.5)	85(42.5)	-	-
사립			-	-	254(56.8)	193(43.2)
	$\chi^2(df) = 2.36 (1)$		$\chi^2(df) = 5.55(3)$		$\chi^2(df) = 0.15(1)$	
임대여부						
합계	487(56.0)	382(44.0)	231(56.1)	181(43.9)	256(56.0)	201(44.0)
자가	390(58.6)	276(41.4)	144(60.0)	96(40.0)	246(57.7)	180(42.3)
임대	97(47.8)	106(52.2)	87(50.6)	85(49.4)	10(32.3)	21(67.7)
	$\chi^2(df) = 7.33(1)^{**}$		$\chi^2(df) = 3.61(1)$		$\chi^2(df) = 7.62(1)^{**}$	
학급수						
합계	489(57.7)	359(42.3)	222(58.4)	158(41.6)	267(57.1)	201(42.9)
1~4학급	291(54.5)	243(45.5)	160(55.4)	129(44.6)	131(53.5)	114(46.5)
5학급이상	198(63.1)	116(36.9)	62(68.1)	29(31.9)	136(61.0)	87(39.0)
	$\chi^2(df) = 5.94(1)^*$		$\chi^2(df) = 4.65(1)^*$		$\chi^2(df) = 2.69(1)$	

*p<.05 **p<.01

주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설립유형 구분이 달라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설립유형의 응답수를 비법인으로 분류하여 모두 합산하여 전체 수치를 계산함.

3) 법인화

학급수에 따른 법인화 참여 의사의 차이를 보면 1~4학급 규모의 시설(기관)에서 57.9%가 참여에 동의하였고 48.5%의 5학급 이상 규모가 참여에 응답하였다(<표 III-22> 참조). 이 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법인화에 높은 비율의 참여의사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학급 수에 따른 법인화 참여여부를 보면, 1~4학급 63.7%, 5학급 이상은 67.4%가 법인화에 참여하겠다고 답해 대체로 참여의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유치원의 학급 수에 따른 법인화 참여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51.0%,

5학급이상은 41.2%가 법인화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 따른 참여의지를 조사한 결과 법인보육시설의 9곳 모두 응답자가 '참여 하겠다'라고 응답했고 이어 법인 외 보육시설도 92.3%라는 높은 참여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민간개인보육시설은 60.8%, 가정보육시설은 64.8%만이 '참여 하겠다'라고 응답해 법인보육시설과 법인 외 단체 보육시설의 참여의지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의지를 보였다. 유치원 원장의 45.4%, 법인유치원장의 68.2%에서 기관의 법인화 정책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유치원 유형간 법인화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보육시설 및 유치원별 법인화 참여 의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설립유형						
합계	489(55.0)	400(45.0)	273(64.4)	151(35.6)	216(46.5)	249(53.5)
법인	24(77.4)	7(22.6)	9(100.0)	0(0.0)	15(68.2)	7(31.8)
법인 외			12(92.3)	1(7.7)	-	-
민간개인	465(54.2)	393(45.8)	127(60.8)	82(39.2)	-	-
가정			125(64.8)	68(35.2)	-	-
사립			-	-	201(45.4)	242(54.6)
	$\chi^2(df) = 6.52(1)^{**\text{주1}}$		- ^{주2)}		$\chi^2(df) = 4.38(1)^*$	
학급수						
합계	454(54.4)	380(45.6)	239(64.6)	131(35.4)	215(46.3)	249(53.7)
1~4학급	305(57.9)	222(42.1)	181(63.7)	103(36.3)	124(51.0)	119(49.0)
5학급이상	149(48.5)	158(51.5)	58(67.4)	28(32.6)	91(41.2)	130(58.8)
	$\chi^2(df) = 6.82(1)^{**}$		$\chi^2(df) = 0.40(1)$		$\chi^2(df) = 4.52(1)^*$	

*p<.05 **p<.01 ***p<.001

주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설립유형 구분이 달라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설립유형의 응답수를 비법인으로 분류하여 모두 합산하였음.

주2): 경우의 수가 통계 분석에 부적합함.

4) 기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각각 보육시설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았다(<표 III-23> 참조).

<표 III-23> 보육시설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참여 의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임대여부						
합계	435(50.5)	427(49.5)	231(56.8)	176(43.2)	204(44.8)	251(55.2)
자가	330(49.9)	331(50.1)	135(57.0)	102(43.0)	195(46.0)	229(54.0)
임대	105(52.2)	96(49.8)	96(56.5)	74(43.5)	9(29.0)	22(71.0)
	$\chi^2(df) = 0.33(1)$		$\chi^2(df) = 0.001(1)$		$\chi^2(df) = 3.36(1)$	
학급수						
합계	429(51.0)	412(49.0)	215(57.3)	160(42.7)	214(45.9)	252(54.1)
1~4학급	270(50.9)	260(49.1)	154(54.0)	131(46.0)	116(47.3)	129(52.7)
5학급이상	159(51.1)	152(48.9)	61(67.8)	29(32.2)	98(44.3)	123(55.7)
	$\chi^2(df) = 0.00(1)$		$\chi^2(df) = 5.28(1)^*$		$\chi^2(df) = 0.42(1)$	
설립유형						
합계	456(50.9)	439(49.1)	242(56.7)	185(43.3)	214(45.7)	254(54.3)
법인	25(75.8)	8(24.2)	10(100.0)	0(0.0)	15(65.2)	8(34.8)
법인 외			9(64.3)	5(35.7)	-	-
민간개인	431(50.0)	431(50.0)	119(57.5)	88(42.5)	-	-
가정			104(53.1)	92(46.9)	-	-
사립			-	-	199(44.7)	246(55.3)
	$\chi^2(df) = 8.44(1)^{**}$		$\chi^2(df) = 9.07(3)^*$		$\chi^2(df) = 3.70(1)$	

*p<.05 **p<.01 ***p<.001

설립유형에 따른 비교를 보면 법인보육시설만이 응답자의 100%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참여 하겠다'고 답하였다(<표 III-24> 참조). 반면 법인 외 보육시설의 경우 64.3%, 민간개인보육시설은 57.5%, 가정보육시설 53.1%만이 긍정적 참여의사를 밝혀 법인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련 참여의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보육시설 설립유형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련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장의 44.7%, 법인유치원장의 65.2%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참여 하겠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시설 시설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여부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소유 건물의 시설(기관)장의 경우 57.0%, 임대인 경우 56.5%가 참여하겠다고 답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치원 원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여부를 살펴 보면, 자가 소유건물의 시설(기관)장의 경우 46.1%, 임대인 경우 35.5%가 참여하겠다고 답하여 두 집단 모두 비참여 대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여부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보육시설의 학급 수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54.0%, 5학급이상 67.8%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의 학급 수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52.7%, 5학급이상은 55.7%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회계장부 관리·감독

보육시설 설립유형에 따른 회계장부 관리·감독 관련 참여의사를 살펴 본 결과,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참여 하겠다'는 응답자가 100%로 매우 높은 참여의지를 보인 반면 법인 외 보육시설의 경우 28.6%, 민간개인보육시설의 경우 28.6%, 가정보육시설은 27.7%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법인보육시설의 회계장부 관리 관련 참여의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른 비교를 보면, 사립유치원장의 60.9%, 법인유치원장의 73.9%에서 회계장부 관리·감독을 받겠다고 참여에 찬성하여 두 유형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회계장부 관리·감독 정책에 참여의사를 살펴본 결과, 자가 건물 소유 시설장의 경우 72.5%, 임대인 경우 71.5%가 참여하겠다고 답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유치원 원장의 경우는, 자가 시설 원장의 62.0%, 임대 원장의 41.9%가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경우는 자가 소유인 경우 38.0%, 임대인 경우 58.1%를 보여 임대인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학급 수에 따른 회계장부 관리·감독 참여여부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71.3%, 5학급이상 74.2%가 참여하겠다고 답해 시설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1~4학급 58.3%, 5학급이상 65.2%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표 III-24> 보육시설 및 유치원별 보육 회계장부관리 정책 참여 의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참여	불참
설립유형						
합계	602(66.7)	300(33.3)	313(72.5)	119(27.5)	289(61.5)	181(38.5)
법인	27(81.8)	6(18.2)	10(100.0)	0(0.0)	17(73.9)	6(26.1)
법인 외			10(71.4)	4(28.6)	-	-
민간개인			147(71.4)	59(28.6)	-	-
가정	575(66.2)	294(33.8)	146(72.3)	56(27.7)	-	-
사립			-	-	272(60.9)	175(39.1)
	$\chi^2(df) = 3.51(1)$		- ^{*)}		$\chi^2(df) = 1.58(1)$	
임대여부						
합계	574(66.1)	295(33.9)	297(72.1)	115(27.9)	277(60.6)	180(39.4)
자가	438(65.8)	228(34.2)	174(72.5)	66(27.5)	264(62.0)	162(38.0)
임대	136(67.0)	67(33.0)	123(71.5)	49(28.5)	13(41.9)	18(58.1)
	$\chi^2(df) = 0.11(1)$		$\chi^2(df) = 0.05(1)$		$\chi^2(df) = 4.86(1)^*$	
학급수						
합계	560(66.2)	286(33.8)	272(72.0)	106(28.0)	288(61.5)	180(38.5)
1~4학급	350(65.3)	186(34.7)	206(71.3)	83(28.7)	144(58.3)	103(41.7)
5학급이상	210(67.7)	100(32.3)	66(74.2)	23(25.8)	144(65.2)	77(34.8)
	$\chi^2(df) = 0.52(1)$		$\chi^2(df) = 0.28(1)$		$\chi^2(df) = 2.32(1)$	

*p<.05

주) 경우의 수가 통계분석에 부적합함.

라. 정부 지원금과 관리·감독의 연계

전체 757명 중 69.6%가 정부지원금과 관리·감독의 연계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11.2%는 지원금과 관리·감독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지원금만 받고 관리·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의견 또한 19.2%를 차지했다(<표 III-25> 참조).

보육시설장 중 67.8%가 정부지원금과 관리·감독을 함께 받겠다고 하였으며 지원금도 받지 않고 관리·감독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이 12.9%로 나타났다. 유치원장은 71.4%가 지원금은 관리·감독을 수반해야 한다고 하였고, 18.9%가 지원금은 받되 관리·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9.7%가 지원금도 관리·감독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비슷한 비율로 정부지원과 관리·감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5〉 정부지원금과 관리·감독의 연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정부지원금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연계찬성)	527(69.6)	248(67.8)	279(71.4)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관리·감독도 받지 않겠다 (모두거부)	85(11.2)	47(12.9)	38(9.7)
정부 지원금은 받되 관리·감독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지원금만 찬성)	145(19.2)	71(19.3)	74(18.9)
계	757(100.0)	366(100.0)	391(100.0)
$\chi^2(df) = 2.015(2)$			

육아지원기관 중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금과 관리·감독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지원금과 관리·감독 연계의 찬성률은 법인보육시설이 87.5%로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가장 높았고, 이어 법인 외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개인보육시설 순의 찬성률을 보였다(〈표 III-26〉 참조).

이 중 지원금과 관리·감독 연계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받되 관리·감독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민간개인보육시설의 21.8%, 가정보육시설의 18.4%, 법인보육시설의 12.5%, 법인 외 보육시설의 9.1%로 나타났다.

이 외 정부 지원금 관리·감독에 대해 모두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민간개인보육시설 17.0%, 가정보육시설 9.1%, 법인 외 보육시설 8.9%의 순으로 나타나 민간개인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금과 지원금의 관리·감독에 대해 모두 거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장의 70.7%, 법인유치원장의 80.0%에서 지원금과 관리·감독의 연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과 관리·감독 모두를 받지 않겠다고 한 비율은 사립유치원이 10.1%, 법인이 5.0%이며 지원금만 받고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비율은 각각 19.3%, 15.0%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의 설립유형별 지원금과 관리·감독 연계 안에 대한 의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26〉 설립유형별 정부 지원금과 관리·감독 연계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개수(%)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연계찬성	모두거부	지원금만 찬성	계	연계찬성	모두거부	지원금만 찬성	계
합계	247(68.0)	45(12.4)	71(19.6)	363(100.0)	276(71.1)	38(9.8)	74(19.1)	388(100.0)
법인	7(87.5)	0(0.0)	1(12.5)	8(100.0)	16(80.0)	1(5.0)	3(15.0)	20(100.0)
법인 외	9(81.8)	1(9.1)	1(9.1)	11(100.0)	-	-	-	-
민간개인	101(61.2)	28(17.0)	36(21.8)	165(100.0)	-	-	-	-
가정	130(72.6)	16(8.9)	33(18.4)	179(100.0)	-	-	-	-
사립	-	-	-	-	260(70.7)	37(10.1)	71(19.3)	368(100.0)
	$\chi^2(df) = 9.40(6)$				$\chi^2(df) = 0.91(2)$			

육아지원기관장 중 읍면지역의 시설장과 원장들의 경우는 78.5%, 중소도시는 70.5%, 대도시는 66.2%가 평가와 지원금이 연계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표 III-27〉 참조). 임대여부에 따른 지원금과 관리·감독 연계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 건물을 가진 시설(기관)장의 경우 70.6%, 임대의 경우 64.3%가 연계 찬성에 답하였다. 지원금과 관리·감독 모두 거부한다는 비율은 자가 건물 소유의 경우 10.4%, 임대인 경우 13.0%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금에는 찬성하지만, 관리·감독은 반대하는 비율도 자가 18.9%, 임대 22.7%를 보여 두 집단 모두 연계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수에 따른 지원금 및 관리·감독 연계에 대한 찬반을 살펴본 결과, 1~4학급 70.8%, 5학급이상 69.0%가 연계찬성에 답해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7〉 지역·임대 여부·학급수별 지원금 관리·감독연계 정책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개소(%)

구분	연계찬성	모두거부	지원금만 찬성	계
지역				
합계	523(69.5)	84(11.2)	145(19.3)	752(100.0)
대도시	225(66.2)	39(11.5)	76(22.4)	340(100.0)
중소도시	225(70.5)	39(12.2)	55(17.2)	319(100.0)
읍면지역	73(78.5)	6(6.5)	14(15.1)	93(100.0)
	$\chi^2(df) = 7.08(4)$			
임대여부				
합계	198(69.3)	79(11.0)	142(19.7)	719(100.0)
자가	399(70.6)	59(10.4)	107(18.9)	565(100.0)
임대	99(64.3)	20(13.0)	35(22.7)	154(100.0)
	$\chi^2(df) = 2.29(2)$			
학급수				
합계	498(70.1)	77(10.8)	135(19.0)	710(100.0)
1~4학급	318(70.8)	46(10.2)	85(18.9)	449(100.0)
5학급이상	180(69.0)	31(11.9)	50(19.2)	261(100.0)
	$\chi^2(df) = 0.49(2)$			

마. 보육료 상한제/수업료 자율화

현재 보육료는 국가가 정한 상한선이 있어 모든 보육시설은 상한제 규정에 따라 보육료를 책정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의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 따른 보육료 상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법인 외 보육시설이 71.4%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이어 법인보육시설(66.7%), 민간개인보육시설(56.3%), 가정보육시설(46.0%)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28〉 참조).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91.5% 찬성)이 법인(75.0% 찬성)보다 수업료 자율화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28〉 설립유형별 보육료 상한제/수업료 자율화에 대한 인식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상한제(보육시설)		수업료 자율화(유치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합계	170(52.5)	154(47.5)	357(90.6)	37(9.4)
법인	6(66.7)	3(33.3)	15(75.0)	5(25.0)
법인 외	10(71.4)	4(28.6)	-	-
민간개인	85(56.3)	66(43.7)	-	-
가정	69(46.0)	81(54.0)	-	-
사립	-	-	354(91.5)	33(8.5)
	$\chi^2(df) = 6.15(3)$		$\chi^2(df) = 6.10(1)^*$	

*p<.05

보육시설의 경우 52.6%가 보육료 상한제에 찬성하여 현 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9> 참조). 보육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따른 보육료 상한제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60.8%)에 소재한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 상한제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읍면지역(53.5%), 중소도시(52.7%), 대도시(39.2%)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유치원의 수업료 자율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비교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90.9%로 반대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서 납입금 자율화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대도시(91.6%), 중소도시(93.9%), 읍면지역(75.7%) 순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지역에 따른 유치원장의 납입금 자율화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보육시설 시설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보육료 상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건물 소유의 시설장의 경우 56.7%, 임대의 경우 46.9%가 보육료 상한제에 찬성한다고 답하였고, 임대의 경우 보육료 납입금 상한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 임대 두 집단 간 보육료 상한제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치원 원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수업료 자율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건물 소유의 원장의 경우 90.5%, 임대의 경우 100%가 수업료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답하여 유치

원의 임대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시설의 학급수에 따른 보육료 상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48.6%, 5학급이상 64.5%가 찬성에 답해, 학급수가 많은 보육시설의 찬성률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학급수에 따른 수업료 자율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1~4학급 86.3%, 5학급이상 94.0%가 찬성에 답해, 학급이 많아질수록 찬성률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급 수에 따른 납입금 자율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29〉 보육료 상한제/수업료 자율화에 대한 인식

단위: 개소(%)

구분	보육료 상한제(보육시설)		수업료 자율화(유치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지역				
합계	171(52.6)	154(47.4)	369(90.9)	37(9.1)
대도시	79(60.8)	51(39.2)	217(91.6)	20(8.4)
중소도시	71(47.3)	79(52.7)	124(93.9)	8(6.1)
읍면지역	21(46.7)	24(53.3)	28(75.7)	9(24.3)
	$\chi^2(df) = 5.78(2)^*$		$\chi^2(df) = 11.95(2)^{***}$	
임대여부				
합계	161(52.6)	145(47.4)	360(91.1)	35(8.9)
자가	101(56.7)	77(43.3)	333(90.5)	35(9.5)
임대	60(46.9)	68(53.1)	27(100.0)	0(0.0)
	$\chi^2(df) = 2.91(1.0)$		$\chi^2(df) = 2.81(1)$	
학급수				
합계	143(52.2)	131(47.8)	371(90.9)	37(9.1)
1~4학급	103(48.6)	109(51.4)	183(88.0)	25(12.0)
5학급이상	40(64.5)	22(35.5)	188(94.0)	12(6.0)
	$\chi^2(df) = 4.88(1)^*$		$\chi^2(df) = 4.45(1)^*$	

*p<.05 ***p<.001

바. 민간시설/사립기관의 정부에 대한 매도 의사

〈표 III-30〉에서 보는 것 같이 기관유형별에 따라 사립/민간 시설(기관)을 국가가 매입하겠다고 제의한다면 매도한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육시설 53.8%, 유치원 57.1%가 매도하겠다고 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매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I-30〉 기관유형별 매도 의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735(100.0)	353(100.0)	382(100.0)
매도하겠다	408(55.5)	190(53.8)	218(57.1)
매도하지 않겠다	327(44.5)	163(46.2)	164(42.9)
$\chi^2(df) = 0.78(1)$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 따른 매도 의사를 살펴 본 결과, 법인보육시설의 57.1%, 법인 외 보육시설의 50.0%, 민간개인보육시설의 53.7%, 가정보육시설의 54.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유형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III-31〉 참조).

유치원의 경우, 사립 기관을 매입하여 국공립화하는 면에서 사립유치원장의 57%, 법인유치원장의 63.6%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31〉 국가에 대한 시설/기관 매도 의사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매도하겠다	매도하지 않겠다	계	매도하겠다	매도하지 않겠다	계
합계	190(54.1)	161(45.9)	351(100.0)	218(57.4)	162(42.6)	380(100.0)
법인	4(57.1)	3(42.9)	7(100.0)	14(63.6)	8(36.4)	22(100.0)
법인 외	4(50.0)	4(50.0)	8(100.0)	-	-	-
민간개인	88(53.7)	76(46.3)	164(100.0)	-	-	-
가정	94(54.7)	78(45.3)	172(100.0)	-	-	-
사립	-	-	-	204(57.0)	154(43.0)	358(100.0)
$\chi^2(df) = 0.11(3)$			$\chi^2(df) = 0.38(1)$			

지역에 따라 비교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매도하겠다는 의견이 64.3%, 중소도시의 경우 53.1%, 대도시의 경우 55.6%로 나타나 차이가 별로 없었다(〈표 III-32〉 참조).

그러나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보육시설장의 경우 읍면지역의 70.8%, 대도시의 52.4%, 중소도시의 50.3% 순으로 읍면 지역이 보육시설을 국가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높게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장의 경우 국가에 매도하겠다는 원장은 대도시의 경우 57.8%, 중소도시의 경우 56.7%, 읍면지역의 경우 55.6%로 나타나 지역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32〉 지역별 매도 의사

단위: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전체				
계	354(100.0)	292(100.0)	84(100.0)	730(100.0)
매도하겠다	197(55.6)	155(53.1)	54(64.3)	406(55.6)
매도하지 않겠다	157(44.4)	137(46.9)	30(35.7)	324(44.4)
$\chi^2(df) = 3.31(2)$				
보육시설				
계	143(100.0)	161(100.0)	48(100.0)	352(100.0)
매도하겠다	75(52.4)	81(50.3)	34(70.8)	190(54.0)
매도하지 않겠다	68(47.6)	80(49.7)	14(29.2)	162(46.0)
$\chi^2(df) = 6.50(2)$				
유치원				
계	211(100.0)	131(100.0)	36(100.0)	378(100.0)
매도하겠다	122(57.8)	74(56.5)	20(55.6)	216(57.1)
매도하지 않겠다	89(42.2)	57(43.5)	16(44.4)	162(42.9)
$\chi^2(df) = 0.10(2)$				

*p<.05

〈표 III-33〉 인가학급수별 매도 의사

단위: 개소(%)

구분	1~4학급	5학급이상	합계
전체			
계	433(100.0)	256(100.0)	689(100.0)
매도하겠다	251(58.0)	136(53.1)	387(56.2)
매도하지 않겠다	182(42.0)	120(46.9)	302(43.8)
$\chi^2(df) = 1.53(1)$			
보육시설			
계	240(100.0)	69(100.0)	309(100.0)
매도하겠다	130(54.2)	39(56.5)	169(54.7)
매도하지 않겠다	110(45.8)	30(43.5)	140(45.3)
$\chi^2(df) = 2.99(2)$			
유치원			
계	193(100.0)	187(100.0)	380(100.0)
매도하겠다	121(62.7)	97(51.9)	218(57.4)
매도하지 않겠다	72(37.3)	90(48.1)	162(42.6)
$\chi^2(df) = 4.55(1)$			

*p<.05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수에 따른 사립의 정부 매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1~4학급 58.0%, 5학급이상 53.1%가 매도하겠다고 답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33> 참조). 보육시설의 학급수에 따른 매도에 대한 의견을 보면, 1~4학급 54.2%, 5학급이상 56.5%가 매도하겠다고 답해 전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는 1~4학급 62.7%, 5학급이상 37.3%가 매도하겠다고 답해 학급수가 적은 곳이 매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관리·감독과 서비스의 질

현재 보육시설의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의 교육의 질 제고 방안으로는 장학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관리·감독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에는 평가인증제도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어보았고, 유치원의 경우 장학지도가 교육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한 보육시설장 중 61.4%정도가 평가인증이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설립유형에 따른 평가인증제도와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90.0%, 법인 외 보육시설의 80.0%가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개인보육시설의 54.7%, 가정보육시설의 65.5%만이 평가인증제도 도입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III-34> 참조).

<표 III-34> 설립유형별 평가제도와 서비스 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관계 있음	관계 없음	관계 있음	관계 없음
합계	272(61.4)	171(38.6)	389(81.7)	87(18.3)
법인	9(90.0)	1(10.0)	18(78.3)	5(21.7)
법인 외	12(80.0)	3(20.0)	-	-
민간개인	116(54.7)	96(45.3)	-	-
가정	135(65.5)	71(34.5)	-	-
사립	-	-	371(81.9)	82(18.1)
	$\chi^2(df) = 11.12(3)**$		$\chi^2(df) = 0.19(1)$	

**p<.01

지역별로 평가인증제도와 서비스의 질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70.3%, 대도시의 경우 64.8%, 중소도시의 경우 55.9%로 나타났다(<표 III-35> 참조). 임대여부에 따라서는, 자가 건물 소유의 시설장의 경우 62.3%, 임대의 경우 60.0%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보육시설의 학급 수에 따른 평가인증제도와 서비스 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1~4학급 60.1%, 5학급이상 63.7%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시설의 학급 규모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5> 평가인증제도와 서비스 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

단위: 개소(%)

구분	관계 있음	관계 없음
지역		
전체	274(61.6)	171(38.4)
대도시	116(64.8)	63(35.2)
중소도시	113(55.9)	89(44.1)
읍면지역	45(70.3)	19(29.7)
	$\chi^2(df) = 5.56(2)$	
임대여부		
전체	259(61.4)	163(38.6)
자가	154(62.3)	93(37.7)
임대	105(60.0)	70(40.0)
	$\chi^2(df) = 0.24(1)$	
학급수		
전체	236(61.0)	151(39.0)
1~4학급	178(60.1)	118(39.9)
5학급이상	58(63.7)	33(36.3)
	$\chi^2(df) = 0.38(1)$	

장학지도와 교육의 질 사이의 관계에 대해 유치원 원장의 81.7%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장의 81.9%, 법인유치원장의 78.3%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 반면에 법인유치원장의 21.7%, 사립유치원장의 18.1%에서 장학과 교육의 질은 관련이 없다고 하여 보육시설과는 달리 사립과 법인 간 응답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유치원 원장들 가운데 장학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비율이 대도시의 경우 87.4%, 읍면지역 75.6%, 중소도시 73.9%로 나타났다(<표 III-36> 참조). 대도시가 가장 높은 비율로 장학지도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가 건물을 소유한 원장의 81.9%, 임대인 경우 77.4%가 장학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여 건물소유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학급규모별 비교를 보면, 1~4학급 83.1%, 5학급이상 80.5%가 장학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유치원의 규모에 따른 장학지도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6> 장학지도와 교육의 질 관계에 대한 유치원 원장의 인식

단위: 개소(%)

구분		관계 있음	관계 없음
설립유형	전체	389(81.7)	87(18.3)
	법인	18(78.3)	5(21.7)
	사립	371(81.9)	82(18.1)
		$\chi^2(df) = 0.19(1)$	
지역	전체	388(81.7)	87(18.3)
	대도시	235(87.4)	34(12.6)
	중소도시	122(73.9)	43(26.1)
	읍면지역	31(75.6)	10(24.4)
		$\chi^2(df) = 13.42(2)^{***}$	
임대여부	전체	377(81.6)	85(18.4)
	자가	353(81.9)	78(18.1)
	임대	24(77.4)	7(22.6)
		$\chi^2(df) = 0.38(1)$	
학급수	전체	389(81.9)	86(18.1)
	1~4학급	207(83.1)	42(16.9)
	5학급이상	182(80.5)	44(19.5)
			$\chi^2(df) = 0.54(1)$

***p<.001

3.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 현황

가. 재정관련 공공성 수행 현황

1) 국정 보육료 자료의 제공 여부

국가가 정한 일정 보육료에 관한 자료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지 조사하였다. 보육시설장에게만 조사하였으며, 이는 유치원의 경우는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어 국가가 정한 적정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표 III-37> 참조).

<표 III-37> 국정 보육료 공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공개	비공개	계
설립유형			
합계	34(7.7)	406(92.3)	440(100.0)
법인	0(0.0)	9(100.0)	9(100.0)
법인 외	2(13.3)	13(86.7)	15(100.0)
민간개인	17(8.1)	194(91.9)	211(100.0)
가정	15(7.3)	190(92.7)	205(100.0)
-주)			
지역			
합계	35(7.9)	407(92.1)	442(100.0)
대도시	10(5.6)	167(94.4)	177(100.0)
중소도시	17(8.5)	184(91.5)	201(100.0)
읍면지역	8(12.5)	56(87.5)	64(100.0)
$\chi^2(df) = 3.17(2)$			
임대여부			
합계	33(7.9)	387(92.1)	420(100.0)
자가	19(7.8)	226(92.2)	245(100.0)
임대	14(8.0)	161(92.0)	175(100.0)
$\chi^2(df) = 0.01(1)$			
학급수			
합계	31(8.1)	354(91.9)	385(100.0)
1~4학급	24(8.1)	271(91.9)	295(100.0)
5학급이상	7(7.8)	83(92.2)	90(100.0)
$\chi^2(df) = 0.01(1)$			

주) 경우의 수가 통계 분석에 부적합함.

보육료의 공개여부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442개소 중 대도시 보육시설장의 94.4%, 중소도시의 91.5%, 읍면지역의 87.5%가 보육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92.1%가 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대여부별, 학급수별, 설립 유형별로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2) 보육료 및 납입금 수령 방법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수령하는 유형으로 보육시설장은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한 수령이 52.1%, 교사 혹은 시설장이 직접 수령이 32.8%, 지로를 통한 수령이 12.4%, 기타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령이 2.7%로 나타났다(<표 III-38> 참조). 보육료 수령 방법에 대해 보육시설장은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직접 수령이나 은행의 지로 신용카드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수령 방법에 대해 유치원장은 49.0%가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24.2%가 교사 혹은 원장이 직접 수령, 24.0%가 은행의 지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용카드를 통한 수령은 2.8%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납입금 수령방법의 경우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한 수령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직접 수령 또는 은행의 지로를 통한 수령과 신용카드를 통한 수령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보육료 및 납입금 수령 방법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1319(100.0)	629(100.0)	690(100.0)
교사 혹은 원장이 직접 수령	373(28.3)	206(32.8)	167(24.2)
은행의 지로를 통한 수령	244(18.5)	78(12.4)	166(24.0)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한 수령	666(50.5)	328(52.1)	338(49.0)
신용카드를 통한 수령	36(2.7)	17(2.7)	19(2.8)

3) 회계 담당자 유형

기관유형에 따른 회계담당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 89.1%, 유치원 58.1%가 시설장(원장)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III-39> 참조). 유치원의 경우, 원장 외에 원감 혹은 주임이 17.9%, 경리직원이 18.4%를 나타내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장이 회계를 담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유형에 따른 회계 담당자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회계담당자 유형

단위: 개소(%)

구분	시설장 원장	원감 /주임	교사중 담당자	경리 직원	운전자/ 기타직원	계
기관유형						
합계	634(73.1)	94(10.8)	26(3.0)	93(10.7)	20(2.3)	867(100.0)
보육시설	375(89.1)	14(3.3)	9(2.1)	11(2.6)	12(2.9)	421(100.0)
유치원	259(58.1)	80(17.9)	17(3.8)	82(18.4)	8(1.8)	446(100.0)
$\chi^2(df) = 124.41(4)^{***}$						
지역						
합계	631(73.2)	93(10.8)	26(3.0)	92(10.7)	20(2.3)	862(100.0)
대도시	292(69.9)	52(12.4)	13(3.1)	53(12.7)	8(1.9)	418(100.0)
중소도시	258(75.7)	32(9.4)	9(2.6)	32(9.4)	10(2.9)	341(100.0)
읍면지역	81(78.6)	9(8.7)	4(3.9)	7(6.8)	2(1.9)	103(100.0)
$\chi^2(df) = 8.32(8)$						
임대여부						
합계	303(73.2)	92(11.1)	22(2.7)	89(10.7)	19(2.3)	828(100.0)
자가	434(68.5)	86(13.6)	17(2.7)	84(13.2)	13(2.1)	634(100.0)
임대	172(88.7)	6(3.1)	5(2.6)	5(2.6)	6(3.1)	194(100.0)
$\chi^2(df) = 39.39(4)^{***}$						
학급수						
합계	581(72.0)	91(11.3)	24(3.0)	93(11.5)	18(2.2)	807(100.0)
1~4학급	411(80.4)	38(7.4)	17(3.3)	34(6.7)	11(2.2)	511(100.0)
5학급이상	170(57.4)	53(17.9)	7(2.4)	59(19.9)	7(2.4)	296(100.0)
$\chi^2(df) = 61.29(4)^{***}$						

***p<.001

육아지원기관 시설(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회계담당자 유형을 살펴본 결과, 자가 건물 시설(기관)장의 경우 68.5%, 임대의 경우 88.7%가 시설장/원장이 회계를 담당한다고 답하였다. 임대여부에 따른 회계담당자 유형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가에 비해 임대의 경우가 시설장/원장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육아지원기관의 학급 수에 따른 회계담당자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1~4학급 80.4%, 5학급이상 57.4%가 시설장/원장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나 기관의 규모가 작으면 원장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큰 경우는 경리나 원감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예·결산의 수행

① 수행여부 및 방법

기관유형에 따른 예·결산수행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보육시설 54.3%, 유치원 84.4%가 금전출납부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보육시설의 경우 예·결산을 하지 않는 비율은 유치원이 1.6%인데 반해 보육시설은 21.4%로 높은 비율을 보여 기관유형에 따른 예·결산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0> 참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예·결산수행법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읍면지역의 71.4%, 대도시의 71.2%, 중소도시의 67.3%가 예·결산 수행에 금전출납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의 예·결산 수행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다(12.5%), 예·결산을 안한다(11.2%), 회계사를 이용해서 예·결산을 수행한다는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였다.

육아지원기관 시설(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예·결산 수행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소유 73.7%, 임대 56.4%가 금전출납부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예·결산을 안 하는 경우도 자가 7.4%, 임대 23.6%로 나타나 임대로 시설을 경영하는 경우에 예·결산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대여부에 따른 예·결산 수행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수에 따른 예·결산수행을 살펴본 결과, 1~4학급 66.5%, 5학급이상 76.1%가 금전출납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4학급에서는 예·결산을 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15.7%나 차지해 5학급이상의 4.2%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 기관장의 경력에 따른 운영비의 예·결산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금전 출납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경력 10년 이하 65.3%, 10년 이상은 74.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력이 높을수록 예·결산을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표 III-40〉 예·결산 수행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금전출납부	전문 컴퓨터프로그램	회계전문가	없음	계
기관유형					
합계	606(69.8)	108(12.4)	57(6.6)	97(11.2)	868(100.0)
보육시설	228(54.3)	71(16.9)	31(7.4)	90(21.4)	420(100.0)
유치원	378(84.4)	37(8.3)	26(5.8)	7(1.6)	448(100.0)
$\chi^2(df) = 118.51(3)^{***}$					
지역					
합계	602(69.7)	108(12.5)	57(6.6)	97(11.2)	864(100.0)
대도시	304(71.2)	49(11.5)	35(8.2)	39(9.1)	427(100.0)
중소도시	228(67.3)	43(12.7)	20(5.9)	48(14.2)	339(100.0)
읍면지역	70(71.4)	16(16.3)	2(2.0)	10(10.2)	98(100.0)
$\chi^2(df) = 11.33(6)$					
임대여부					
합계	580(69.6)	103(12.4)	57(6.8)	93(11.2)	833(100.0)
자가	470(73.7)	78(12.2)	43(6.7)	47(7.4)	638(100.0)
임대	110(56.4)	25(12.8)	14(7.2)	46(23.6)	195(100.0)
$\chi^2(df) = 41.68(3)^{***}$					
학급수					
합계	572(70.1)	99(12.1)	52(6.4)	93(11.4)	816(100.0)
1~4학급	339(66.5)	59(11.6)	32(6.3)	80(15.7)	510(100.0)
5학급이상	233(76.1)	40(13.1)	20(6.5)	13(4.2)	306(100.0)
$\chi^2(df) = 24.89(3)^{***}$					
경력					
합계	606(69.8)	108(12.4)	57(6.6)	97(11.2)	868(100.0)
1-10년	280(65.3)	52(12.1)	24(5.6)	73(17.0)	429(100.0)
11년이상	326(74.3)	56(12.8)	33(7.5)	24(5.5)	439(100.0)
$\chi^2(df) = 29.70(3)^{***}$					

***p<.001

② 예·결산 공개 여부

기관유형에 따른 예·결산 공개여부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 23.7%, 유치원 45.8%가 공개한다고 답하였다(<표 III-41> 참조). 전체적으로 공개한다는 응답이 평균 35.3%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육시설 보다는 유치원의 예·결산 공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기관유형에 따른 예·결산 공개여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1> 기관유형별 예·결산 공개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910(100.0)	434(100.0)	476(100.0)
공개	321(35.3)	103(23.7)	218(45.8)
비공개	589(64.7)	331(76.3)	258(54.2)

$\chi^2(df) = 48.41(1)^{***}$

***p<.001

육아지원기관 시설(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예·결산 공개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가소유 39.2%, 임대사용 22.9%가 공개한다고 답했다(<표 III-42> 참조). 시설(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예·결산의 공개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가 보다, 임대의 경우가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수에 따른 예·결산 공개여부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32.7%, 5학급이상 42.2%가 공개한다고 답해, 규모가 큰 기관(시설)이 공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3> 참조).

보육시설의 학급 수에 따른 예·결산 공개여부를 살펴보면, 1~4학급 20.1%, 5학급이상 35.2%가 공개한다고 답해, 공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는 학급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2〉 시설(기관) 임대여부별 예·결산 공개여부

		단위: 개소(%)		
구분		자가	임대	합계
전체	계	669(100.0)	201(100.0)	870(100.0)
	공개한다	262(39.2)	46(22.9)	308(35.4)
	공개안한다	407(60.8)	155(77.1)	562(64.6)
$\chi^2(df) = 17.91(1)^{***}$				
보육시설	계	241(100.0)	170(100.0)	411(100.0)
	공개한다	65(27.0)	33(19.4)	98(23.8)
	공개안한다	176(73.0)	137(80.6)	313(76.2)
$\chi^2(df) = 3.14(1)$				
유치원	계	428(100.0)	31(100.0)	459(100.0)
	공개한다	197(46.0)	13(41.9)	210(45.8)
	공개안한다	231(54.0)	18(58.1)	249(54.2)
$\chi^2(df) = 0.19(1)$				

***p<.001

〈표 III-43〉 인가학급수별 예·결산 공개여부

		단위: 개소(%)		
구분		1~4학급	5학급이상	합계
전체	계	535(100.0)	313(100.0)	848(100.0)
	공개한다	175(32.7)	132(42.2)	30(36.2)
	공개안한다	360(67.3)	181(57.8)	541(63.8)
$\chi^2(df) = 7.66(1)^{**}$				
보육시설	계	288(100.0)	88(100.0)	376(100.0)
	공개한다	58(20.1)	31(35.2)	89(23.7)
	공개안한다	230(79.9)	57(64.8)	287(76.3)
$\chi^2(df) = 8.49(1)^{**}$				
유치원	계	247(100.0)	225(100.0)	472(100.0)
	공개한다	117(47.4)	101(44.9)	218(46.2)
	공개안한다	130(52.6)	124(55.1)	254(53.8)
$\chi^2(df) = 0.29(1)$				

**p<.01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 따른 예·결산공개여부의 차이를 보면 법인보육시설의 경우 88.9%, 법인 외 보육시설의 경우 66.7%가 예·결산을 공개한다고 응답해 비교적 예·결산을 공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4> 참조). 반면 민간개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75.1%, 83.7%로, 예·결산을 공개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 중 가정보육시설의 경우가 예·결산공개를 가장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설립 유형에 따른 예·결산공개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 법인유치원장의 45.5%, 사립유치원장의 45.9%에서 공개한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III-44> 설립유형별 예·결산 공개여부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공개한다	공개안한다	계	공개한다	공개안한다	계
합계	102(23.7)	329(76.3)	431(100.0)	217(45.9)	256(54.1)	473(100.0)
법인	8(88.9)	1(11.1)	9(100.0)	10(45.5)	12(54.5)	22(100.0)
법인 외	10(66.7)	5(33.3)	15(100.0)	-	-	-
민간개인	51(24.9)	154(75.1)	205(100.0)	-	-	-
가정	33(16.3)	169(83.7)	202(100.0)	-	-	-
사립	-	-	-	207(45.9)	244(54.1)	451(100.0)
	$\chi^2(df) = 42.72(3)^{***}$			$\chi^2(df) = 0.00(1)$		

***p<.001

③ 예·결산 공개 방법

<표 III-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비를 공개할 때 보육시설은 정부보고 49%, 운영위원회 35.4%, 유인물 배포 13.5%, 홈페이지 2.1%의 순으로 나타났고 유치원은 정부보고가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유인물 배포 11.1%, 홈페이지 이용 1.6% 등의 순이었다.

〈표 III-45〉 예·결산 공개 방법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285(100)	96(100)	189(100)
정부보고	212(74.4)	47(49.0)	165(87.3)
유인물 배포	34(11.9)	13(13.5)	21(11.1)
운영위원회	34(11.9)	34(35.4)	0(0)
홈페이지	5(1.8)	2(2.1)	3(1.6)

주) 경우의 수가 통계분석에 부적합 함

5) 정부지원금과 서비스 질 향상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 82.5%가 교육/보육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표 III-46〉 참조). 기관유형에 따른 지원금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 75.3%, 유치원 87.3%가 지원금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보육시설의 경우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도 23.3%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기관유형에 따른 지원금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지역별 차이를 조사하였다. 보육시설장과 유치원장들은 읍면지역의 84.8%, 대도시의 83.3%, 중소도시의 78.7%가 지원금의 지급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여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육아지원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지원금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의 경우 84.6%, 임대인 경우 72.1%가 지원금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다. 임대여부에 따른 지원금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46> 지원금과 서비스 질 향상의 관계

단위: 개소(%)

구분	향상됨	관계없음	계
기관유형			
합계	608(82.5)	129(17.5)	737(100.0)
보육시설	256(76.6)	78(23.4)	334(100.0)
유치원	352(87.3)	51(12.7)	403(100.0)
$\chi^2(df) = 14.48(1)^{***}$			
지역			
합계	304(82.4)	129(17.6)	733(100.0)
대도시	304(83.7)	59(16.3)	363(100.0)
중소도시	233(80.1)	58(19.9)	291(100.0)
읍면지역	67(84.8)	12(15.2)	79(100.0)
$\chi^2(df) = 1.86(2)$			
임대여부			
합계	584(82.6)	123(17.4)	707(100.0)
자가	473(85.4)	81(14.6)	554(100.0)
임대	111(82.5)	42(27.5)	153(100.0)
$\chi^2(df) = 13.73(1)^{***}$			

***p<.001

보육시설 설립형태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보육서비스 질적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88.0%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부지원금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법인보육시설이 75.0%, 법인 외 보육시설이 66.7%, 민간개인보육시설 63.2%순이었다(<표 III-47> 참조). 대체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과 관련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하여 사립유치원장의 87.4%, 법인유치원장의 83.3%가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7〉 설립유형별 지원금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항상됨	관계없음	계	항상됨	관계없음	계
합계	254(76.5)	78(23.5)	332(100.0)	349(87.3)	51(12.8)	400(100.0)
법인	6(75.0)	2(25.0)	8(100.0)	15(83.3)	3(16.7)	18(100.0)
법인 외	6(66.7)	3(33.3)	9(100.0)	-	-	-
민간개인	103(64.0)	58(36.0)	161(100.0)	-	-	-
가정	139(90.3)	15(9.7)	154(100.0)	-	-	-
사립	-	-	-	334(87.4)	48(12.6)	382(100.0)
	$\chi^2(df) = 30.77(3)^{***}$			$\chi^2(df) = 0.26(1)$		

***p<.001

나. 관리·감독 현황

1)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육아지원기관에서 공개하는 정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육/교육 프로그램 계획안’(87.1%)이었다(〈표 III-48〉 참조). 그와 비슷한 비율로 급간식을 공개하고 있었고(86.3%) 다음으로 시설장 관련 자료(56.0%), 교사자료(52.7%), 평가인증/장학지도 결과(35.4%)였다.

보육시설에서는 급간식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8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육/교육프로그램 계획과 시설장에 대해 각각 83.7%, 52.8%로 나타났다. 평가인증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12.8%). 이는 보육시설장이 급간식과 보육프로그램 일정, 시설장의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나 교사와 특히 평가 인증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유치원의 교사 및 운영전반에 대한 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유치원 교육 계획안이 90.3%로 공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었고 이후로 급간식이 87.6%, 교사(59.6%), 시설장(59.0%), 장학관리결과(56.3%)의 순으로 공개 한다는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48〉 운영관련 정보 공개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시설장자료 공개	521(56.0)	236(52.8)	285(59.0)
교사자료 공개	490(52.7)	202(45.2)	288(59.6)
평가인증/장학지도 결과 공개	329(35.4)	57(12.8)	272(56.3)
보육/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공개	810(87.1)	374(83.7)	436(90.3)
급·간식 공개	803(86.3)	380(85.0)	423(87.6)

주1) 복수응답 허용

2) 복수 응답일 경우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운영비 내역 공개 횟수

기관유형에 따른 운영비 공개횟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 45.6%, 유치원 85.4%가 매년 1회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III-49> 참조). 보육시설의 경우, 분기별 3회 30.7%, 부정기적 21.9%를 나타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에 따른 운영비 공개횟수를 조사하였다. 보육시설장과 유치원장 가운데 매년 1회 공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를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75.4%, 대도시의 경우 74.4%, 읍면지역의 경우 59.5%로 나타났다.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비 공개횟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소유 76.9%, 임대사용 60.8%가 년 1회 공개한다고 답하였으며, 자가 소유 13.7%, 임대사용 15.7%는 분기별로 2회 공개한다고 답하였다. 부정기적으로 운영비를 공개한다는 답변도 자가 소유 9.1%, 임대사용 23.5%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년 1회 공개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급 수에 따른 운영비 공개횟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9〉 운영비 공개횟수

단위: 개소(%)(%)

구분	매년 1회	분기별 1회	격년으로	부정기적으로	계
기관유형					
합계	274(73.3)	54(14.4)	2(0.5)	44(11.8)	374(100.0)
보육시설	52(45.6)	35(30.7)	2(1.8)	25(21.9)	114(100.0)
유치원	222(85.4)	19(7.3)	0(0.0)	19(7.3)	260(100.0)
지역					
합계	274(73.3)	54(14.4)	2(0.5)	44(11.8)	374(100.0)
대도시	154(74.4)	27(13.0)	2(1.0)	24(11.6)	207(100.0)
중소도시	98(75.4)	19(14.6)	0(0.0)	13(10.0)	130(100.0)
읍면지역	22(59.5)	8(21.6)	0(0.0)	7(18.9)	37(100.0)
임대여부					
합계	267(74.6)	50(14.0)	1(0.3)	40(11.2)	358(100.0)
자가	236(76.9)	42(13.7)	1(0.3)	28(9.1)	307(100.0)
임대	31(60.8)	8(15.7)	0(0.0)	12(23.5)	51(100.0)
학급수					
합계	267(74.2)	49(13.6)	2(0.6)	42(11.7)	360(100.0)
1~4학급	153(71.8)	30(14.1)	1(0.5)	29(13.6)	213(100.0)
5학급이상	114(77.6)	19(12.9)	1(0.7)	13(8.8)	147(100.0)

주) 경우의 수가 통계분석에 부적합 함

보육시설의 경우 운영비공개 횟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법인의 경우 분기별 1회 공개하는 시설이 50%로 가장 많았고, 법인 외 보육 시설의 경우 매년 1회 공개와 분기별 1회 공개가 각각 37.5%로 응답했다(<표 III-50> 참조). 민간개인보육시설의 경우 48.3%가 매년1회 공개 한다고 응답했고,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도 45.0%로 매년 1회 공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장의 85.4%, 법인유치원장의 85.7%에서 매년 1회씩 공개하고 분기별로 2회씩 공개하는 경우는 법인유치원장의 14.3%, 사립유치원장의 6.9%로 나타났다.

〈표 III-50〉 설립유형별 운영비 공개횟수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매년 1회	분기별 1회	격년	부정적	계	매년 1회	분기별 1회	격년	부정적	계
합계	52(45.6)	35(30.7)	2(1.8)	25(21.9)	114(100.0)	222(85.4)	19(7.3)	19(7.3)	0(0.0)	260(100.0)
법인	2(33.3)	3(50.0)	1(16.7)	0(0.0)	6(100.0)	12(85.7)	2(14.3)	0(0.0)	0(0.0)	14(100.0)
법인 외	3(37.5)	3(37.5)	0(0.0)	2(25.0)	8(100.0)	-	-	-	-	-
민간개인	29(48.3)	18(30.0)	0(0.0)	13(21.7)	60(100.0)	-	-	-	-	-
가정	18(45.0)	11(27.5)	1(2.5)	10(25.0)	40(100.0)	-	-	-	-	-
사립	-	-	-	-	-	210(85.4)	17(6.9)	19(7.7)	0(0.0)	246(100.0)

주) 경우의 수가 통계분석에 부적합 함

3) 운영비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보육시설은 33.3%가 운영비 공개가 필요하다고 답한데 비해 유치원은 57.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운영비 공개를 지지하였다(〈표 III-51〉 참조). 설립유형별로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유형을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는 가정보육시설이 70.8%, 민간개인이 6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유치원의 경우는 법인보다 사립이 불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51〉 설립유형별 운영비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필요	불필요	계	필요	불필요	계
합계	128(33.3)	255(66.4)	383(100.0)	251(57.3)	187(42.7)	438(100.0)
법인	5(71.4)	2(28.6)	7(100.0)	12(66.7)	6(33.3)	18(100.0)
법인 외	11(73.3)	4(26.7)	15(100.0)	-	-	-
민간개인	60(32.6)	123(66.8)	183(100.0)	-	-	-
가정	52(29.2)	126(70.8)	178(100.0)	-	-	-
사립	-	-	-	239(56.9)	181(43.1)	420(100.0)
	$\chi^2(df) = 16.732(3)**$			$\chi^2(df) = .672(1)$		

**p<.01

지역에 따른 운영비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보육시설장과 유치원장들은 중소도시의 59.1%, 읍면지역의 56.2%, 대도시의 49.0%가 운영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여 지역별로 운영비 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2> 참조).

보육시설장의 경우 중소도시 73.4%, 대도시 63.5%, 읍면지역 50.9%가 운영비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답하였다. 유치원장의 경우 운영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곳은 읍면지역의 63.9%, 중소도시의 41.7%, 대도시의 경우 40.4%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운영비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지역별 운영비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전체				
계	398(100.0)	335(100.0)	89(100.0)	822(100.0)
필요	203(51.0)	137(40.9)	39(43.8)	379(46.1)
불필요	195(49.0)	198(59.1)	50(56.2)	443(53.9)
$\chi^2(df) = 7.69(2)^*$				
보육시설				
계	148(100.0)	184(100.0)	53(100.0)	385(100.0)
필요	54(36.5)	49(26.6)	26(49.1)	129(33.5)
불필요	94(63.5)	135(73.4)	27(50.9)	256(66.5)
$\chi^2(df) = 10.25(4)^{**}$				
유치원				
계	250(100.0)	151(100.0)	36(100.0)	437(100.0)
필요	149(59.6)	88(58.3)	13(36.1)	250(57.2)
불필요	101(40.4)	63(41.7)	23(63.9)	187(42.8)
$\chi^2(df) = 7.20(2)^*$				

* $p < .05$ ** $p < .01$

육아지원기관 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비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소유 51.1%, 임대인 경우 30.2%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자가의 경우보다 임대의 경우, 운영비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3> 참조). 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운

영비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보육시설 시설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비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소유 39.7%, 임대인 경우 25.0%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자가, 임대 모두 보육시설 시설장의 경우, 운영비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비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치원 원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비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 소유 57.4%, 임대인 경우 54.8%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53> 임대여부별 운영비공개 필요성 인식

단위: 개소(%)

구분	자가	임대	합계
전체			
계	613(100.0)	179(100.0)	792(100.0)
필요	313(51.1)	54(30.2)	367(46.3)
불필요	300(48.9)	125(69.8)	425(53.7)
$\chi^2(df) = 24.32(1)^{***}$			
보육시설			
계	219(100.0)	140(100.0)	367(100.0)
필요	87(39.7)	37(25.0)	124(33.8)
불필요	132(60.3)	111(75.0)	243(66.2)
$\chi^2(df) = 8.56(1)^{**}$			
유치원			
계	394(100.0)	31(100.0)	425(100.0)
필요	226(57.4)	17(54.8)	243(57.2)
불필요	168(42.6)	14(45.2)	182(42.8)
$\chi^2(df) = 0.07(1)$			

p<.01 *p<.001

운영비 내역이 공개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보육시설장은 37.5%, 유치원 원장의 37.2%가 사유재산의 이유를 들었다(<표 III-54> 참조). 내역의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요소 간에 다양하였고 설립 유형에 상관없이 사유재산을 이유로 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54〉 예·결산 공개가 불필요한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573(100.0)	275(100)	298(100)
공개해도 이득이 없기 때문	56(9.8)	25(9.1)	31(10.4)
사유재산이기 때문	214(37.3)	103(37.5)	111(37.2)
오해나 좋지 못한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	70(12.2)	29(10.5)	41(13.8)
국가지원이 거의 없으므로	27(4.7)	12(4.4)	15(5.0)
회계처리 일손부족	43(7.5)	13(4.7)	30(10.1)
운영규모가 작고 운영비기 부족하므로	94(16.4)	53(19.3)	41(13.8)
이미 공개하고 있으므로(교육청 보고, 감사 등)	13(2.3)	8(2.9)	5(1.7)
기타	56(9.8)	32(11.6)	24(8.1)

4)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기관유형별로 운영위원회 설치여부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 31.3%, 유치원 10.7%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해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유치원에 비해서는 보육시설이 운영위원회 설치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계적으로도 보육시설과 유치원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5> 참조). 운영비 내역이 공개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보육시설장은 37.5%, 유치원 원장의 37.2%가 사유재산의 이유를 들었다. 내역의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요소 간에 다양하였고 설립 유형에 상관없이 사유재산을 이유로 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I-54> 참조).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운영위원회설치 여부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대도시의 84.2%, 중소도시의 77.0%, 읍면지역의 69.7%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운영위원회의 설치 비율이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대여부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가의 경우 79.5%, 임대인 경우 79.8%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하여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급수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여부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13.9%, 5학급 이상 23.1%가 설치하고 있다고 답하여 규모가 큰 기관(시설)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55>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설치	미설치	계
기관유형			
합계	176(20.2)	694(79.8)	870(100.0)
보육시설	126(31.3)	277(68.7)	403(100.0)
유치원	50(10.7)	417(89.3)	467(100.0)
$\chi^2(df) = 56.65(1)^{***}$			
지역			
합계	176(20.3)	690(79.7)	866(100.0)
대도시	67(15.8)	356(84.2)	423(100.0)
중소도시	79(23.0)	265(77.0)	344(100.0)
읍면지역	30(30.3)	69(69.7)	99(100.0)
$\chi^2(df) = 12.82(2)^{**}$			
임대여부			
합계	170(21.5)	661(79.5)	831(100.0)
자가	132(20.5)	511(79.5)	643(100.0)
임대	38(20.2)	150(79.8)	188(100.0)
$\chi^2(df) = 0.01(1)$			
학급수			
합계	157(19.1)	663(80.9)	820(100.0)
1~4학급	72(13.9)	445(86.1)	517(100.0)
5학급이상	85(28.1)	218(71.9)	303(100.0)
$\chi^2(df) = 24.63(1)^{***}$			

p<.01, *p<.001

보육시설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법인이었다. 그러나 법인은 사례수가 몇 안되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 순위인 법인 외 단체시설도 마찬가지이다. 민간개인은 45.5%가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정은 12.2%로 최하의 설치 비율을 보였다(<표 III-56> 참조).

유치원의 경우는 법인유치원장의 21.7%, 사립유치원장의 10.2%에서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표 III-56〉 설립유형별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설치	미설치	계	설치	미설치	계
합계	125(31.2)	276(68.8)	401(100.0)	50(10.8)	414(89.2)	464(100.0)
법인	6(75.0)	2(25.0)	8(100.0)	5(21.7)	18(78.3)	45(10.2)
법인 외	9(64.3)	5(35.7)	14(100.0)	-	-	-
민간개인	87(45.5)	104(54.5)	191(100.0)	-	-	-
가정	23(12.2)	165(87.8)	188(100.0)	-	-	-
사립	-	-	-	45(10.2)	396(89.8)	441(100.0)
	$\chi^2(df) = 64.15(3)^{***}$			$\chi^2(df) = 3.03(1)$		

***p<.001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육시설장의 64.1%가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아니고 또한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15.2%가 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표 III-57〉 참조). 유치원장의 운영위원회 미설치 이유를 보면 27.9%가 지역인사 초빙의 어려움 등을 들었고, 26.2%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운영위원회 미설치의 이유는 설립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III-57〉 운영위원회 미설치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522(100.0)	217(100.0)	305(100.0)
학부모의 간섭으로 자율적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48(9.2)	9(4.1)	39(12.8)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가 아니므로/규모가 작은 시설이므로	161(30.8)	139(64.1)	22(7.2)
현실성이 없고 형식적인 것이므로/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어서	39(7.5)	6(2.8)	33(10.8)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13(21.6)	33(15.2)	80(26.2)
현재 업무가 너무 많아 설치가 어렵기 때문	15(2.9)	10(4.6)	5(1.6)
다른 기구를 이용해 운영위원회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학부모회 등	21(4.0)	5(2.3)	16(5.2)
학부모간 불화가 우려되기 때문	7(1.3)	-	7(2.3)
운영위원회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른다	20(3.8)	2(0.9)	18(5.9)
기타/지역인사의 초빙이 어렵다,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등	98(18.8)	13(6.0)	85(27.9)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 개최 주기에 대하여 보육시설장은 45.0%의 의견으로 5~6개월을 주기로 한다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장은 55.3%의 의견으로 6개월을 주기로 한다고 나타냈다(<표 III-58> 참조). 이러한 기관유형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 주기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 2개월마다’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특이한 결과를 보인다.

<표 III-58>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158(100.0)	111(100.0)	47(100.0)
1-2개월	42(26.6)	29(25.8)	13(27.6)
3-4개월	42(26.5)	36(32.7)	6(12.8)
5-6개월	71(45.0)	45(40.5)	26(55.3)

운영위원회 결과 공개여부는 63.9%가 공개한다고 응답하여 공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보면, 보육시설 59.9%, 유치원 65.8%가 공개한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표 III-59> 참조).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는지 여부를 지역규모에 따라 조사하였다. 비공개하는 비율이 대도시의 경우 44.1%, 읍면지역의 경우 40.6%, 중소도시의 경우 31.1%로 나타나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육아지원기관의 학급 수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결과공개여부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45.2%, 5학급이상 29.7%가 공개한다고 답하여 학급수가 적은 시설(기관)이 상대적으로 공개의 비율이 높았다.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결과의 공개여부를 보면, 공개하고 있다는 응답이 법인 외 보육시설의 경우 9개소 10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법인보육시설 66.7%, 민간개인보육시설 64.4%,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41.0%의 순으로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표 III-60> 참조). 보육시설의 설립유형별 수치적 차이는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한다는 응답은 사립유치원장 34.3%, 법인유치원장의 33.3%로 나타났고 반면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법인유치원장 66.7%, 사립유치원장 65.7%로 차이가 없었다.

〈표 III-59〉 운영위원회의 결과 공개 실태

단위: 개소(%)

구분	공개	비공개	계
기관유형			
합계	133(63.9)	82(38.1)	215(100.0)
보육시설	85(59.9)	57(40.1)	142(100.0)
유치원	48(65.8)	25(34.2)	73(100.0)
$\chi^2(df) = 0.71(1)$			
지역			
합계	133(61.9)	82(38.1)	215(100.0)
대도시	52(55.9)	41(44.1)	93(100.0)
중소도시	62(68.9)	28(31.1)	90(100.0)
읍면지역	19(59.4)	13(40.6)	32(100.0)
$\chi^2(df) = 3.36(2)$			
학급수			
합계	74(37.9)	121(62.1)	195(100.0)
1~4학급	47(45.2)	57(54.8)	104(100.0)
5학급이상	27(29.7)	64(70.3)	91(100.0)
$\chi^2(df) = 4.40(1)^*$			

*p<.05

〈표 III-60〉 설립유형별 운영위원회 결과 공개 실태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공개	비공개	계	공개	비공개	계
전체	85(60.3)	56(39.7)	141(100.0)	48(65.8)	25(34.2)	73(100.0)
법인	4(66.7)	2(33.3)	6(100.0)	4(66.7)	2(33.3)	6(100.0)
법인 외	9(100.0)	0(0.0)	9(100.0)	-	-	-
민간개인	56(64.4)	31(35.6)	87(100.0)	-	-	-
가정	16(41.0)	23(59.0)	39(100.0)	-	-	-
사립	-	-	-	44(65.7)	23(34.3)	67(100.0)
-주1)				$\chi^2(df) = 0.00(1)$		

주1) 경우의 수가 통계분석에 부적절함

5) 자체평가 실시여부

육아지원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800개소 중에서 대도시의 49.0%인 198개소, 중소도시의 37.5%인 114개소, 읍면지역의 30.4%인 28개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1> 참조).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과 연관시켜 해석해 보면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한 평가 비중이 높고,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내부의 평가체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규모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빈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도시 36.1%, 중소도시 31.3% 읍면지역 28.6%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치원의 경우 자체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비율이 50.8%,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비율이 32.9%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16.3%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자체평가가 실시되는 유치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의 57.0%, 중소도시의 44.4%, 읍면지역의 33.3%로 나타났다. 지역규모가 클수록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61〉 지역별 자체평가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전체				
계	404(100.0)	304(100.0)	92(100.0)	800(100.0)
정기적 실시	198(49.0)	114(37.5)	28(30.4)	340(42.5)
부정기적 실시	141(34.9)	137(45.1)	38(41.3)	316(39.5)
실시하지 않음	65(16.1)	53(17.4)	26(28.3)	144(18.0)
$\chi^2(df) = 19.84(4)^{***}$				
보육시설				
계	155(100.0)	160(100.0)	56(100.0)	371(100.0)
정기적 실시	56(36.1)	50(31.3)	16(28.6)	122(32.9)
부정기적 실시	69(44.5)	82(51.3)	24(42.9)	175(47.2)
실시하지 않음	30(19.4)	28(17.5)	16(28.6)	74(19.9)
$\chi^2(df) = 4.55(4)$				
유치원				
계	249(100.0)	144(100.0)	36(100.0)	429(100.0)
정기적 실시	142(57.0)	64(44.4)	12(33.3)	218(50.8)
부정기적 실시	72(28.9)	55(38.2)	14(38.9)	141(32.9)
실시하지 않음	35(14.1)	25(17.4)	10(27.8)	70(16.3)
$\chi^2(df) = 11.80(4)^{**}$				

p<.01 *p<.001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수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여부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78.6%, 5학급이상 85.2%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답했다(〈표 III-62〉 참조).

보육시설의 경우는, 1~4학급 76.6%, 5학급이상 91.4%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답했으며,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학급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은 1~4학급 79.4%, 5학급이상 86.8%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답해, 전체적으로 학급 수가 많은 곳이 자체평가 실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62〉 인가학급수별 자체평가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1~4학급	5학급이상	합계
전체			
계	468(100.0)	287(100.0)	755(100.0)
정기적 실시	177(37.8)	152(53.0)	329(43.6)
부정기적 실시	191(40.8)	101(35.2)	292(38.7)
실시하지 않음	100(21.4)	34(11.8)	134(17.7)
$\chi^2(df) = 19.90(2)^{***}$			
보육시설			
계	244(100.0)	82(100.0)	326(100.0)
정기적 실시	74(30.3)	37(45.1)	111(34.0)
부정기적 실시	113(46.3)	38(46.3)	151(46.3)
실시하지 않음	57(23.4)	7(8.5)	64(19.6)
$\chi^2(df) = 10.82(2)^{**}$			
유치원			
계	224(100.0)	205(100.0)	429(100.0)
정기적 실시	103(46.0)	115(56.1)	218(50.8)
부정기적 실시	78(34.8)	64(30.7)	141(32.9)
실시하지 않음	43(19.2)	27(13.2)	70(16.3)
$\chi^2(df) = 5.08(2)$			

p<.01 *p<.001

보육시설 설립유형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법인 외 보육시설이 69.2%로 가장 많았고 법인보육시설도 44.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III-63〉 참조). 반면 민간개인보육시설의 경우 49.7%,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46.3%가 부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하여 민간개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법인보육시설과 법인 외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에서는 사립유치원장의 51.2%, 법인유치원장의 43.5%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법인유치원장의 30.4%, 사립유치원장의 33.1%에서는 평가를 부정기적으로 한다고 답하였으며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법인유치원장의 26.1%, 사립유치원장의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유형별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63〉 설립유형별 자체평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정기적 실시	부정기적 실시	실시하지 않음	계	정기적 실시	부정기적 실시	실시하지 않음	계
전체	120(32.5)	175(47.4)	74(20.1)	369(100.0)	219(50.8)	142(32.9)	70(16.2)	431(100.0)
법인	4(44.4)	4(44.4)	1(11.1)	9(100.0)	10(43.5)	7(30.4)	6(26.1)	23(100.0)
법인 외	9(69.2)	4(30.8)	0(0.0)	13(100.0)	-	-	-	-
민간개인	69(37.7)	91(49.7)	23(12.6)	183(100.0)	-	-	-	-
가정	38(23.2)	76(46.3)	50(30.5)	164(100.0)	-	-	-	-
사립	-	-	-	-	209(51.2)	135(33.1)	64(15.7)	408(100.0)
	$\chi^2(df) = 29.71(6)^{***}$				$\chi^2(df) = 1.75(2)$			

***p<.001

6) 교사임면사항 보고

〈표 III-64〉와 같이 기관유형별에 따른 교사임면 사항보고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 93.7%, 유치원 99.8%가 임면시 바로 보고한다고 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III-64〉 교사임면사항 보고 시기

단위: 개소(%)

구분	임면즉시	6개월이내	1년이내	부정기적	하지않음	계
기관유형						
합계	880(96.9)	17(1.9)	5(0.6)	1(0.1)	5(0.6)	908(100.0)
보육시설	404(93.7)	17(3.9)	4(0.9)	1(0.2)	5(1.2)	431(100.0)
유치원	476(99.8)	0(0.0)	1(0.2)	0(0.0)	0(0.0)	477(100.0)
지역						
합계	876(96.9)	17(1.9)	5(0.6)	1(0.1)	5(0.6)	904(100.0)
대도시	433(97.7)	7(1.6)	2(0.5)	0(0.0)	1(0.2)	443(100.0)
중소도시	347(96.7)	5(1.4)	3(0.8)	1(0.3)	3(0.8)	359(100.0)
읍면지역	96(94.1)	5(4.9)	0(0.0)	0(0.0)	1(1.0)	102(100.0)

주) 경우의 수가 통계 분석에 부적합함

4.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가. 정부지원금 투자의 우선순위

지원금이 투자되어야 할 분야를 순위대로 표시하면 보육시설에서는 1순위로 교사 인건비(89.5%)가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2, 3 순위로는 교재·교구비(41.4%, 42.6%)를 가장 높은 비율로 원했다(<표 III-65> 참조). 유치원에서도 1순위로 교사인건비(68.7%)를 선택하였으며, 2, 3순위는 교재·교구비(42.4%)로 보육시설과 동일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지원금이 투자되기를 바라는 1순위가 교사 인건비(77.5%)임을 알 수 있다.

<표 III-65> 정부지원금 투자의 우선순위

단위: 개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유치원
계 ^{주)}	421(100.0)	426(100.0)	343(100.0)	397(100.0)	350(100.0)	406(100.0)
1. 교사인건비	377(89.5)	301(70.7)	26(7.6)	60(15.1)	23(6.6)	41(10.1)
2. 교재·교구비	10(2.4)	28(6.6)	142(41.4)	169(42.6)	149(42.6)	153(37.7)
3. 시설개선비	32(7.6)	92(21.6)	128(37.3)	142(35.8)	122(34.9)	127(31.3)
4. 차량운영비	2(0.5)	5(1.2)	47(13.7)	26(6.5)	56(16.0)	85(20.9)

주) 순위별 계의 차이는 2, 3 순위에 대한 무응답이 많았기 때문임.

나.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표 III-66>과 같이 기관유형에 따라 재정지원과 평가결과의 연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의 경우 38.2%, 유치원 52.5%가 찬성한다고 답해, 보육시설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66〉 기관유형별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839(100.0)	395(100.0)	444(100.0)
연계 찬성	384(45.8)	151(38.2)	233(52.5)
연계 반대	455(54.2)	244(61.8)	211(47.5)

$$\chi^2(df) = 17.10(1)***$$

***p<.001

지원과 평가연계에 대한 입장을 지역별로 연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가 58.1%, 중소도시 51.0%, 읍면지역 50.0% 나타나 지역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II-67〉 참조). 보육시설의 경우 중소도시의 63.7%, 대도시의 62.3%, 읍면지역의 54.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가 정부지원금과 평가 결과를 연계하는 것에 관해 가장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데 반해 중소도시가 가장 이러한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평가제도와 정부의 지원금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 64.1%, 읍면지역의 경우 56.4%, 대도시의 경우 44.5%가 정부지원금과 평가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가 가장 긍정적으로 이를 지지하는데 반해 대도시의 유치원에서 가장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에 따른 유치원 평가제도와 정부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지역별 의견

단위: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전체				
계	401(100.0)	335(100.0)	98(100.0)	834(100.0)
연계 찬성	168(41.9)	164(49.0)	49(50.0)	381(45.7)
연계 반대	233(58.1)	171(51.0)	49(50.0)	453(54.3)
$\chi^2(df) = 4.50(2)$				
보육시설				
계	154(100.0)	182(100.0)	59(100.0)	395(100.0)
연계 찬성	58(37.7)	66(36.3)	27(45.8)	151(38.2)
연계 반대	96(62.3)	116(63.7)	32(54.2)	244(61.8)
$\chi^2(df) = 1.74(2)$				
유치원				
계	247(100.0)	153(100.0)	39(100.0)	439(100.0)
연계 찬성	110(44.5)	98(64.1)	22(56.4)	230(52.4)
연계 반대	137(55.5)	55(35.9)	17(43.6)	209(47.6)
$\chi^2(df) = 14.71(2)^{***}$				

***p<.001

육아지원기관 시설(기관)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의 경우 49.4%, 임대인 경우 33.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의 찬성 비율이 의미 있게 높았다(<표 III-68> 참조).

보육시설 시설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의 경우 43.1%, 임대인 경우 31.0%가 찬성하는 것으로 답하여 찬성의 비율이 낮았다. 두 집단 간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임대인 경우가 자가의 경우보다 지원과 평가 연계에 보다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가의 52.8%, 임대인 4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답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68〉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임대여부별 의견

단위: 개소(%)

구분	자가	임대	합계
전체			
계	616(100.0)	185(100.0)	801(100.0)
연계 찬성	304(49.4)	61(33.0)	365(45.6)
연계 반대	312(50.6)	124(67.0)	436(54.4)
$\chi^2(df) = 15.38(1)^{***}$			
보육시설			
계	218(100.0)	155(100.0)	373(100.0)
연계 찬성	94(43.1)	48(31.0)	142(38.1)
연계 반대	124(56.9)	107(69.0)	231(61.9)
$\chi^2(df) = 5.67(1)^{**}$			
유치원			
계	398(100.0)	30(100.0)	428(100.0)
연계 찬성	210(52.8)	13(43.3)	223(52.1)
연계 반대	188(47.2)	17(56.7)	205(47.9)
$\chi^2(df) = 0.99(1)$			

p<.01 *p<.001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수에 따른 지원과 평가연계 찬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42.1%, 5학급이상 54.4%가 찬성한다고 답해, 학급수가 많은 기관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9> 참조).

보육시설의 학급 수에 따른 지원과 평가연계 찬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35.5%, 5학급이상 50.6%가 찬성한다고 답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유치원의 경우는 1~4학급 49.4%, 5학급이상 56.0%가 찬성한다고 답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69〉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인가학급수별 의견

단위: 개소(%)

구분	1~4학급	5학급 이상	합계
전체			
계	487(100.0)	296(100.0)	783(100.0)
연계 찬성	205(42.1)	161(54.4)	366(46.7)
연계 반대	282(57.9)	135(45.6)	417(53.3)
$\chi^2(df) = 11.18(1)^{***}$			
보육시설			
계	256(100.0)	87(100.0)	343(100.0)
연계 찬성	91(35.5)	44(50.6)	135(39.4)
연계 반대	165(64.5)	43(49.4)	208(60.6)
$\chi^2(df) = 6.14(1)^*$			
유치원			
계	231(100.0)	209(100.0)	440(100.0)
연계 찬성	114(49.4)	117(56.0)	231(52.5)
연계 반대	117(50.6)	92(44.0)	209(47.5)
$\chi^2(df) = 1.93(1)$			

*p<.05 ***p<.001

〈표 III-7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설립유형별로는 법인보육시설만이 66.7%로 찬성률이 더 높았고, 법인 외 보육시설 46.7%, 민간개인보육시설 36.1%, 가정보육시설 38.3%로 찬성의 경우보다 반대의 비율의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70〉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설립유형별 의견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연계 찬성	연계 반대	계	연계 찬성	연계 반대	계
전체	150(38.2)	243(61.8)	393(100.0)	231(52.4)	210(47.6)	441(100.0)
법인	6(66.7)	3(33.3)	9(100.0)	11(50.0)	11(50.0)	22(100.0)
법인 외	7(46.7)	8(53.3)	15(100.0)	-	-	-
민간개인	70(36.1)	124(63.9)	194(100.0)	-	-	-
가정	67(38.3)	108(61.7)	175(100.0)	-	-	-
사립	-	-	-	220(52.5)	199(47.5)	419(100.0)
$\chi^2(df) = 3.91(3)$			$\chi^2(df) = 0.05(1)$			

다. 육아지원기관 법인화

<표 III-71>와 같이 기관유형에 따라 법인화 도입 및 활성화에 찬성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68.9%, 유치원 59.2%가 적극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하여 보육시설에 비해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법인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표 III-71> 기관유형별 법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750(100.0)	331(100.0)	419(100.0)
찬성한다	476(63.5)	228(68.9)	248(59.2)
반대한다	274(36.5)	103(31.1)	171(40.8)

$\chi^2(df) = 7.49(1)**$

**p<.01

육아지원기관의 법인화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해 지역별 의견 차이를 살펴보았다. 읍면지역의 79.2%, 중소도시의 71.9%, 대도시의 52.6%가 법인화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보다 읍면지역에서 법인화제도 도입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경우 읍면지역 84.0%, 중소도시 70.6%, 대도시의 60.9%가 법인화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유치원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가 73.3%, 읍면지역이 70.3%, 대도시가 48.1%로 나타나 읍면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일수록 법인화에 찬성하는데 반해 대도시에 소재한 유치원일수록 법인화를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표 III-72> 참조).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수에 따른 법인화 활성화 찬성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63.0%, 5학급이상 62.8%가 찬성한다고 답해 차이가 나지 않았다.

보육시설의 학급수에 따른 법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1~4학급 65.3%, 5학급이상 78.7%가 적극 찬성한다고 답해 큰 규모 시설이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유치원의 경우 1~4학급 60.8%, 5학급이상 56.7%가 찬성한다고 답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II-73> 참조).

<표 III-72> 지역별 법인화 활성화 찬성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전체	계	361(100.0)	299(100.0)	87(100.0)	747(100.0)
	찬성	190(52.6)	215(71.9)	68(78.2)	473(63.3)
	반대	171(47.4)	84(28.1)	19(21.8)	274(36.7)
$\chi^2(df) = 35.50(2)^{***}$					
보육시설	계	128(100.0)	153(100.0)	50(100.0)	331(100.0)
	찬성	78(60.9)	108(70.6)	42(84.0)	228(68.9)
	반대	50(39.1)	45(29.4)	8(16.0)	103(31.1)
$\chi^2(df) = 9.31(2)^{**}$					
유치원	계	233(100.0)	146(100.)	37(100.0)	416(100.0)
	찬성	112(48.1)	107(73.3)	26(70.3)	245(58.9)
	반대	121(51.9)	39(26.7)	11(29.7)	171(41.1)
$\chi^2(df) = 25.75(2)^{***}$					

p<.01, *p<.001

<표 III-73> 시설규모별 법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구분	1~4학급	5학급이상	합계	
전체	계	438(100.0)	269(100.0)	707(100.0)
	찬성	276(63.0)	169(62.8)	445(62.9)
	반대	162(37.0)	100(37.2)	262(37.1)
$\chi^2(df) = 0.00(1)$				
보육시설	계	216(100.0)	75(100.0)	291(100.0)
	찬성	141(65.3)	59(78.7)	200(68.7)
	반대	75(34.7)	16(21.3)	91(31.3)
$\chi^2(df) = 4.64(1)^*$				
유치원	계	222(100.0)	194(100.0)	416(100.0)
	찬성	135(60.8)	110(56.7)	145(58.9)
	반대	87(39.2)	84(43.3)	171(41.1)
$\chi^2(df) = 0.72(1)$				

*p<.05

<표 III-74>과 같이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 따른 법인화 도입 찬성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법인 외 보육시설이 81.8%로 높게 나타났고 민간개인보육시설 69.3%, 가정보육시설 66.2%의 순으로 찬성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69.0%의 법인화 찬성율을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장의 57.2%가 법인화제도에 찬성해 과반수 이상이 법인화의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4> 설립유형별 법인화 활성화 찬성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찬성	반대	계	찬성	반대	계
전체	227(69.0)	102(31.0)	329(100.0)	246(59.0)	171(41.0)	417(100.0)
법인	7(100.0)	0(0.0)	7(100.0)	20(90.9)	2(9.1)	22(100.0)
법인 외	9(81.8)	2(18.2)	11(100.0)	-	-	-
민간개인	113(69.3)	50(30.7)	163(100.0)	-	-	-
가정	98(66.2)	50(33.8)	148(100.0)	-	-	-
사립	-	-	-	226(57.2)	169(42.8)	395(100.0)

주) 경우의 수가 통계 분석에 부적합함

5. 공무원 의견조사

가. 일반현황

1) 면담조사 개관

공무원면담은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정책,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보육담당 공무원 14명, 유치원담당 공무원 26명(전문직 공무원 15명, 일반직 공무원 11명) 등 40명을 면담하였다(<표 III-75> 참조). 면담은 서울을 비롯한 특별시 및 광역시 6곳, 도지역 내 중소도시 8곳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16개 시·도를 모두 포괄하였으나 면담 조사자 수가 적어 담당 공무원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례 연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공공화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II-75> 면담 대상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14
유치원담당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15
	일반직 공무원	11
계		40

면담은 본 과제 연구자들에 의해 2006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2) 면담 대상자의 인적 관련 사항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의 6명(42.9%)은 남성, 8명(57.1%)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5명(16.0%)은 남성, 21명(84%)은 여성이었다(<표 III-76> 참조).

보육담당 공무원 중 6명이 대도시, 8명이 중소도시에서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치원 관련 공무원 중 10명이 대도시, 15명이 중소도시

에서 유아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면담 대상자 중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 13명(92.9%)이 시·군·구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도청에 근무하는 관련 공무원 1명이 포함되었다. 유아교육 업무 담당자의 경우 21명(84.0%)이 시·군·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4명이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였다. 전체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면담 대상자를 많이 선정하는 것은 실제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방문을 통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현장의 공공성 수행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육담당 공무원의 담당업무관련 경력을 살펴보면 최고 11년, 최소 0.4년(5개월)이었으며 평균 경력은 2.3년이었다. 유치원의 경우 평균 경력이 10.4년이었고 최소 2개월 최대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 공무원들의 근무 경력이 일반직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6〉 면담 대상 공무원의 일반사항

단위: 명, 년

구분	보육시설 담당	유치원 담당	합계
성별			
계	14	26	40
남자	6	5	11
여자	8	21	29
지역			
계	14	26	40
대도시	6	10	16
중소도시	8	16	24
근무처			
계	14	26	40
시·도청/교육청	1	4	5
시·군·구청/교육청	13	22	35
경력			
평균	2.3	10.4	-
최대	0.4	0.2	-
최소	11.0	30.0	-

나. 공공성 평가

1) 육아지원 기관의 공공기관 여부

보육담당 공무원의 57.1%(8명)가 보육시설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유아교육 담당자의 38.5%(10명)가 유치원을 영리추구 기관으로 보았다(<표 III-76> 참조).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이 보육시설을 공공기관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병행·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등이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을 제외하고는 민간과 가정 시설의 경우 생계 수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설의 규모가 작은 경우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경우에도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여 생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도적으로 공공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없이 운영하던 이전처럼 사설기관으로 운영하려 하는 시설장들이 많아서 공공성 제고를 위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이 사립유치원을 공공기관이라고 보는 이유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설립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행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게 되고 진정한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기타로는 공익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제도적으로는 공공기관이지만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영리가 추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리와 비영리적인 속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소유이므로 현실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77〉 보육시설/유치원의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보육시설	유치원
계	14(100.0)	26(100.0)
공공기관이다	4(28.6)	9(34.6)
공공기관이 아니다	8(57.1)	10(38.5)
기타	2(14.3)	7(27.0)

2) 공공성 제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표 III-78> 참조).

가) 평가와 지원의 연계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가운데 평가와 지원을 연계하는 것에 관해서는 ‘가능한 편이다’라고 한 경우가 7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가능하다고 본 경우도 5명(35.7%)이었다. 보육시설 담당자의 경우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에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유치원의 경우 평가와 재정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가능하다(3명, 12.0%), 가능하다(16명, 64.0%)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평가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유치원평가제도의 실시와 이를 정부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정책에 대하여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평가를 하면 좋은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이 명확히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원장들이 이를 반대할 것이다’,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평가를 한다면 행정·교육에 대해 평가할 것인데 기본적인 장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등 이었다. 평가제도가 평가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개도 노력에 대한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면 평가제도가 교육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사후평가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로비를 하거나 이벤트적인 평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나) 운영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12명(85.7%)이 가능한 편이라고 보았으며 유치원담당 공무원 17명(68%)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 III-78> 참조).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은 운영위원회 설치에만 강조점을 두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문제가 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위원장은 평소 인맥이 있는 구의원이 맡고, 시설장과 서로 잘 아는 사이의 학부모를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하여 시설장 입맛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특히 지방의 경우 읍면당 10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유지들이 여러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설치만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부모에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초기 보육시설 등록 시 참여 안내 및 계시를 하고 부모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설치에 대해 가능한 편이라고 본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의견 개진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설립자 의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유치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 증대가 가능 할 것이다’ 등 운영위원회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현재 급간식비, 현장체험비, 차량운영비 등이 유치원장의 운영사정을 고려하여 원장 위주로 책정되고 있고, 수업료 책정도 부모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만 안하는 경우 있다고 한다. 이것이 학기초 민원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운영위원회의 설립 및 확대에 대해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쪽은 ‘예산, 현장 학습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 외부의 간섭을 받는 것을 원장님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는 유치원에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다)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통한 납입금 수령 및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해서는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중 64.3%인 9명이 가능한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1.4%인 3명이 매우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56.0%(14명)이 가능한 편이라고 보았으며 36.0%인 9명이 매우 가능하다고 보았다(<표 III-78> 참조).

보육시설 담당자들은 규모가 작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 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반면에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이미 스쿨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확대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설립자의 의지 부족’, ‘사립원장님들이 이윤추구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할 것’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통한 납입금 수령 및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유치원장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화하여 실행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현금 영수증 처리 되듯이 적은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운영비에 대해서라면 전산·관리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라) 예·결산 공개

예·결산 공개에 대해서는 가능한 편이라고 보는 경우가 보육시설의 경우 8명(57.1%)이었고 매우 가능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7명(29.2%)이었다(<표 III-78> 참조).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은 보육행정전산망과 연계 가능하므로 이후에 예·결산 공개가 보다 성공적으로 실시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예·결산 확인 권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장과 학부모들이 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결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불카드 형태의 보육시설 전용 카드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법인카드는 쉽게 만들어주지 않고 월별 영수증 첨부이 가능한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불카드 형태의 카드를 이용한다면 바로바로 영수증의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III-78〉 공공성 제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공통)

단위: 명(%)

구분	매우가능하다	가능한편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계
평가와 지원의 연계					
보육시설	5(35.7)	7(50.0)	2(14.3)	-	14(100.0)
유치원	3(12.0)	16(64.0)	6(24.0)	-	25(100.0)
운영위원회					
보육시설	2(14.3)	10(71.4)	2(14.3)	-	14(100.0)
유치원	5(20.0)	12(48.0)	6(24.0)	2(8.0)	25(100.0)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					
보육시설	3(21.4)	9(64.3)	2(14.3)	-	14(100.0)
유치원	9(36.0)	14(56.0)	2(8.0)	-	25(100.0)
예·결산 공개					
보육시설	4(28.6)	8(57.1)	2(14.3)	-	14(100.0)
유치원	7(29.2)	11(45.8)	6(25.0)	-	24(100.0)

마) 기타 공공성 제고 정책: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대상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에게는 이외에도 현재 보육시설에만 해당하는 제도인 보육료 자율화, 행정전산화의 추진 가능성, 평가인증제도에 관해서 의견을 조사하였다(〈표 III-79〉 참조). 보육료 자율화에 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대답한 담당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매우 가능하다고 보는 보육업무 담당자가 1명이었고 6명은 가능한 편이라고 보았다.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이 많아져서’, ‘연합회끼리 보육료에 대해 단합하므로 자율화는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들이 있었다.

평가인증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는 4명(28.6%)이 매우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으며 8명(57.1%)이 가능한 편이라고 보았다.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평가인증제도를 준비하면서 서류작업을 하느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육을 충분히 제공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인증 후의 사후관리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제도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행정전산화에 관해서는 모든 조사 대상자가 성공적 추진 가능성에 대해 긍정

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10명이 매우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4명이 가능한 편이라고 보았다.

〈표 III-79〉 공공성 제고 정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보육시설)

단위: 명(%)

구분	매우가능	가능한 편	가능성 없음	계
보육료 자율화	1(7.1)	6(42.9)	7(50.0)	14(100.0)
행정전산화	10(71.4)	4(28.6)	-	14(100.0)
평가인증제도의확대	4(28.6)	8(57.1)	2(14.3)	14(100.0)

3) 공공성 제고 정책에서의 우선순위

보육담당 공무원은 최우선 순위로 실시되어야 할 정책으로 보육행정전산화(5명, 42.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2순위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5명, 35.7%)을 많이 지적했으며 3순위로는 보육시설 인가제도 강화(6명, 42.9%)를 들었다(〈표 III-80〉 참조).

특히 보육행정전산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은 아동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출석부를 매일 기록하여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이외에 타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시설 이용 부모 및 아동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제안하였다. 또한 원장의 정확한 소득액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전산망의 연계를 통한 명확한 소득 근거 자료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보육시설의 인가제도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시설장과 교사의 자질 제고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유아교육 담당자는 가장 우선 실시되어야 할 정책으로 유치원 평가제도의 실시 및 정부 재정 지원과의 연계(10명, 40.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2순위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예·결산공개(5명, 20.8%), 3순위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확대(8명, 34.8%)를 꼽았다.

유치원 평가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 것은 유치원 장학은 교육적 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예·결산 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평가제도의 실행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지역 사람들이 유치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감 선거, 재정 및 예산에 대한 감사, 급식·관리 감독 등 전문직공무원들이 갖지 못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질 높은 교육과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보았다.

〈표 III-80〉 공공성 제고 정책에서의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공공성 관련 정책		
우선순위1	보육시설 담당	보육 행정전산화 보육시설의 인가제도	6(42.9) 3(21.4)
	유치원 담당	유치원 평가제도의 실시 및 정부 재정 지원과의 연계 독립된 학교체계로서의 유치원 법인화	10(40.0) 7(28.0)
우선순위2	보육시설 담당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정부 재정지원연계 보육행정전산화	5(35.7) 3(21.4)
	유치원 담당	예·결산 공개 독립된 학교체계로서의 유치원 법인화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확대	5(20.8) 4(16.7) 4(16.7)
우선순위3	보육시설 담당	보육시설의 인가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정부 재정지원 연계	6(42.9) 3(21.4)
	유치원 담당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확대 유치원 평가제도의 실시 및 정부 재정 지원과의 연계 예·결산 공개	8(34.8) 4(17.4) 4(17.4)

4) 기본보조금 제도에 대한 의견

본 절에서는 기본보조금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영아(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보육시설 및 유치원까지 확대시키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보육시설에 실시되고 있는 기본보조금제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유치원에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기본보조금제도는 저출산 방지 대책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정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었다. 지자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앙 예산 비율을 높인다면 기본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 현 유아교육비 지원액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시행 전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체도가 뒷받침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기본보조금이 추진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교사의 숫자 파악, 4대보험 가입여부, 기본급여 수준파악 등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아동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행정전산화의 업그레이드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런 행정전산망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영아반의 경우 부모들에게 ‘가끔 필요시 아동을 돌봐 줄 테니 이름만 올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이름을 올리고 원장과 부모가 보조금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민행정과 복지 행정 연계되어야 허위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기본보조금은 도입에 찬성하나 사용 항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 되었다. 일정비율 교사인건비로 지출 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지출비를 인정하는 항목들이 명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운영의 세부항목을 넣지 않으면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지입차량 한대에 월 200만원이 드는데 이 비용에 소요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5) 지원금 운영의 투명성

설립유형별로 지원금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보육담당 및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이 투명한 편이라고 보는 경우가 12명, 91.3%(매우 투명하다 3명, 29.1%, 투명한 편이다 9명, 69.2%)로 가장 높았고 법인도 12명(85.7%)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81> 참조).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금의 투명한 운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전혀 투명하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도 2명(14.3%)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 대상자들이 정부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인유치원의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띠고 공적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66.7%가 사립유치원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법인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보고하고 있지만 예·결산이 정확하게 기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할 행정인력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현재의 예·결산의 항목에 원장들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많다고 보았다.

〈표 III-81〉 설립유형별 지원금 운용의 투명성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담당자					유치원 담당자				
	매우 투명	투명	투명하지 않음	전혀투명하지 않다	계	매우 투명	투명	투명하지 않음	전혀투명하지 않다	계
국공립	3(23.1)	9(69.2)	1(7.7)	-	13(100.0)	23(95.8)	1(4.2)	-	-	24(100.0)
법인	1(7.1)	11(78.6)	1(7.1)	1(7.1)	14(100.0)	6(23.1)	20(76.9)	-	-	26(100.0)
민간개인	-	3(21.4)	10(71.4)	1(7.1)	14(100.0)	-	-	-	-	-
가정	-	3(21.4)	9(64.3)	2(14.3)	14(100.0)	-	-	-	-	-
사립	-	-	-	-	-	-	8(33.3)	12(50.0)	4(16.7)	24(100.0)

6) 예·결산 공개 정도에 대한 인식

설립유형별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예·결산 공개여부에 대한 보육시설담당자와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이 예·결산에 대해 가장 공개적이라고 보았으며(69.2%), 그 다음 법인(71.4%), 민간보육시설(14.3%), 가정보육시설(7.1%)로 나타났다(〈표 III-82〉 참조).

투명성의 문제는 민간개인시설에서 문제가 있음이 지적 되었으며, 민간개인시설은 개인 가계부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도·점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100%(24명)가 예·결산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인의 경우는 37.5%(9명), 사립의 경우는 4.2%(1명)가 예·결산을 공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았다. 대학부설 법인유치원 같은 경우 국공립과 같이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종교법인의 경우는 사립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예·결산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사립은 낮은 임금과 높은 이익구조를 원하고 있고 법인은 높은 임금과 낮은 이익 구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사립 교사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표 III-82〉 설립유형별 예·결산 공개 여부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담당자				유치원 담당자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계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계
국공립	9(69.2)	2(15.4)	2(15.4)	13(100.0)	24(100.0)	-	-	24(100.0)
법인	10(71.4)	2(14.3)	2(14.3)	14(100.0)	9(37.5)	14(58.3)	1(4.2)	24(100.0)
민간개인	2(14.3)	11(78.6)	1(7.1)	14(100.0)	-	-	-	-
가정	1(7.1)	12(85.7)	1(7.1)	14(100.0)	-	-	-	-
사립	-	-	-	-	1(4.2)	23(95.8)	-	24(100.0)

7) 회계장부 관리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

회계장부의 정확성에 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육아지원 기관의 설립유형별로 알아보았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의 회계장부의 정확성에 대한 설립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국공립 90.8%, 법인 85.7%, 민간보육시설 47.7%, 가정보육시설 40.6%가 예·결산에 관한 회계장부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III-83〉 참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예·결산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곳이 많으며,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된 것도 최근이므로 정확한 회계장부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이 문제로 지적 되었다. 그간 예·결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교육을 통해 정착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의 평균 100%, 법인유치원 평균 75.5%, 사립유치원 평균 46.7% 정도가 회계 장부가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다고 생각하

여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에서와 유사하게 응답 되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회계장부 관리 시 회계전문프로그램(예, EXCEL)을 안 쓰고 문서프로그램(예, 한글)으로 가져오는 경우나 원장 혼자 재정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III-83〉 설립유형별 회계장부 관리의 정확도

단위: 평균 %

구분	보육시설 담당자	유치원 담당자
국공립	90.8	100
법인	85.7	75.5
민간개인	47.7	-
가정	40.6	-
사립	-	46.7

8) 예·결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보육시설의 투명한 예·결산 운영을 위해 시·도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로는 보육행정전산망 구축 및 현지 확인 점검, 인력 증원과 공무원의 예·결산 분야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도청 차원에서 예·결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계·감사에 대해 이를 활용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전산화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과 유치원담당 공무원 모두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의 경우 76.9%가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에 찬성하였다.

보육시설의 투자 계획에 있어서 명확하게 실단가를 계산해서 정부 부담금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동1인당 보육비용과 정부단가 비교에서 차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담

당 공무원의 부족(지원이 많아지면 더 필요하다)한 실정이나 중앙정부의 증원요구를 지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9)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경우 재정지원의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60%이었으나 반대하는 의견도 40%로 나타났다(<표 III-84> 참조).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는 지원확대가 바람직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치원 장학은 규제의 강제성이 낮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더 될 경우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치원의 프로그램과 재정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시설만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정지원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개인의 이익 창출에 국가가 과도한 재정적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자를 늘려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버금가는 시설, 설비, 환경 개선 및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화에, 사립유치원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사교육 및 교구 지원 등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 공교육을 실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표 III-84〉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

단위: 명(%)

구 분	보육시설 담당자	유치원 담당자
계	13(100.0)	25(100.0)
적절하다	10(76.9)	15(60.0)
적절하지 않다	2(15.4)	10(40.0)
기타	1(7.7)	-

10) 재정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은 재정지원의 방향에 대해 아동별 지원 9명(69.2%), 기관별지원 2명(15.4%)이 찬성하여 보육시설 공무원은 아동별 지원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표 III-85〉 참조). 기관별 지원으로 할 경우 지원비의 누수현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아동별 지원을 해서 종사자 인건비, 차량 운영비 등에 대한 고려를 한 수준에서 적절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별 지원에 반대하는 경우는 정원이 적은 시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유치원담당 공무원은 38.5%(10명)가 아동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42.3%(11명)가 기관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재정지원의 방향에 대하여 유치원 담당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다소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유치원 담당자들은 아동별 지원이 유아교육기회의 확대 뿐만 아니라 투명한 지원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이름만 올린 아동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관별 지원도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에 가장 직접적인 재원투자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별 지원을 할 경우 특기 교육 등을 실시하는 곳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서 소신교육이 어려울 것이고 기관별 지원을 할 경우에 소신 있는 교육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III-85〉 재정지원의 방향

단위: 명

구 분	보육시설	유치원
계	13(100.0)	26(100.0)
아동별 지원	9(69.2)	10(38.5)
기관별 지원	2(15.4)	11(42.3)
기타	2(15.4)	5(19.2)

11) 재정지원에 대한 제언

기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 국고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 정확한 데이터와 가격을 가지고 지원했을 때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예, 정부지원단가)하다.
- 상위 40~50%이하의 일정 소득 계층 이하에게 무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완전히 된 이후에 다른 소득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는 재정지원의 효율적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재정지원과 동시에 효과 최대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지출이 산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정분석이 적절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 활용 자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적 자원에 관해서는 관련 대학, 교수, 연구소를 활용해야 하고 물적 자원은 보육 관련 복지재단 기타 자원(예, 복권)을 이용해야 하고, 인프라 자원은 공공성격을 가지는 여러 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인증 조력, 정보센터, 학회 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과 보육 과정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 업무 분장 시 중앙, 지방(16개 시·도), 읍·면·동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

력 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인건비가 대졸 평균임금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 유치원담당 공무원

- 교사인건비 및 사립유치원 교사의 성과급 지원이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인건비 보조는 균등하게 하되, 일부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인건비 보조와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앙지원 비율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이 실제 지급 가능액보다 많아서 지방 정부의 지원액에 따른 지역별 유치원 지원금의 편차가 심하다.
- 유치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므로 법인화를 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 시설 현황 관련 사항

1) 민간 및 사립의 법인화 가능성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의 경우 46.2%(6명)가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34.6%(9명)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육아지원기관의 법인화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공무원들도 있었다.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의 57.7%(15명)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의 38.5%(5명)가 비정부육아지원기관의 법인화 전환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표 III-86> 참조).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은 국공립시설의 확대를 위해서는 좀 더 현실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건물비만 지원해 주는데 시설은 땅값과 건물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법인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시설의 확대 시 법인화했음에도 매매를 하므로 법인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보다 강화된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농촌과 같이 이동수가 적은 보육시설에 대해 법인화가 필요할 지에 관해서는 제

고해볼 사항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 국공립이나 법인시설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는 큰 보육시설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할 의사가 없을 것이고 작은 보육시설은 매매의 장점이 없기 때문에 매매 정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간보육시설이 자가가 아니라 대부분 임대나 월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시설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 오히려 법인을 선호할 것이고 영리추구 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 이전이 쉽지 않아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법인을 원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돈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는 교육용 재산은 전부 사립유치원 경영자 개인이 출연한 것이고 법인화했을 경우 유치원 폐원 시 제3의 환원 문제 및 운영의 책임, 권한분배 등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원장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법인화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표 III-86〉 사립의 법인화 가능성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계	13(100.0)	26(100.0)
가능하다	6(46.2)	9(34.6)
가능하지 않다	5(38.5)	15(57.7)
기타	2(15.4)	2(7.7)

2) 민간 및 사립의 법인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화 및 법인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 부담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지원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전환을 위한 지방 정부의 예산 및 인력의 확보라고 보았다. 민간시설의 정부지원시설로의 전환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시가로 매입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정부지원시설 자격에 관한 선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립

유치원이 법인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시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인화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행 유치원법인화 관련 법적 규정(예컨대 수익자산, 기본자산에 대한 규정)이 초·중고등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유치원법인화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들 보다 작은 유치원의 규모에 맞도록 법인화의 규정요건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시적 기간을 두고 법인화 유도, 그 이후 차등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질적 수준이 낮은 곳,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법인화 되지 않도록 법인화에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이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의 국공립화나 법인화를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법인화 전환에 관한 시설 파악과 법인화 전환 시설에 관한 지방조례의 제정 및 재정이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지역 사회내의 활용 가능한 공공기관 유무

지역 사회 내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다. 영아들의 경우 부모님들과 인근지역에 있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역 근처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인근에 아동이 없기 때문에 폐교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 교실이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라. 관리·감독 관련 사항

1) 공무원의 육아지원기관 운영 파악 현황

설립유형에 따라 육아지원기관 담당 공무원들의 해당 업무 파악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85.4%('매우 잘 파악하고 있다' 28.6%, '잘 파악하고 있는 편이다' 57.1)가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표 III-87> 참조). 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는 64.2%,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71.4%의 담당 공무원이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치원담당 공무원 역시 국공립유치원(84.0%), 법인유치원(72.0%), 사립유치원(66.7%) 순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과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담당업무 파악 정도에 대한 자기보고의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이나 법인 육아지원기관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파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실제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았다. 그러나 행정전산화가 된다면 민원업무가 줄어들어서 수시로 관리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점검 이외에는 현장에서 민원 요청이 오기 전에는 현장 점검을 나가는 것이 어려워져 서류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시설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립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표 III-87〉 공무원의 설립유형별 운영 파악 정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담당자					유치원 담당자				
	매우잘 파악	잘파악 하는편	파악못 하는편	기타	계	매우잘 파악	잘파악 하는편	파악못 하는편	기타	계
국공립	4(28.6)	8(57.1)	2(14.3)	-	14(100.0)	16(64)	5(20)	3(12)	1(4)	25(100.0)
법인	1(7.1)	8(57.1)	5(35.7)	-	14(100.0)	4(16)	14(56)	6(24)	1(4)	25(100.0)
민간개인	2(14.3)	8(57.1)	4(28.6)	-	14(100.0)	-	-	-	-	-
가정	-	-	-	-	-	-	-	-	-	-
사립	-	-	-	-	-	4(16.7)	12(50)	8(33.3)	-	24(100.0)

2)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설립유형에 따른 보육시설담당 공무원과 유치원담당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보육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해 국공립보육시설(76.9%), 법인보육시설(78.5%), 민간보육시설(42.9%) 순으로 지도·관리되고 있었다(〈표 III-88〉 참조).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국공립유치원(90.9%), 법인유치원(20%), 사립유치원(20%) 순으로 장학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가 읍면보육시설에 비하여 더 적절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국·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민간이나 사립기관에 비해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88〉 설립유형별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담당자				유치원 담당자					
	매우적절	적절한편	적절하지 못한편	기타	계	매우적절	적절한편	적절하지 못한편	기타	계
국공립	1(7.7)	9(69.2)	3(23.1)	-	13(100.0)	2(18.2)	8(72.7)	1(9.1)	-	11(100.0)
법인	1(7.2)	10(71.4)	3(21.4)	-	14(100.0)	-	2(20.0)	8(80.0)	-	10(100.0)
민간개인	-	6(42.8)	8(57.1)	-	14(100.0)	-	-	-	-	-
가정	-	5(35.7)	9(64.3)	-	14(100.0)	-	-	-	-	-
사립	-	-	-	-	-	-	2(20.0)	7(70.0)	1(10.0)	10(100.0)

3) 정부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의 경우 정부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의 개선(42.9%), 학부모의 참여 증대(21.4%),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14.3%)가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표 III-89〉 참조). 재정지원 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평가인증제도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던 공무원들이 많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의 참여 증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보내는 부모들은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학부모의 참여 증대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 일부 학부모들만 참여하게 되어서 그들의 의견만을 반영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무원의 관리·감독 방안 강화는 행정 전산화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41.7%), 유치원의 재정

공개 노력(33.3%), 학부모의 참여 증대(20.8%) 등이 투명한 유치원 재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답하였다.

〈표 III-89〉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단위: 명(%)

보육시설		유치원	
계	14(100.0)	계	24(100.0)
학부모의 참여 증대	3(21.4)	학부모의 참여 증대	5(20.8)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개선	6(42.9)	유치원의 재정 공개 노력	8(33.3)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	2(14.3)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	10(41.7)
기타	3(21.4)	기타	1(4.2)

4) 관리·감독시 중점 사항

관리·감독시 중점을 두는 사항에 대해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III-90〉 참조).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들은 재정(42.9%), 시설의 운영 상태(42.9%), 서비스의 질(14.3%) 순이었고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재정(54.2%), 교육과정(41.7%), 행정(4.2%)을 우선순위로 관리·감독시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보육시설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은 서비스의 질 중에 특히 급·간식 부분에 중점을 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치원의 경우 보육시설에 비해 교육과정에 초점을 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은 전문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과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시 중점사항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두 집단 모두 재정(보육담당 공무원 42.9%, 유치원 담당 공무원 54.2%)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0〉 관리·감독 시 중점 사항

단위: 명(%)

보육시설		유치원	
계	14(100.0)	계	24(100.0)
재정	6(42.9)	재정	13(54.2)
시설의 운영 상태	6(42.9)	행정	1(4.2)
서비스의 질	2(14.3)	교육과정	10(41.7)

5)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자기 인식

설립유형에 따른 보육시설담당 공무원과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표 III-91〉 참조). 보육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해 국공립보육시설(76.9%), 법인보육시설(78.5%), 민간보육시설(42.9%)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국공립유치원(90.9%), 법인유치원(20%), 사립유치원(20%) 순으로 장학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장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23.1%였으나 이에 반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경우도 76.9%이었다. 유치원담당 전문직 공무원들이 장학의 적절성에 대해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직 공무원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유치원수가 너무 많아서 장학을 반일제 장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전화상담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장학의 의미를 관리·감독으로 생각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운영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장학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는 의지가 적다고 보고하였다.

요컨대 담당공무원들은 국공립은 민간/사립에 비하여 더 적절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III-91〉 설립유형별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적절한 편	적절한 편	적절하지 못한 편	기타	계	
국공립	보육시설	1(7.7)	9(69.2)	3(23.1)	-	13(100.0)
	유치원	2(18.2)	8(72.7)	1(9.1)	-	11(100.0)
법인	보육시설	1(7.1)	10(71.4)	3(21.4)	-	14(100.0)
	유치원	-	2(20.0)	8(80.0)	-	10(100.0)
민간사립	보육시설	-	6(42.9)	8(57.1)	-	14(100.0)
	유치원	-	2(20.0)	7(70.0)	1(10.0)	10(100.0)
가정	보육시설	-	5(35.7)	9(64.3)	-	14(100.0)
장학의적절성	유치원	-	3(23.1)	10(76.9)	-	13(100.0)

6) 관리·감독 횟수

보육시설 일반공무원을 1년에 모두 1회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64.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35.7%(5명)였다(〈표 III-92〉 참조).

유치원 일반직공무원들 중에 1회 정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44.4%),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는 22.2%였다.

보육시설의 경우 아동정원을 초과한 곳이 많아서 정원초과에 관한 관리·감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안전설치 여부, 건강검진, 회계 및 위생 등 다양한 부분에 관한 관리·감독이 이루고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의 부족으로 재정에만 초점을 둔 관리·감독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원아현황 및 시설 점검 인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재정운영(특히 유아교육비 지원금) 및 회계 장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시설 및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었다.

유치원담당 전문직 공무원들의 장학 횟수는 1회 이상이 92.7%(12명)로 나타

났다. 이는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의 감독 횟수가 1회 이상이 100%(14명)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공무원들은 교육과정 운영 전반, 교수 학습 방법, 수업장학 및 문서(접수, 발송대장), 생활기록부, 교재교구대장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과 유치원 일반직공무원 및 전문직공무원 간에 감독 횟수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정도 방문하는 경우가 모두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의 경우 관리·감독의 경우 관리·감독이 있기는 하지만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 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치원담당 일반직 공무원의 관리·감독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별칙 규정 현실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원 보강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장학의 경우 장학유형의 변화로 장시간 장학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는 전문직공무원과 원장의 1:1 면담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전문직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한 지역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41개 학교를 7명의 전문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40개원을 1명의 전문직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유치원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하나의 기관으로 인정한다면 전문직공무원이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공립과 사립간의 멘토링 장학을 실시하여 정보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장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장학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행동 관리·감독권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교육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장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표 III-92〉 관리·감독의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미만	1회	2회	2회 초과	수시로	계
보육·유치원 관리·감독횟수						
보육시설	-	9(64.3)	1(7.1)	2(14.3)	2(14.3)	14(100.0)
유치원	3(33.3)	4(44.4)	1(11.1)	-	1(11.1)	9(100.0)
유아교육장학횟수						
유치원	1(7.7)	9(69.2)	2(15.4)	1(7.7)	-	13(100.0)

7) 공무원들의 관점에서 본 민간 및 사립 운영상의 난점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이 바라볼 때 민간개인보육시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회계장부관리(21.4%), 교사관리(21.4%)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3〉 참조). 이 외에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21.4%)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이 보았을 때 사립유치원이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원아모집(33.3%), 교사관리(28.6%)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운영비의 부족, 예·결산 관리 등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의 보수가 낮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이직하려는 교사들에 관한 관리문제가 사립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라고 하였다.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는 보육시설로 이직하는 경우 많아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93〉 민간 및 사립이 겪는 어려움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보육시설	회계 장부 관리	3(21.4)	회계 장부 관리	3(21.4)
	교사 관리	3(21.4)	프로그램 운영 관리	3(21.4)
	기타	3(21.4)		
유치원	원아 모집	7(33.3)	운영비 부족	7(33.3)
	교사 관리	6(28.6)	예·결산 관리	4(19.0)

마. 업무수행 관련 사항

1) 육아지원 공무원의 어려움 해결 방안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력의 충원(64.3%), 업무 부담 경감(28.6%), 보육관련 교육(7.1%) 순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표 III-94> 참조). 특히 보육시설의 증가와 정부지원금의 확대로 공무원은 최근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타부서로의 이동이 잦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재정집행에 관한 위험부담에 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 인력의 충원(56.5%), 유아교육 관련 교육(21.7%), 업무부담 경감(4.3%), 정책에 대한 이해 확대(4.3%) 순으로 지적하였다. 보육과 유치원담당 공무원 모두 공무원 인력의 충원이 현실 타계책으로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유치원 설립인가나 관리·감독에 필요한 구체적, 현실적인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제시된 법에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부딪혀지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표 III-94> 공무원의 어려움

단위: 명(%)

보육시설		유치원	
보육 관련 교육	1(7.1)	유아교육 관련 교육	5(21.7)
업무 부담 경감	4(28.6)	업무 부담 경감	1(4.3)
공무원 인력의 충원	9(64.3)	정책에 대한 이해 확대	14.3
		공무원 인력의 충원	13(56.5)
		기타	3(13.0)
계	14(100.0)	계	23(100.0)

2)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은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육관련 교육 2명, 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여성가족부 웹 사이트 내에 공무원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현재는 비공개 및 비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업무부담의 경감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기타의견으로는 유아교육계의 신설을 통해 유치원담당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간의 상호 정보교환이 원활하고 업무부담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육아지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유아교육/보육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육에 대한 전공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경우 전문직 공무원으로 유아교육이나 교육학 관련 전공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아교육 관련 교육보다는 본인의 전문성이 더욱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를(예, 장학지도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며 해당 기관에 장학지도 실시) 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 소결

본 장은 크게 두 가지의 조사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육아지원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성 수행 현황과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이고, 둘째는 육아지원기관의 관리·감독 및 지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지자체 및 교육청 보육/유아교육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조사이다. 이 두 가지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 및 요약은 본 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육아지원기관장 조사

사립(민간) 육아지원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보육시설장 또는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공공성 수행 현황과 공공화 추진 정책에 대한 의견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각 2000개소에 조사지를 배부하여 최종 930개소로부터 응답지를 회수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기관유형별, 지역별, 설립유형별, 운영특성(경력 등)별로 그 응답을 분석하였다.

1) 육아지원기관의 시설 현황 및 원장 특성

조사 대상이 된 930개 육아지원기관의 유형은 보육시설이 447개소, 유치원이 483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민간개인보육시설 213개소(47.7%), 가정보육시설 206개소(46.1%)로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법인 외(단체) 보육시설 15개소(3.4%), 법인보육시설 10개소(2.2%)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치원은 개인사립 유형이 456개소(94.4%)였고 법인 사립이 23개소(4.8%)였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48.7%(450개소), 중소도시 39.7%(367개소)로 나타났고, 읍면지역이 11.6%(107개소)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건물유형을 살펴보면 단독건물이 557개소(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학급수는 4.3(표준편차 2.2)학급으로 조사되었고 원장을 제외한 평균 교사수는 5.1(표준편차 3.4)명, 교사당 평균 아동수는 15.1(표준편차 6.8)명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건물 소유 형태를 보면 자기 소유(자가)(681개소, 76.7%)의 시설(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대부분이 자가 건물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육시설 중에서 건물을 임대(41.6%)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유치원 임대시설(6.7%) 이용 비율보다 매우 높았다.

보육시설장과 유치원 원장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91.0%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평균경력은 13.8년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장 가운데는 보육학 전공이 51.7%(230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학이 90.5%(420명)로 가장 높았다. 기관장들은 전체 중 25.8%정도가 추가로 운영하는 유아대상 기관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었고 그 유형을 살펴보면 유치원과 유치원(134개소, 14.4%), 유치원과 보육시설(53개소, 5.7%), 보육시설과 보육시설(30개소, 3.2%) 순으로 나타났다.

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및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의견

응답자의 69.9%인 536개소에서 육아지원기관은 ‘비영리기관’이라고 응답하였

고, ‘영리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은 30.1%였다. 보육시설장의 58.1%, 유치원 원장의 79.0%가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비영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일을 비영리사업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보육시설장이 보육시설운영을 비영리사업으로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사업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기관유형을 막론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임대여부는 육아지원기관을 영리기관 혹은 비영리기관으로 보는 관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바, 자가인 경우 비영리로 인식하는 비율이 73.3%, 임대인 경우는 비영리로 인식하는 비율이 58.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대보다는 자가인 시설(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가 보다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과 관련하여, ‘유치원장학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70%이상의 비율로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5세 무상 교육·보육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섯 가지 정책 중 가장 많은 수의 기관장이 알고 있는 정책으로 나타났다(99.1%). 다음으로 ‘기본보조금’(83.6%), ‘보육시설평가인증제’(78.0%), ‘보육시설·유치원 운영위원회’(73.5%) 순이었다. 그러나 기관유형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간에 정책인지 정도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정책인식 정도가 대부분 유치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보육시설이 최근 정부로부터 지원과 함께 규제가 많아짐으로써 공공성과 관련한 국가 육아정책 방안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보육시설에만 질문하였던 ‘유치원장학제도’는 27.4%만이 알고 있다고 답하여, 보육시설은 장학에 대해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유치원뿐 아니라 보육시설에도 장학과 같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도록 한다.

더불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다섯 가지의 공공성 제고 정책을 제시하고 육아지원기관장이 각 정책에 참여할 것인지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로 참여를 찬성한 정책은 행정전산화(77.0%)이고 다음이 회계장부관리·감독(66.7%)이었다. 나머지 세 가지 정책(법인화, 평가인증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50%대의 찬성률을 보였다. 행정전산화나 평가인증제도에의 참여여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법인화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은 63.9%가 동의한 반면 유치원은 46.3%가 동의하여 보육시설이

법인화에 참여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부에서는 보육시설은 56.6%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유치원의 경우는 45.5%만이 참여에 동의하였다. 회계장부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은 72.4%, 유치원은 61.4%가 참여에 전체적으로 공공화 추진 정책에 참여 의지는 보육시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과 관리·감독의 연계라는 방안에 대하여 757명 중 69.6%가 정부지원금과 관리·감독의 연계에 찬성하였다. 11.2%가 지원금과 관리·감독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지원금만 받고 관리·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의견 또한 19.2%를 차지했다. 여기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보육료는 국가가 정한 상한이 있어 모든 보육시설은 상한제 규정에 따라 보육료를 책정하고 있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인 유치원의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보육시설의 경우 52.6%가 보육료 상한제에 찬성하여 현 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극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는 현행 유치원의 수업료 자율화 유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0.9%로 나타나, 현행 제도에 대해 유치원은 대부분 만족하는 반면 보육시설은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급수에 따른 시설규모별 비교를 보면, 규모가 큰 보육시설이 작은 보육시설에 비해 보육료 상한제 찬성률이 비교적 높아, 이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운영난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관유형에 따라 사립/민간 시설(기관)을 국가가 매입하겠다고 제의한다면 매도한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육시설 53.8%, 유치원 57.1%가 매도하겠다고 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매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보육시설장의 경우 읍면지역의 70.8%, 대도시의 52.4%, 중소도시의 50.3% 순으로 읍면 지역이 보육시설을 국가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높게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의 경우는 1~4학급 62.7%, 5학급이상 37.3%가 매도하겠다고 답해 학급수가 적은 곳이 매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영이 힘든 읍면지역, 소규모일수록 매도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 현황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수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크게 재정관련 업무 수행과 정부의 관리·감독·지도와 관련한 현황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재정관련 현황을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국정 보육료를 공개하는지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평균92.1%)이 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및 납입금 수령 방법에 대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모두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50.5%) 직접 수령(28.3%)도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신용카드는 2.7%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거의 100% 가까이 자동이체를 통한 급식료 등의 수령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공공화를 위해서는 보육료/납입금 수령방법이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기관유형에 따라 회계담당자 유형을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89.1%, 유치원 58.1%가 시설장(원장)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유치원의 경우, 원감 혹은 주임이 17.9%, 경리직원이 18.4%를 나타내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장이 회계를 담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과반수 이상에서 운영자가 재정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가에 비해 임대인 경우, 대규모에 비해 소규모 시설(기관)의 기관장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향이 더 높았다. 따라서 보다 규모가 크고 자가인 곳이 회계 투명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결산 수행을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21.4%, 유치원의 1.6%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자가보다 임대에서, 대규모보다 소규모 시설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회계투명성 및 예·결산수행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특히 보육시설에서, 그 중 임대 소규모시설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운영비 내역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는데, 보육시설장은 33.4%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치원 원장은 57.4%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공공화를 향한 개방의 의지가 보육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82.5%가 교육/보육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보육시설 76.6%, 유

지원 87.3%가 지원금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해 서로 간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 유치원이 지원금의 성과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임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관리·감독 및 지도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유형별로 운영위원회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31.3%, 유치원 10.7%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해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유치원에 비해 보육시설이 운영위원회 설치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이 유치원에 대해서보다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결과 공개여부에 관해서는 63.9%가 공개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804개소 가운데 82%인 659개소에서 실시한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341개소(42.4%)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관유형별로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32.8%가 정기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50.7%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답해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시설 설립유형 중 민간개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각각 자체평가 실시 비율이 가장 낮았다.

4) 공공성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공공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의견을 조사하였다. 첫째는 정부의 지원금이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분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 평가와 재정지원이 연계되는 방안이며, 셋째는 법인화의 문제이다.

지원금이 투자되어야 할 분야로는 가장 1순위로 교사인건비(86.3%)가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시설개선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교사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지원을 바라는 분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가 되었다.

기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와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보육시설의 경우는 38.2%, 유치원 52.5%가 찬성한다고 답함으로써, 보육시설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대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가의 경우

49.4%, 임대인 경우 33.0% 찬성을 보였고, 시설규모(학급수)에 따라서는 1~4학급 42.1%, 5학급이상 54.4%가 찬성한다고 답해, 학급수가 많은 시설(기관)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 특히 소규모 임대 시설에 대한 공공화 방안 추진이 가장 어려울 것임을 시사해준다.

기관유형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찬성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68.9%, 유치원 59.2%가 적극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하다고 답하여 지금까지의 결과와는 달리 법인화는 보육시설에서 더 큰 환영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육시설에 비해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법인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더불어 법인화에 대한 찬성 비율은 읍면지역에서 제일 높게 나왔으며 임대보다는 자가에서 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민간/사립의 공공성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지원과 평가를 연계시키는 방안에 관해서 전체의 69.6%가 찬성하여 공공의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자가여부, 설립유형, 지역 등이 공공성 제고 정책에 대한 참여의사와 관련된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공무원 조사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정책,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보육담당 공무원 14명, 유치원담당 공무원 26명(전문직 공무원 15명, 일반직 공무원 11명) 등 40명을 면담하였다. 면담은 서울을 비롯한 특별시 및 광역시 6곳, 도 지역 내 중소도시 8곳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

보육담당 공무원의 57.1%(8명)가 보육시설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유아교육 담당자의 38.5%(10명)가 유치원을 영리추구 기관으로 보았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이 보육시설을 공공기관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병행·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등이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을 제외하고는 민간과 가정 시설의 경우 생계 수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없이 운

영하던 이전처럼 사설기관으로 운영하려 하는 시설장들이 많아서 공공화를 위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가운데 평가와 지원을 연계하는 것에 관해서는 ‘가능한 편이다’라고 한 경우가 7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가능하다고 본 경우도 5명(35.7%)이었다. 유치원의 경우 평가와 재정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가능하다 3명(3명, 12.0%), 가능하다(16명, 64.0%)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12명(85.7%)이 가능한 편이라고 보았으며 유치원담당 공무원 17명(68%)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계좌이체를 통한 납입금 수령 및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해서는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중 64.3%인 9명이 가능한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1.4%인 3명이 매우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56.0%(14명)이 가능한 편이라고 보았으며 36.0%인 9명이 매우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예·결산 공개에 대해서는 가능한 편이라고 보는 경우가 보육시설의 경우 8명(57.1%)이었고 매우 가능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7명(29.2%)이었다.

그러나 보육료 자율화에 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대답한 담당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이 많아질 것임으로’를 꼽았다.

평가인증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는 4명(28.6%)이 매우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으며 8명(57.1%)이 가능한 편이라고 보았다. 행정전산화에 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10명이 모두 매우 가능하다고 보았다.

보육담당 공무원은 최우선 순위로 실시되어야 할 정책으로 보육행정전산화(5명, 42.9%), 보육시설의 인가제도 강화(3명, 21.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2순위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정부 재정지원 연계하는 방안(5명, 35.7%)이나 보육행정전산화(3명, 21.4%)로 보았다. 유아교육 담당자는 가장 우선 실시되어야 할 정책으로 유치원 평가제도의 실시 및 정부 재정 지원과의 연계(10명, 40.0%), 독립된 학교체계로서의 유치원 법인화(7명, 28.0%)라고 제시하였다.

현재 기본보조금이 추진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교사의 숫자 파악, 4대보험 가입여부, 기본급여 수준파악 등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조금사용 항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관리·감독 및 지도 관련 사항

보육시설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이 정부 지원금의 투명한 운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전혀 투명하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도 2명(14.3%)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66.7%가 사립유치원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의 회계장부의 정확성에 대한 설립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국공립 90.8%, 법인 85.7%, 민간보육시설 47.7%, 가정보육시설 40.6%가 예·결산에 관한 회계장부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다고 보았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의 평균 100%, 법인유치원 평균 75.5%, 사립유치원 평균 46.7% 정도가 회계 장부가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민간 및 사립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경우 재정지원의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60%이었으나 반대하는 의견도 40% 있었다.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는 지원확대가 바람직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의 경우 46.2%(6명)가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34.6%(9명)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육아지원기관의 법인화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공무원들도 있었다.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의 57.7%(15명)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의 38.5%(5명)가 비정부육아지원기관의 법인화 전환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보육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의 적절성에 대해 국공립보육시설(76.9%), 법인보육시설(78.5%), 민간보육시설(42.9%) 순으로 지도·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치원담당 공무원들도 국공립유치원(90.9%), 법인유치원(20%), 사립유치원(20%) 순으로 장학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의 경우 정부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의 개선(42.9%), 학부모의 참여 증대

(21.4%),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14.3%)가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재정지원 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관리·감독시 중점을 두는 사항에 대해 보육시설담당 공무원과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들은 재정(42.9%), 시설의 운영 상태(42.9%), 서비스의 질(14.3%) 순이었고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재정(54.2%), 교육과정(41.7%), 행정(4.2%)을 우선순위로 관리·감독시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기관유형을 막론하고 재정의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최우선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보육시설 일반공무원을 1년에 모두 1회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64.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35.7%(5명)이었다. 유치원 일반직공무원들 중에 1회 정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44.4%),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는 22.2%였다.

육아지원기관 담당 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공무원의 경우 인력의 충원(64.3%), 업무 부담 경감(28.6%), 보육관련 교육(7.1%) 순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고,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 인력의 충원(56.5%), 유아교육 관련 교육(21.7%), 업무부담 경감(4.3%)을 들었다.

면담과 그 결과분석을 통해, 육아지원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하는 담당공무원들은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이나 법인 기관에 비해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전산망의 보편화, 보육료 및 수업료의 금융기관을 통한 수령 등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성 제고 노력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었다. 요컨대, 공무원들의 중심의 견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수적 확대와 더불어 업무 전문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IV.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인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사회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전제로, 법인을 포함하여 민간설립 94.8%(법인 5.3%)인 보육시설, 사립 46.7%(법인 6.2%)인 유치원 현장에서 육아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육아지원이 사회의 공공 서비스라는 점에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과 더불어 자생적으로 발생한 영리 목적의 민간/사립기관들이 중심이 된 육아지원 현장에서 공공성을 제고하려는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즉, 영리를 추구해 오던 다수의 민간/사립기관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영리를 포기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합의와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육아지원기관이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논거, 그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오던 기관들의 사고 및 인식의 전환, 비영리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 등에 대한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및 목표

영유아에게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기관은 육아와 관련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는 육아지원기관이 이러한 역할 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육아지원기관 역시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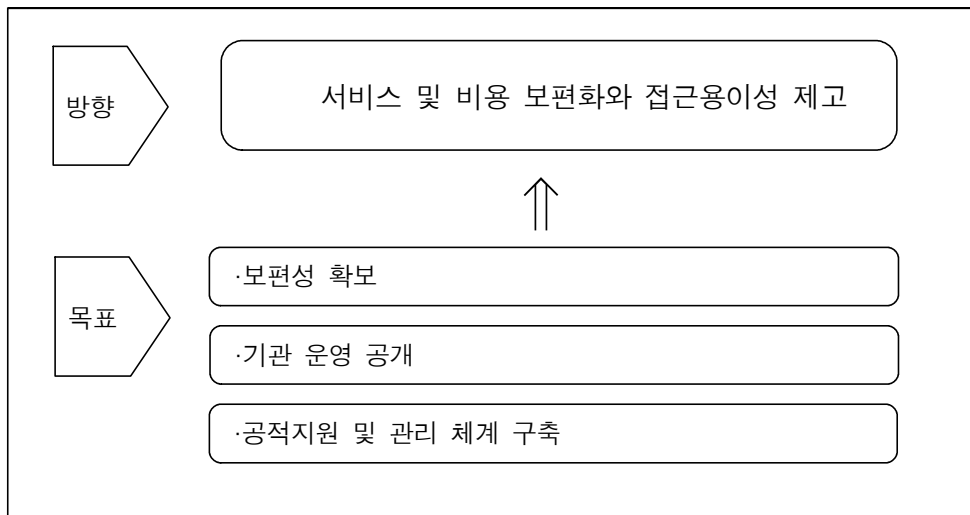
국가는 영유아들이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함께 육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영유아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든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공립/민간(사립), 보육시설/유치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통합 조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양육지원은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 육아비용 지원은 일차적으로 중산층 이하 자녀, 장애자녀는 무상 지원되고, 나아가 지원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자녀양육지원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은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을 희망하고 있다. 지역별 유형별 육아지원기관의 분포를 살펴 수요자의 요구와 기관의 공급이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적합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의 목표는 육아지원기관의 보편성 확보와, 기관운영 개방,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이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향 및 목표

나. 공공성 강화의 목표 및 세부추진과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목표는 보편성 확보, 기관운영 공개, 공적지원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성의 확보

육아지원기관은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일정한 수준이 보장된 보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하고 관리·감독하여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는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인적·물적 환경 및 서비스 수준, 비용들이 형평적이어야 한다.

보편성에서는 기관의 접근성,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동질의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비용 지불 보장 등이 관련된다.

보편성 확보

- ▷ 시설의 접근성 보장
 - 국공립·법인 기관의 적절한 배치
 - 민간/사립기관의 공공역할 수행 지원
 - ▷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감독
 - 유치원교육과정·보육과정 개발 및 보급
 - 평가인증/장학지도 등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의 관리
 - ▷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비용 지불
 - 기관별 영유아 1인당 비용 조정
 - 기관 운영에 따른 지원의 차이 조정
-

2) 기관운영 공개

육아지원기관이 기관운영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를 얻고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지원기관의 개방으로는 재정운영 공개, 서비스 내용 공개, 인력운영 공개, 기타 기관 운영 공개 등이 있다.

기관운영 공개

- ▷ 재정운영 공개
 - 연령별 이용비용(보육료/수업료) 고시
 - 육아지원 기관의 예·결산 자료

- ▷ 서비스 내용 공개
 - 보육·교육계획
 - 평가인증/장학결과
 - 급·간식 운영 자료

- ▷ 교직원 공개
 - 시설장/원장 관련자료
 - 교사 관련자료

- ▷ 시설 운영 공개
 - 기관의 시설설비 및 환경구성
 - 학부모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운영위원회 결과

- ▷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 모색

3) 공적지원 및 관리

국가는 육아지원기관이 공공의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재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의 지원이 현장의 서비스 수준 향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공적지원 및 관리로는 기관운영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지원이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 관리를 들 수 있다.

 공적지원 및 관리

- ▷ 제도 및 기본정책 마련
 - ▷ 재정 지원 및 관리
 - ▷ 기관 수요공급 조절
 - 국공립 및 법인기관/사립기관 간의 균형화
 - ▷ 인력의 양성 및 수급 조절, 전문성 향상
 - 기관장 및 교사 관리
 - 기타 직원 관리
 - ▷ 기관운영 지원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안내
 -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과정 보급 및 안내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조력
 - ▷ 기관운영 관리
 - 행정 관리: 원아, 교직원, 시설환경 관리 규정 관리
 - 재정 관리
 - 재무회계/예·결산 관리
 - 정부 지원금의 사용과 서비스 수준 향상과의 연계
 - 납입금 수령 방법의 투명화: 자동이체·지로 납부 원칙
 - 기관 운영 비용 사용의 투명화
 - 재무 및 회계 담당자 배치
 - 서비스 운영관리
 - 장학 및 조력 참여 지원
 - 평가(인증) 참여 지원
 - 인력관리
 - 기관장 및 교사 관리
 - 기타 직원 및 종사자 관리
 - ▷ 정부의 지원 및 관리 시스템(전달체계) 구축
 - 행·재정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 육아지원기관 종합 전산망 구축
예) 여성가족부의 보육행정전산망,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교육행정정보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과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
 - 담당공무원의 적절성
 - 담당 공무원의 적절한 수와 역할을 고려한 배치
 -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본 절에서는 육아지원기관의 보편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공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수행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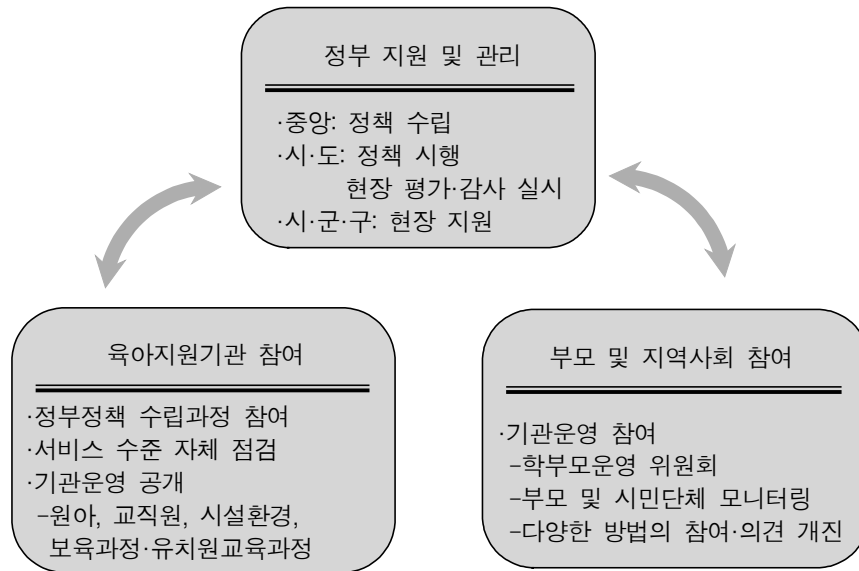
공공성 제고 방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육아지원기관, 수요자, 정부간의 협력과정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육아지원 현장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 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육아지원기관이 만일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비영리로 전환하여야 하는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간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이 우선인가 기관정비가 우선인가를 놓고 논의와 주장이 다르다. 현장에서는 기관 정비에 비용이 필요하니 선지원을 요구하고, 정부는 정부 재정 투자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연결됨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 구축하라고 요구한다. 만일 현재의 수준이 열악하다면 지원 없이는 수준향상이 어려울 것이나 정부재정이란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면 일정기간을 준비기간으로 설정한 후 정부의 지원과 현장의 관리에 대비하여야 하는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준비기간이 지나면 투명성이 확보된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 결과 정부지원과 관리·감독을 연계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유치원 71.4%, 보육시설 67.8%로 나타났으며, 지원도 관리·감독도 받지 않겠다는 비율은 유치원 9.7%, 보육시설 12.9%이다. 그러나 육아지원기관들은 실제로 정부의 지원으로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보육시설 75.3%, 유치원 87.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은 사업수행 주체별 과제제안과, 나아가 주요 과제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제안하였다.

가. 정책 수행 주체에 따른 추진과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부모 및 지역사회, 육아지원기관, 중앙·지방 정부 간의 의견조율 및 협력이 중요하며 이 세 주체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정책추진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IV-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수요자인 지역사회 및 학부모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거꾸로 정부중심으로 정책이 우선 수립되고 이것이 육아지원기관들에게 하달되고, 육아지원기관이 부모에게 전달하고, 부모의 참여란 전달된 정보를 수용하는 정도라면 정책의 효과 산출은 늦어지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정책추진과제를 수행주체별로 제안해 보면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시·도는 시·군·구의 현장지원업무를 지원한다. 시·군·구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빈번하게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지원을 주고받도록 한다. 다만 기관 운영의 평가나 감사의 실시는 현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객관성을 떨 수 있는 16개 시·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감사기능은 시·군·구가 가지고 있다.

시·군·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개별 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행·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운영관리 지원, 교직원 운영관리 지원, 기관평가 관리 지원,

조력 및 장학지도 지원, 수요자 만족도 및 요구 파악을 들 수 있다.

육아지원기관들이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들로는 재정운영 공개, 서비스 내용 공개, 교직원 공개, 수요자 만족도 및 요구 파악 등이다.

본 절에서는 이 모든 기능들은 육아지원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인 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들의 참여는 미진한 수준이다.

나.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본 절에서는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성취하기 위한 과제들 중에서 정책 성공의 핵심이 되는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로는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기관 설치, 공공 서비스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된 비용이 서비스 수준 향상에 소요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우선 중요하다고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점추진과제는 재정지원의 확대, 육아지원기관의 운영 지원,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공립 및 법인 시설의 확충, 육아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 공적역할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이다.

<표 IV-1> 중점 추진 과제

<p>중점 추진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지원의 확대 2) 기관운영 지원 3) 국공립 및 법인 기관의 확충 4) 육아지원기관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1) 재정지원의 확대

육아지원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부 수준이 낮거나 혹은 수준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소요비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분담률은 보육부문과 유아교육부문을 합하였을 때 38% 수준이다(여성가족부, 새싹플랜, 2006). 이는 OECD국가

들의 70~85% 수준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육아지원 비용에 관해서는 서문희(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육아비용 분담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1) 기본개념 설정

육아지원기관 지원은 영유아 1인당 소요비용이 기준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육아지원 적정비용을 추계하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동일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동일수준으로 맞추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용 영유아 특성 요인의 반영

영유아의 연령(0~5세) 및 특성(장애아등), 이용시간(반일반, 연장반, 종일반, 야간반), 이용 가구의 특성(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농어촌 가정),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요인 변화가 소요비용 추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가구의 소득에 따른 재정지원은 우선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장애아 무상지원, 그 다음으로는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되 중산층의 경우는 반일반은 무상, 종일반은 부모 자부담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1단계: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장애아 무상지원
- 2단계: 지원대상을 1단계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며 이 때 반일반은 무상지원하고 추가 종일반은 부모가 자부담한다.

요구되는 자료로는 총영유아 추계치(인구변화율), 육아지원기관 이용 수요율, 영유아 1인당 소요비용 등이다.

(3) 보육환경 변화 요인의 분석 및 적용

출산율의 변화 및 출산대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혼율 증가, 육아지원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에 따른 추가 수요, 비용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 전망 등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 추계가 변동될 것이므로 고려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자료로는 가족의 의식 변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구조의 변화, 맞벌이 가구 비율, 가구의 결혼 및 이혼율, 출산율,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서비스 수준 향상 계획, 재정지원 확대 계획) 등이다.

(4) 영유아 1인당 기준 비용의 설정

동일기준에 의한 비용지원을 추계할 때 어떤 수준을 기준으로 추계할 것인지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추계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중 어느 유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추계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바람직한 수준을 기준으로 1인당 표준육아비용을 다시 산출한다면 추계 또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 인구수 추계 대비 총 육아비용이 추계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육아지원기관의 공적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육아지원비용의 규모 및 정부 부담분에 관한 규모가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어느 대상까지, 총비용의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요구되는 자료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별 기관 운영방식, 영유아 1인당 소요비용, 지원금, 부모부담금 비교자료, 유형별 육아지원기관의 예·결산 분석자료, 육아지원비용 단가산출 내역별에 따른 부모 요구수준, 원하는 서비스 수준, 환경 구성,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요구 프로그램 등이다. 육아지원환경 변화 및 요구에 대한 수요 예측과 추계가 세밀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정책의 효과는 낮아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편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보육재정의 확대가 가져오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담문제이다. 정부의 보육재정 증가분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예산은 지난 5년간 전년대비 30~50% 증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은 전년대비 37~70%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유아교육 재정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도 증가폭이 높았으나 보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IV-2> 참조). 이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보육재정이 부담이 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지원과 같은 특별조치가 요구된다.

〈표 IV-2〉 육아지원 재정의 변화

단위 :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보육	중앙정부 (전년대비증가율)	2,102	3,120 (48.4)	4,050 (29.8)	6,001 (48.2)	7,844 (30.7)
	지방정부 (전년대비증가율)	2,253	3,431 (52.3)	4,702 (37.1)	7,354 (56.4)	12,519 (70.2)
	계	4,355	6,551 (50.4)	8,752 (33.6)	13,355 (52.6)	20,354 (52.4)
유아 교육	중앙정부 (전년대비증가율)	209	257 (22.9)	345 (34.2)	871 (152.5)	1,997 (129.3)
	지방정부 (전년대비증가율)	3,349	3,823 (14.2)	4,397 (15.0)	5,512 (25.4)	6,863 (24.5)
	계	3,558	4,080 (14.7)	4,742 (16.2)	6,383 (34.6)	8,860 (38.8)

자료: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예산자료.

2) 기관운영 지원

육아지원기관 중 국공립유치원, 국공립법인보육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민간보육시설/사립유치원에 한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는 육아지원기관들이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및 이에 따른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 결과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41.9%, 사립유치원의 21.0%는 스스로 영리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들이 영리기관이라면 국가의 지원이 제공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조사를 위한 공무원 대상 조사에서 역시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57.1%,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40.0%는 민간/사립 육아지원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영리기관이라고 생각하고

10) 민간/사립기관이 영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국가나 국민이 공공기관으로 대우를 해 주지 않고 지원도 없기 때문' 56.3%, '사유재산이므로' 36.8%.

있어 이에 대한 정비 및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육아지원기관들이 공적역할 수행 기관으로서의 의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사회적 육아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미비라고 하겠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들이 사회적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의 수렴과 준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설명 및 안내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와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립된 정책이 전달체계를 거쳐 현장에 전달되기까지는 전달체계상의 담당자들이 우선 이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고, 최종 육아지원 현장에까지 도달하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수행은 반드시 다각적인 정책설명회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의 배경, 정책적 의의, 구체적 내용, 참여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대책과 육아지원 정책,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표준보육과정·유치원교육과정, 기본보조금 제도(이해율: 유치원 70.6%, 보육시설 97.5%), 평가(인증)제도(동의비율: 유치원 56.8%, 보육시설 56.2%), 재무회계규칙의 적용(동의비율: 유치원 61.4%, 보육시설 72.4%), 행정전산화(동의비율: 유치원 74.6%, 보육시설 79.6%), 운영위원회(동의비율: 유치원 45.5%, 보육시설 56.5%), 기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따라서 정책 안내 및 교육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인증지표가 함축하고 있는 7개 영역 80개 문항에 기초한 기관운영에 대한 준비와 이를 위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다. 유치원 장학 관련으로는 원내 자율장학, 지구별 자율장학, 담임장학, 요청장학, 종합장학, 표집장학, 사이버장학 참여 준비이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방법, 교사 및 영유아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적용법, 그 외 기타 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들은 소규모인 특징을 지닌다. 보육시설은 40인 미만 시설이 70.1%(19,891개소)이고, 유치원은 1학급 기관이 38.8%(3,211개소), 2학급 18.3%(1,513개소)로 2학급 이하가 57.1%이다. 특히 임대기관의 경우 1~2학급 25.5%, 3~4학급 61.7%로 자기 소유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1~2학급 15.4%, 3~4학급 40.2%)에 비하여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소규모 기관에서는 기관장, 혹은 교사가 교육을 받고자 기관을 비우기가 어려우므로 이들 대상의

교육 실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안으로는 이들이 교육기관으로 와서 받는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찾아가는 교육, 간편한 설명 자료의 배포, on-line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혹은 교육참가를 위한 대체인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육아지원기관 기관장, 혹은 교사교육의 필수과목이 점검되어야 하며, 특히 재무회계규칙, 평가인증 운영 등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기관 운영 지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우선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으며, 보육료/원비에는 환경개선비가 산정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국공립기관에는 별도로 기관 환경개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이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준을 준수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개선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요구된다.

교사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재 민간기관의 여건으로는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교사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여 기관의 교사 수급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국공립(보육의 경우 법인시설 포함)의 경우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교사 수급이 원활하나 민간기관의 교사는 국공립 대비 60~70%수준으로 낮으므로 기본보조금이 교사 보수를 높이는데 제도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사 보수는 국공립교사 보수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나정 외, 2005). 한편 보육시설은 국공립 대비 민간개인시설 교사 보수는 68%, 가정보육시설 교사 보수는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6).

보육·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재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계획안 작성시 영유아 관련 잡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44.2%이고 연구기관개발 자료 26.2% 등이다. 사립유치원은 영유아 관련 잡지를 이용하는 경우 40.4%,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48.6%이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들이 어떤 보육·교육과정에 준하여 기관을 운영하는지 점검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놀이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영아보육, 장애아 보육 등은 이에 적절한 놀이감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발

달에 적합한 놀이감의 개발, 보급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전통 놀이, 노래, 놀이감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문서관리 지원에서는 일부 민간기관들에서는 문서관리가 아주 미흡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공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면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정보 제공에서는 부모교육자료, 가정에서의 영유아 양육방법,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정보 등의 기초자료를 일괄적으로 수집, 제공하여 기관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육아지원기관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엇이 부족한 지 실태를 파악한 후 관리점검에 들어가지 전에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공공성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투명한 공개 운영, 적절한 관리·감독이 기본 개념이라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공립 및 법인 기관의 확충

연구결과들에 의할 때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은 국가나 법인이 설치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때 공공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자산을 들여 기관을 설립했을 경우 이를 보상받고자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과, 혹은 실제로 민간기관들이 임대시설로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에서 가장 먼저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현재의 비용 산출 및 추계 방법으로는 육아지원의 공공성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육아지원기관의 일정비율이 국공립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투입자산을 어떻게 보상에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민간 기관장 및 일부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공립·법인기관의 확충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서는 국공립기관의 설치가 비교적 손쉬울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존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도시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민간/사립기관 매입을 통한 국공립시설 확충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공립기관 확충에서는 확충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이를 담당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만

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상대방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부진될 수 밖에 없다.

(1) 국공립 시설 확충

정부의 보육정책에서는 국공립시설의 수를 현재의 1,352개소에서 2010년 2,700개소로 확충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율 11.3%를 30% 수준으로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역시 단설 및 학교 병설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한다.
- ② 국공립시설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및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신축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보육시설 건축용 공공시설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학교복합시설 BTL 사업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추진 예정이다. 도시공원 내 신축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보육시설 매입, 대학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예정이다.
- ③ 신축비 지원 없이도 시설 확충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초등학교 등 기존 공공건물 우선 활용을 포함한다.

유의사항으로는 국공립육아지원기관의 설치는 신규설치와 기존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원아 추가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신규설치를, 원아수가 제한적인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기존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가능하다.

국공립육아지원기관의 신규 설치는 새롭게 도시가 들어서는 신도시, 육아지원기관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작동되지 않는 저소득층 지역, 장애아 보육, 병아보육 등과 같은 특수아 보육 등을 위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신규설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극복이 난제로 남아 있다. 우선 국공립시

설의 신규설치는 중앙정부가 건축비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서울 20%: 80%).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대지구입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이 신축되면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차등보육료/원비 지원조차도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결과 이러한 이유들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기관의 신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대신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강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국공립기관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요비용을 중앙정부 및 16개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이미 나타난 문제극복 방안이 마련,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 선출직인 점도 국공립기관 신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민간기관 기관장들이 국공립기관의 신축을 거부하는 경우 신규계획은 추진이 어려워진다. 지역의 민간/사립 기관장들의 공공화 정책 동참 여부에 따라 민간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지역 세력인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공립기관을 통한 육아지원의 사회적 공공의 역할 추진을 촉구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국공립시설 신축역시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한다. 출산을 저하 현상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 영유아가 급격히 줄고 있으므로 농어촌지역의 국공립기관 신축은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지역 공무원들의 면담조사 결과 신규설치에서는 기존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되었다. 이때의 학교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도 포함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존의 건물에 소규모 육아지원기관의 설치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2) 민간/사립기관의 법인화 방안 모색

민간/사립기관의 법인화 추진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립기관의 법인화 유도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사립기관들이 법인화에 참여할만한 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화가 가능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기초 수치가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과연 이들이 제안되고 있는 법

인화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민간보육시설 중 법인화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은 자가시설, 용자시설이 아닌 시설, 가정보육이 아닌 시설로 이러한 조건에 준하는 보육시설은 3,293개소이다. 여기에 법인화 찬성률 64.4%를 적용하면 법인화 가능 시설은 2,120개소 수준이다. 이는 최초 민간총수 24,420개소 대비 8.7%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민간임대시설과 가정시설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인화를 통한 공공시설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개인시설(개인, 부모협동, 직장,가정)	24,420개소
· 가정 11,346개소 제외	· 13,074개소
· 자가를 39.9% 적용 ¹¹⁾	· 5,216개소
· 용자시설 1,923개소 제외 ¹²⁾	· 3,293개소
· 법인화 찬성률 64.4% 적용 ¹³⁾	· 2,120개소

동일한 방식으로 유치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3,347개소 중 자가운영은 2,948개소이다. 여기에 법인화 참여율 46.5%를 적용하면 법인화 가능원은 1,370개소 수준이다. 유치원은 보육시설에 비하여 자가 비율이 높으므로 법인화가능시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초 대상 유치원 3,347개소 대비 40.9%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합하면 법인화가 가능한 민간/사립 기관은 3,490개소이다.

사립유치원	3,347개소
· 자가를 88.1% 적용	· 2,948개소
· 법인화 찬성률 46.5% 적용	· 1,370개소

민간개인시설의 법인화과정에 대한 다른 나라 사례로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11) 여성부(2005). 2004 전국보육실태조사.

12) 초기 용자시설 3,497개소중 완전상환 1,385개소, 경매완료 189개소(2002)를 감안하면 현재 용자보육시설 1,9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3) 본조사 결과임.

민간개인시설의 법인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보육소는 공립보육소와 민간보육소가 있었다. 민간보육소는 개인설립 보육소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일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되면서, “우체통 수 만큼의 보육소를”이라는 슬로건하에 전국에서 보육소 만들기 운동이 일어났고, 보육소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때 개인 보육소가 대폭 설립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설립 보육소에게 법인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법인자격을 취득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별 보육사업에 대한 추가교사의 배치등과 같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일본에는 아직까지 개인보육소가 일부 남아있기는 하나 이후 법인만이 보육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인 보육소는 설립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보육소는 문을 닫게 된다.

전국적으로 1971년~1975년 사이 ‘사회복지긴급정비 5개년계획’을 계획하여 이 기간중 사회복지시설이 일만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 보육소였다. 당시 민간개인시설들이 법인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100만엔이 있어야 했으므로 이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었다. 또한 법인화 이후에는 개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 점을 보상하기 위하여 개인시설이 법인화로 전환하는 경우 설립금을 당시 1,500만엔 씩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개인시설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법인화제도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제공한 것이 법인화제도를 성공시킨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개인의 자산을 법인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충분한 지원책이 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법인 출연금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자산 보상 관점에서의 일정 금액 지원
- 국가 헌납 자산 보상에 준하는 국공립시설 수준의 안정적 운영 보장

김병주(2005)는 유치원의 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 ‘유치원 법인화 지원 센터’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법인화를 원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지원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때 법인화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가칭 ‘육아법인’의 법적근거 마련을 제안한다.

(3) 민간/사립기관의 국가 매입

민간/사립기관의 국가 매입이 시도되고 있으며, 2005년도 3개소(인천 3개소), 2006년도 3개소(경기 1개소, 경남 2개소)이다¹⁴⁾.

다음은 조사결과에 준하여 국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고려되는 민간/사립기관을 추계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개인시설의 경우 자가시설 5,216개소 중 매입 찬성률 53.8%를 적용하면 매입 가능한 시설은 2,806개소이다.

민간개인시설(개인, 부모협동, 직장)	13,074개소
· 자가를 39.9% 적용	· 5,216개소
· 매입 찬성률 53.8% 적용 ¹⁵⁾	· 2,806개소

사립유치원은 자가시설 2,948개소중 매입 찬성률 57.1%를 적용하면 매입 가능한 기관은 1,683개소이다.

사립유치원	3,347개소
· 자가를 88.1% 적용	· 2,948개소
· 매입 찬성률 57.1% 적용	· 1,683개소

이상에서 민간/사립 육아지원기관 중 국가 매입이 가능한 기관은 보육시설은 2,806개소, 사립유치원 1,683개소로 총 4,489개소가 가능한 것으로 적지 않은 기관이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이나 건물 매매의 경우 정부 공시지가와 실 매매가가 있는데 인천의 사례에서와 같이 실 매매가를 적용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대략 4,489개소의 매입이 예측가능하다.

정부가 운영한 바 있는 국공립기관 확충 TF/T에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국공립기관의 확충은 신축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매입금을 부담하는 가하는 것과 이후 운영지원금 부담의 문제에 대하여 세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확충의 규모를 늘릴 경우 중앙정부가 특별추진계획에 의하여 비용부담을 전담하여야 할 것이다.

14) 여성가족부(2006. 11).

15) 본 조사 결과.

4) 육아지원기관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관들이 어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할 때 성공할 것이다. 재정운영의 공개 및 서비스 수준 점검이 핵심이다. 본 장에서는 육아지원기관의 관리·감독 방안을 수행주체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도 및 관리·감독 방안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 기관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학부모들의 참여를 통한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보육시설 28,367개소(2005. 12), 유치원 8,275개소(2005. 10)의 운영수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되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인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이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 육아지원기관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아직까지 운영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6년 현재 동일한 기준으로 원비 및 보육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정부의 주요 관리·감독 기능이란 육아정책의 방향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에 전달한 후 기관들이 이에 준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 후 다시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관리·감독방안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동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현장의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행정전산화 동의: 77.0%(유치원 74.6%, 보육시설 79.6%)
- 평가인증제도 동의: 56.5%(유치원 56.8%, 보육시설 56.2%)
- 법인화 동의: 54.7%(유치원 46.3%, 보육시설 63.9%)
- 운영위원회 동의: 50.8%(유치원 45.5%, 보육시설 56.5%)
- 회계장부관리 동의: 66.7%(유치원 61.4%, 보육시설 72.4%)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전달체계의 단계에 따라 중앙정부, 16개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수 있다.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원과 관리·감독체계 연결 - 전국 단위의 관리·감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전산 시스템 구축 · 기관 평가체계 구축 - 16개 시·도 관리·감독 역할 지원
16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운영지침 마련 - 16개 시·도별 관리·감독 실시방안 마련 -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감사 실시 및 사후관리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장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지원, 교육지원 등 - 정부의 평가제도 참여 지원 - 육아지원기관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지도

① 중앙정부

육아지원기관에 관한 전국 단위의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한다.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육아행정전산화, 담당 공무원의 확보,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등이 있다.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리·감독시스템을 반드시 조건으로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② 16개 시·도

기관지원을 위해 시·도가 준비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설치 및 인가 관련 사항으로 육아지원기관 설치인가 기준의 준수, 육아지원 재정 및 보육료/원비 관련 사항으로 시·도의 보육료/원비 단가표, 기관운영비 내역, 정부 보조금 관련 사항으로 운영비 보조금, 교직원 보수표, 기관운영비 기준이 있다. 육아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관련법, 육아지원기관 운영 점검내용(항목), 구비문서 내용, 직원근무계약(근로기준법), 비상재해관리 지침, 질병관리 지침, 사고발생 처리 지침 등이다.

또한 16개 시·도의 주요 관리·감독 업무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16개 시·도별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지한 후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기본적으로는 우선 예·결산 감사와 기관운영의 기본적인 인가사항 준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기능이 시·도로 넘어갈 경우 시·도에서 감사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대안1) 감사내용을 행·재정 감사와 서비스 수준 평가로 분류하여 시·도는 행·재정 감사만을 담당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는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행·재정 감사역시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최대한으로 이용한다면 업무의 과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대안2) 우리나라는 소규모 시설이 많으므로 권역을 나누어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들, 혹은 유형별로 기관들을 그룹화 하여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그룹에 속한 기관들은 무작위로 선택되어 실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결과는 거점기관이 책임을 지게 된다.
- 대안3) 시·도의 여력에 따라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격년으로, 이후 점차 년 1회로 점검회수를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결산 감사와 행정감사는 16개 시·도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육아지원기관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군·구가 감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6개 시·도가 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시·군·구가 동행하여 감사준비 및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시·군·구가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다.

구 분	장부, 명부 등
1. 기관 관리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인허가증, 운영 규칙 - 교직원 취업규칙(시간외 근무, 급여규정, 여비규정, 경조규정, 경리규정), 고용보험 등 각종보험 - 사업계획, 사업보고서철, 업무일지
2. 영유아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기본서류: 영유아 명부, 기관 입소관련서류 - 아동 건강진단기록부 - 보호자 연락문서철 - 교육·보육일지
3.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육계획: 연간 및 월간(주간)지도계획, 하루일과 운영 - 급·간식 운영
4. 교직원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채용, 퇴직에 관한 서류 - 업무분담표 - 직원명부: 이력서, 자격증 - 직원출근부 - 직원건강진단기록부: 채용시의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계 서류 - 소득세, 주민세 관계서류 - 직원회의기록부, 직원연수기록부
5. 재무회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 재산목록: 부동산대장, 고정자산물건대장 - 비품대장 - 총계정원장(계산표) - 급여대장 - 보조금청구서 - 예산서 - 결산보고서 - 증빙서류철
6. 비상재해 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서류(긴급연락체계 포함) - 소방계획 및 소방용설비 등 점검결과보고서 - 안전교육 결과

2005년도부터 사립/민간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지원대상의 조건도 동일하게 하여 기본보조금 제도의 서비스 수준 향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 평가는 현재 보육시설이 적용하고 있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유치원 대상의 평가체계를 별도로 구축할 수도 있다.

③ 시·군·구

시·군·구 단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원에 중점을 둘 수 있다. 특히 사·도의 감사 및 평가(인증)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한다. 특히 예·결산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인가사항 준수에서는 정원초과를 점검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본 조사 결과 현재 예·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육시설 21.4%, 유치원 1.6%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66.7%(유치원 61.4%, 보육시설 72.4%)는 재무회계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실무를, 나머지 기관에는 재무회계 규칙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은 참여의사가 있다는 보육시설(56.2%)과 정부의 평가제도 참여에 동의하는 유치원(56.8%)의 참여지원을 위한 조력이 요구된다. 이는 육아지원기관과 가장 인접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실시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 행정진산화에 대한 동의는 높게 나타났으며(유치원 74.6%, 보육시설 79.6%),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점차 다양해지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을 연계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사·도의 감사결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사·도간 교차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육아지원기관의 역할

육아지원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역할은 기관운영의 수준을 점검하고 향상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보육·교육서비스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해 나가는 일, 예·결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하는 것,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평가시스템에 참여하는 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장 및 교직원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수준 점검을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성인들과 어떤 과정(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준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장부, 명부 등
1. 보육 서비스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보육 및 교육 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이나 교실 공간배치 적절성 확보 · 충분한 놀이감 제공 -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사, 기타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 -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과정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과정의 계획 및 다양한 보육활동 실시 - 아동 중심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를 위한 일상적 양육 및 교육과 영유아와 교사간 상호작용 - 건강과 영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시설설비의 청결, 위생관리, 질병관리에 대한 준비, 영유아를 위한 급식과 간식 관리 -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외 시설 및 놀이감의 안전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안전한 보호방법, 안전교육 방법 -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족 및 지역사회관련 자료 확보 및 이들과의 다양한 협조체제 구축 방법

<p>2. 기관 관련 공개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리규정 · 원아 1인당 원비/보육료(부모부담 내역) 및 정부지원금 내역 · 금전출납 및 예·결산자료 - 행정자료(인가사항 준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아 현황 · 교직원 운영 현황: 근무규칙, 근무계약, 채용·배치 및 퇴직현황, 보수, 담당반 혹은 담당 원아 및 근무 현황, 보수교육 참가 현황 · 건물시설설비 현황, 학급 운영일지 · 장학 및 평가인증 참여(실시) 현황 · 직원회의 기록 - 시설 및 기관 운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운영방침 · 프로그램: 연간, 월간, 일일 운영 프로그램, 시설설비 및 환경구성 - 건강·영양·안전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현황 · 식·간식 메뉴, 식간식 운영현황 · 안전교육 및 관리현황 - 기관의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 관련 자료
<p>3. 부모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들의 의견 수렴 · 부모의견함, 편지, 연락장, 게시판 등을 활용

공공성 제고를 위해 육아지원기관이 위의 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은 기관 운영 공개는 기관장의 인식에 따라 좌우되므로 기관장의 공공성 참여 의지 고취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92.1%가 보육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유치원 역시 원비가 자율화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예결산 공개 요구에 저항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나 민간/사립 기관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예결산 감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예결산 공개 비율은 보육시설 23.7%, 유치원 45.8%이다.

(3) 학부모 참여

육아지원기관이 투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학부모들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을 헤아리고, 이러한 지원이 교육·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 참여는 학부모 개개인의 참여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며, 학부모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기관운영 참여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활성화는 운영위원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민주적인 운영절차, 회의내용 및 결과의 공개에 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기관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심의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규정 제·개정 관련 사항,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보육내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학부모 참여는 지역사회 육아지원 모니터링단 참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며, 기타 육아지원기관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성공은 '누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운영위원의 선출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추천된 인사들 중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위원이 결정되어야 한다. 회의 내용 및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기관에 대한 부모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기관의 안정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참여를 인지도시켜야 한다. 원아 입소 시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제도,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등에 대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이로써 모든 부모들이 이를 인지하여 참여희망자 모집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참여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수도 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지역 내 다른 육아지원기관의 보육시설운영위원회와 교차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결과의 성공은 제안된 전략의 세부내용을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마련된 정책이 취지는 좋으나 수행과정에서 준비 미흡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는 많을 것이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할 때 현재 우리나라 육아지원 현장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정부지원 없이는 공공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정기간을 특별시책을 수행하는 준비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공공역할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운영수준이 향상되지 못한 기관들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집행이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서비스 수준향상의 조건으로 개개 기관들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특별시책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모든 육아지원기관들이 보편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기관운영으로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OECD 교육지표.
- 김병주, 김성기, 안상대, 오인선(2005).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5-지정-60.
- 김애실(2006).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 실현 가능한가?. 보육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위한 3차 공개 토론회 자료집.
- 김영모, 표갑수(편)(1998). 선진국 아동보육 제도와 보육 프로그램.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중해 외(2006).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공공성 평가. 미출판물.
- 김중해(2004).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중해(2006).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방안”. 유희정(2006).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태성(2006). 사회복지정책입문. 서울: 청목출판사.
- 나병현(2002).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교교육체제의 변화. 교육철학. 27. 37-54.
- 나병현(2004). 공교육의 의미. 황원철 외(편). 공교육: 이념·제도·개혁(pp. 7-28). 서울: 원미사.
- 나정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3):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5-05. 173.
- 나정(1997).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향. 교육인적자원부.

-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200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참고자료.
- 문용린(역)(1996). 피아제가 보여주는 아이들의 인지세계,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 대책 연구. 보도자료.
- 보건사회연구원(2003). 인구추계자료.
- 서문희(2002).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 서문희(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걱정 분담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연구보고서.
- 서문희, 이미화, 구미진(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6-05.
- 성효용(2006). “참여정부의 ‘새싹플랜’ 실현 가능한가?”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토론회 자료집.
- 양옥승, 김영옥, 김현희, 박경자, 위영희, 이옥, 이차숙, 정미라, 지성애, 홍혜경 (1998). 세계의 보육제도. 서울: 양서원.
- 여성가족부(2006. 7)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 - 새싹플랜.
-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보육·교육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 유희정 외(2003).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유희정(2006. 9). 일본 보육정책 출장보고서. 미발간 자료.
- 이재인, 김선미, 김은정(2005). 소득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 참고자료(2004. 01.15).
- 최은영(2004. 11). 한국보육정책의 공공성 평가. 보건복지 포럼.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한국여성개발원(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여성통계연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2).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논문 발표 자료집.

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서울: 학지사

현진권(2004. 6. 9). 보육재정의 새로운 방향모색: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Levitt, P.(2005). “영유아 정신의 성장과 보육”. 제13회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 75 - 132.

OECD(1997).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OECD(1999).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online] <http://www.oecd.org/copy.htm/>.

OECD(2000).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Australian Background Report.

OECD(2006).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Youth. OECD.

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

Vandell, D.(2004).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전략”. 제12회 국제학술대회 삼성복지재단. 195 - 214.

부 록

부록 I. 설문지

부록 II.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부록 III.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부록 IV. 유치원 장학 사례

부록 I. 설문지

1. 보육시설 대상 설문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각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산, 수행하였던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2006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재정 지원의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기서 육아지원 기관이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의미합니다. 본 질문지는 민간보육시설장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것입니다.

2006년 7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지원기관공공성 연구팀」
유희정 연구위원 02) 730-3056, hjyoo@kicce.re.kr
김은설 부연구위원 02) 733-2326, eskim@kicce.re.kr
유은영 연구원 02) 733-2337, eyyoo@kicce.re.kr

해당되는 번호에 $\sqrt{\quad}$ 표시 하시거나, 빈칸에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귀 보육시설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법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② 법인 외 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③ 민간개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④ 가정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⑤ 부모협동 보육시설
2. 지역	<input type="checkbox"/> ①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input type="checkbox"/> ②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③ 읍면 지역
3. 건물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 건물 <input type="checkbox"/> ② 단독 주택 <input type="checkbox"/> ③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④ 상가 <input type="checkbox"/> ⑤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_____
4. 임대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자가 <input type="checkbox"/> ② 건물 전체 임대 <input type="checkbox"/> ③ 건물 일부 임대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임대 *월세 월 _____ 원 혹은 전세 _____ 원
5. 시설의 전용성 확보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보육시설 전용 <input type="checkbox"/> ② 주거/상가 등 복합용도
6. 학급 수	_____ 학급

귀 기관의 등록 아동 및 교사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7. 아동 정원	_____명
8. 등록 아동 현원	_____명
9. 교사 수(기관장 포함)	_____명

시설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사항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성별	___ ① 여자 ___ ② 남자
11. 자격증	___ ① 유치원장자격증 ___ ② 1급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___ ③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___ ④ 1급 보육교사 자격증 ___ ⑤ 초·중등 교사 자격증 ___ 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___ ⑦ 간호사 자격증 ___ ⑧ (5년 이상의 보육 관련 업무) 공무원 ___ ⑨ 기타
12. 전공	___ ① 아동학 ___ ② 유아교육학 ___ ③ 사회복지학 ___ ④ 보육학 ___ ⑤ 가정(관리)학 ___ ⑥ 보육교사교육원 졸업 ___ ⑦ 기타(교육학, 영양학 등)
13. 경력	① 보육시설 ()년, ② 유치원()년 ③ 기타(초·중·등, 공무원 등) _____년
14. 현재 운영하는 보육시설 이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기관 수	① 유치원 ()개소 ② 보육/가정보육시설 ()개소 ③ 영·유아 대상 학원 ()개소 ④ 기타 ()개소 총 ()개소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0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5. 민간보육시설은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기관이다(이유: _____)
- ② 공공기관이 아니다(이유: _____)

16. 다음의 보육지원 정부 정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해당사항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거의 알지 못한다	④ 전혀 알지 못한다
1) 5세아 무상보육	①	②	③	④
2) 기본보조금	①	②	③	④
3) 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	②	③	④
4) 보육시설평가인증제	①	②	③	④
5) 유치원 대상의 장학제도	①	②	③	④

* 5세아 무상 보육: 만 5세아에게 보육료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보조금: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와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료와 적정한 기준 비용(국공립보육시설 비용과 유사)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학부모에게 여러 가지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정부지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7. 정부는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적극 참여 하겠다	② 기회가 되면 참여 하겠다	③ 별로 참여하고 싶지않다	④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1) 보육행정전산화	①	②	③	④
2) 평가인증 제도	①	②	③	④
3)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①	②	③	④
4)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②	③	④
5) 회계 장부 관리	①	②	③	④

* 보육행정전산화: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효율적인 보육시설 행정 관리 시스템이 없어 보육행정이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행정지원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18.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금과 시설 대한 지도·감독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 정부 지원금에는 반드시 지도·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___ ②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지도·감독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___ ③ 정부 지원금은 받되 지도·감독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___ ④ 기타 _____
19. 현재의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자율화하되 보육시설의 운영비 내역을 완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___ ① 매우 찬성한다
 ___ ② 조금 찬성한다
 ___ ③ 반대한다
 ___ ④ 기타(지역별 도입을 검토해야한다 등) _____
20. 만약에 국가가 귀 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화 하겠다면 매도하시겠습니까?
 ___ ① 매도 하겠다
 ___ ② 매도하지 않겠다
 ___ ③ 기타 _____
21.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매우 영향을 미친다
 ___ ② 조금 영향을 미친다
 ___ ③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___ ④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 귀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___ ①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이미 참여하였다
 ___ ② 현재 참여하고 있다
 ___ ③ 참여 의사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___ ④ 참여 의사가 없다
23. 수업료는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고 계십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___ ① 교사 혹은 원장이 직접 수령
 ___ ② 은행의 지로를 통한 수령
 ___ ③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한 수령
 ___ ④ 신용카드를 통한 수령
 ___ ⑤ 기타 _____

귀 보육시설의 공공성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국가가 정한 적정 보육료를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제공 방법: _____
25. 귀 보육시설에는 재무 또는 회계 담당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누가 맡고 있습니까?
 ① 시설장
 ② 원감 혹은 주임
 ③ 교사 중 담당자
 ④ 경리 직원
 ⑤ 운전사 등 기타 직원
 ⑥ 기타 _____
26. 귀 보육시설에서는 운영비의 예·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금전출납부를 통해 예·결산을 하고 있다
 ② 예·결산 전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③ 외부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예·결산을 하고 있다
 ④ 기타의 방법을 통해 예·결산을 하고 있다 _____
 ⑤ 예·결산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27. 귀 보육시설에서는 운영비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공개하지 않는다
 ② 공개하고 있다
 ↳ 공개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계십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정부보고
 ② 유인물 배포
 ③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
 ④ 홈페이지
 ⑤ 기타 _____

28. (운영비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___ ① 매년 1회
 ___ ② 분기별 1회
 ___ ③ 격년으로
 ___ ④ 부정기적으로
 ___ ⑤ 기타 _____

29. 운영비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 ___ ① 필요하다(이유: _____)
 ___ ② 필요하지 않다(이유: _____)

30.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기관에서 수령하고 있는 지원 항목에 대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단위: 원/년)

구분		원
자체수입		
정부지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만 0-2세아 기본보조금과 차등 보육료	
	만 3-4세아 차등 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교재교구지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신·개축·보수 등	
	기타	
	소계	
계(총 수입)		
총 지출		

31.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개선되었는지 직접 적어주십시오.

32. 정부지원금이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분야를 우선순위대로 표시해주시시오.

- ___ ① 교사인건비
- ___ ② 교재·교구비
- ___ ③ 시설개선비
- ___ ④ 차량운영비
- ___ ⑤ 기타

33. 교사 임면 사항을 시·군·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 ___ ① 임면 시 바로 보고한다
- ___ ② 임면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다
- ___ ③ 임면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다
- ___ ④ 가끔 한다
- ___ ⑤ 하지 않는다
- ___ ⑥ 기타

34. 학부모가 귀 보육시설의 인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십니까? 각 항목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비공개
1) 시설장 관련 자료	공개방법: _____	
2) 교사 관련 자료	공개방법: _____	
3) 평가인증 결과	공개방법: _____	
4) 보육 프로그램 일정	공개방법: _____	
5) 급·간식	공개방법: _____	
6) 기타 _____	공개방법: _____	

35. 귀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열리고 있습니까? 또 없다면 운영위원회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운영위원회 설치하지 않은 이유 _____ _____	매 _____ 개월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개최

36.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계십니까?

___ ① 공개하지 않는다

___ ② 공개한다

공개방법: _____

37. 귀 보육시설은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___ 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___ ②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___ ③ 실시하지 않고 있다

___ ④ 기타 _____

38. (37번의 ①, ②의 경우) 자체 평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체평가내용: _____

39.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기존의 법인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지원하지만 사회복지법인과는 별도로 보육 법인화를 실시하는 방안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 적극 찬성한다

___ ② 대체로 찬성한다

___ ③ 반대한다

___ ④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다

___ ⑤ 기타 _____

40.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제도와 재정지원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 논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중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___ ① 찬성한다(이유: _____)

___ ② 반대한다(이유: _____)

41.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2. 유치원 대상 설문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각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산, 수행하였던 육아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2006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재정지원의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기서 육아지원 기관이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의미합니다. 본 질문지는 사립유치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것입니다.

2006년 7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지원기관공공성 연구팀」
유희정 연구위원 02) 730-3056, hjyoo@kicce.re.kr
김은설 부연구위원 02) 733-2326, eskim@kicce.re.kr
유은영 연구원 02) 733-2337, eyyoo@kicce.re.kr

귀 유치원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하시거나, 빈칸에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설립유형	___ ① 법인 ___ ② 사립
2. 지역	___ ①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___ ② 중소도시 ___ ③ 읍면지역
3. 건물유형	___ ① 단독 건물 ___ ② 단독 주택 ___ ③ 상가 ___ ④ 기타 _____
4. 임대여부	___ ① 자가 ___ ② 건물 전체 임대 ___ ③ 건물 일부 임대 ___ ④ 기타 임대 *전세 _____ 원 (월세 월 _____ 원)
5. 시설의 전용성 확보 유무	___ ① 유치원 전용 ___ ② 주거/상가 등 복합 용도
6. 학급 수	인가 _____ 학급 편성 _____ 학급

귀 유치원의 등록 아동 및 교사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

7. 아동 정원	_____ 명
8. 등록 아동 현원	_____ 명
9. 교사 수(원장 포함)	_____ 명

원장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사항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성별	___ ① 여자 ___ ② 남자
11. 전공	___ ① 유아교육 ___ ② 아동학 관련 ___ ③ 초등교육 관련 ___ ④ 중등교육 관련 ___ ⑤ 기타

12. 경력	① 보육시설 ()년, ② 유치원 ()년 ③ 기타(초·중등학교 공무원 등) _____년
13. 현재 운영하는 보육시설 이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기관 수	① 유치원 ()개소 ② 보육/가정 시설 ()개소 ③ 영·유아 대상 학원 ()개소 ④ 기타 ()개소 총 ()개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치원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4.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공공기관이다(이유: _____)
___ ② 공공기관이 아니다(이유: _____)

15. 육아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해당사항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거의 알지 못한다	④ 전혀 알지 못한다
1) 5세아 무상교육	①	②	③	④
2) 기본보조금	①	②	③	④
3) 유치원 운영위원회	①	②	③	④
4) 보육시설평가인증제	①	②	③	④
5) 교사담임수당 지원	①	②	③	④

* 5세아 무상교육: 만 5세아에게 수업료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보조금: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 납입금과 적절한 기준 비용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유치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유치원의 운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에게 여러 가지 기관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정부 지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교사담임수당 지원: 사립유치원교사와 국공립유치원교사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교사의 학급 담임 수당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6.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적극 참여하 겠다	② 기회가 되면 참여 하겠다	③ 별로 참여하고 싶지않다	④ 참여 하지 않겠다
1) 육아행정전산망 운영	①	②	③	④
2) 유치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3) 사립기관 법인화	①	②	③	④
4)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②	③	④
5) 회계장부관리	①	②	③	④

* 육아행정전산망: 육아지원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과 중앙 및 지방 정부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17.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금과 시설 대한 지도·감독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정부 지원금에는 반드시 지도·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___ ②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지도·감독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___ ③ 정부 지원금은 받되 지도·감독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___ ④ 기타 _____

18. 현행 유치원의 수업료 자율화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___ ① 유지되어야 한다
 ___ ② 반대한다(이유: _____)
 ___ ③ 기타(지역별 도입을 검토해야한다 등) _____

19. 만약에 국가가 귀 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면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___ ① 매도하겠다
 ___ ② 매도하지 않겠다
 ___ ③ 기타 _____

20. 유치원의 질 개선에 유치원 장학지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영향을 미친다
 ___ ② 조금 영향을 미친다
 ___ ③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___ ④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 다음은 위원에서 실시된 장학 내용과 횟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유형	실시 횟수	주요 장학내용
원내·외의 자율장학	_____회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장학	_____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을 기입해 주십시오.

22. 수업료는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고 계십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___ ① 교사 혹은 원장이 직접 수령
 ___ ② 은행의 지로를 통한 수령
 ___ ③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한 수령
 ___ ④ 신용카드를 통한 수령
 ___ ⑤ 기타 _____

귀 유치원의 공공성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23. 귀 유치원에는 재무 또는 회계 담당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누가 맡고 있습니까?

- ___ ① 원장
 ___ ② 원감 혹은 주임
 ___ ③ 교사 중 담당자
 ___ ④ 경리 직원
 ___ ⑤ 운전자 등 기타 직원
 ___ ⑥ 기타 _____

24. 귀 유치원에서는 운영비의 예·결산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계십니까?

- ___ ① 금전출납부를 통해 예·결산을 하고 있다
 ___ ② 예·결산 전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___ ③ 외부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예·결산을 하고 있다
 ___ ④ 기타의 방법을 통해 예·결산을 하고 있다 _____
 ___ ⑤ 예·결산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25. 귀 유치원에서는 운영비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 ___ ① 공개하지 않는다
 ___ ② 공개하고 있다
 ↳ 공개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계십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___ ① 정부보고
 ___ ② 가정통신문 배포
 ___ ③ 유치원운영위원회 보고
 ___ ④ 홈페이지
 ___ ⑤ 기타 _____

26. (운영비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___ ① 매년 1회
 ___ ② 분기별 1회
 ___ ③ 격년으로
 ___ ④ 부정기적으로
 ___ ⑤ 기타 _____

27. 운영비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 ___ ① 필요하다(이유: _____)
 ___ ② 필요하지 않다(이유: _____)

28. 귀 기관의 지난 분기 총예산, 총지출, 정부지원금은 얼마였나요?

(단위: 분기)

구분		원
자체수입		
정부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교육비	
	장애아 무상교육비	
	교사 담임수당	
	교재·교구비 지원	
	기타	
	소계	
계(총 수입)		
총지출		

29.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개선되었는지 직접 적어주십시오.

30. 정부지원금이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분야를 우선순위대로 표시해주시시오.

- ___ ① 교사인건비
- ___ ② 교재·교구비
- ___ ③ 시설개선비
- ___ ④ 차량운영비
- ___ ⑤ 기타

31. 교사 임면에 대한 사항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 ___ ① 임면 시 바로 보고 한다
- ___ ② 임면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다
- ___ ③ 임면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다
- ___ ④ 가끔한다
- ___ ⑤ 하지 않는다
- ___ ⑥ 기타

32. 귀 기관에서는 다음의 어떤 항목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십니까? 각 항목에 √표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비공개
1) 원장 관련 자료	공개방법: _____	
2) 교사 관련 자료	공개방법: _____	
3) 장학지도 결과	공개방법: _____	
4) 유치원 교육과정 계획안	공개방법: _____	
5) 급간식	공개방법: _____	
6) 기타 _____	공개방법: _____	

33. 귀 기관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열리고 있습니까? 또 없다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 _____ _____	매 _____ 개월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개최

34.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계십니까?
 ___ ① 공개하지 않는다
 ___ ② 공개한다
 공개방법: _____
35. 귀 유치원은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___ 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___ ②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___ ③ 실시하지 않고 있다
 ___ ④ 기타 _____
36. (35번의 ①, ②의 경우) 자체 평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체평가내용: _____

37.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학교법인과는 별도로) 육아지원기관 법인화를 실시하는 방안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 적극 찬성한다
 ___ ② 대체로 찬성한다
 ___ ③ 반대한다
 ___ ④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다
 ___ ⑤ 기타 _____
38. 유치원지원이 확대될 경우 유치원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지원과 연계시킨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십시오.
 ___ ① 찬성한다(이유: _____)
 ___ ② 반대한다(이유: _____)
39.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육시설 공무원 대상 설문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각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산, 수행하던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6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실시됩니다. 여기서 육아지원 기관이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의미합니다. 본 질문지는 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것입니다.

2006년 7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지원기관공공성 연구팀」
유희정 연구위원 02) 730-3056, hjyoo@kicce.re.kr
김은설 부연구위원 02) 733-2326, eskim@kicce.re.kr
유은영 연구원 02) 733-2337, eyyoo@kicce.re.kr

귀하의 인적 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성별	___① 남 ___② 여
소재지	___①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___② 중소도시 ___③ 읍면지역
직책	___① 5급 ___② 6급 ___③ 7급 ___④ 8급 ___⑤ 9급
근무처	___① 시청/도청 ___② 시·군·구청 ___③ 읍·면·동사무소
보육 관련 업무 경력	___년 ___개월

보육시설 관련 정책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보육시설은 비영리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기관이다(이유: _____)
 ② 공공기관이 아니다(이유: _____)
 ③ 기타(_____)
- 다음은 보육시설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이 성
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항 목	매우 가능하다	가능한 편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① 보육료자율화				
② 보육행정전산화				
③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				
④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확대 실시				
⑤ 사회복지 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형태의 보육법인화				
⑥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확대				
⑦ 계좌이체를 통한 보육료 수령 및 지출시 카드 사용의 준수여부 확인				
⑧ 예·결산 공개				

3.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다음의 방안 중 가장 우선 실시되어야 할 3가지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 기

- ① 보육시설의 인가제도(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상의 규정) 강화
- ② 보육료자율화
- ③ 보육행정전산화
- ④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
- 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확대 실시
- ⑥ 사회복지 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형태의 보육법인화
- ⑦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확대
- ⑧ 계좌이체를 통한 납입금 수령 및 지출시 카드 사용의 준수여부 확인
- ⑨ 기타: _____

4.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유아 대상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본보조금”제도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기본보조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가 지불할 수 있는 보육료와 아동 1명에게 소요되는 표준보육비용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재정 관련 질문입니다.

5. 보육시설이 정부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 유형	매우 투명하다	투명한 편이다	투명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투명하지 않다
국공립시설	①	②	③	④
법인시설	①	②	③	④
민간보육시설	①	②	③	④
가정보육시설	①	②	③	④

6. 보육시설이 운영비의 정확한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란에 $\sqrt{\text{표}}$ 해 주십시오.

시설 유형	공개 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국공립시설		
법인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7. 보육시설의 몇 %정도가 회계 장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유형	구분
국공립시설	약 () % 정도
법인시설	약 () % 정도
민간보육시설	약 () % 정도
가정보육시설	약 () % 정도

8. 보육시설의 투명한 예·결산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사·도청: _____
- ② 사·군·구청: _____

9. 정부는 보육시설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이유: _____)
- ② 적절하지 않다(이유: _____)

10.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는 크게 아동별 지원과 기관별 지원이 있습니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 등이 기관별 지원이라면, 만 5세 무상 교육비 지원 제도는 아동별 지원입니다. 아동별 지원과 기관별 지원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동별 지원(이유: _____)
- ② 기관별 지원(이유: _____)

11.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의 시설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12.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이나 법인화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능하다
- ② 가능하지 않다
- ↳ 가능하지 않은 이유: _____

13. (12번 문항에 가능하다고 답하신 경우에) 보육시설의 법인화를 늘리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 중앙정부: _____
- ② 지방정부: _____
- 주의사항: _____

14. 귀하가 관할하시는 지역 내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 공공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초등학교의 빈교실 등)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관련 질문입니다.

15. 담당 관할 지역 내의 보육시설의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설 유형	매우 잘 파악하고 있다	잘 파악하고 있는 편이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시설	①	②	③	④
법인시설	①	②	③	④
민간보육시설	①	②	③	④
가정보육시설	①	②	③	④

16. 보육시설에 지원된 정부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학부모의 참여 증대
- ②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개선
- ③ 공무원의 지도·감독 강화
- ④ 기타(_____)

17. 지도·감독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재정
- ② 시설의 운영 상태
- ③ 서비스의 질

18. 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유형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적절하기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공립시설	①	②	③	④
법인시설	①	②	③	④
민간보육시설	①	②	③	④
가정보육시설	①	②	③	④

19. 지자체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일년에 몇 차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횟수: _____
내용: _____

20. 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은 앞으로 어떤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평가인증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평가인증에 있어 개선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2.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 이상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 기

- | | |
|--|---|
| ① 회계 장부 관리
③ 원아 관리(정원초과)
⑤ 프로그램 운영 관리
⑦ 교사 관리(근무 시간, 보수 등)
⑨ 운영비 부족
⑪ 기타: _____ | ② 교사 교육
④ 시설장 자격
⑥ 급·간식 관리
⑧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⑩ 정부 지원의 부족 |
|--|---|

보육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23. 보육 담당 공무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보 기

- | |
|---|
| ① 보육 관련 교육
② 업무 부담 경감
③ 정책에 대한 이해 확대
④ 공무원 인력의 충원
⑤ 기타: _____ |
|---|

24.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보육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5.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에 관하여 제안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4. 유치원 공무원 대상 설문지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각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산, 수행하던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6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아지원기관이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의미합니다. 본 질문지는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묻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것입니다.

2006년 7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지원기관 공공성 연구팀」
유희정 연구위원 02) 730-3056, hjyoo@kicce.re.kr
김은설 부연구위원 02) 733-2326, eskim@kicce.re.kr
유은영 연구원 02) 733-2337, eyyoo@kicce.re.kr

귀하의 인적 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성별	___① 남 ___② 여
소재지	___①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___② 중소도시 ___③ 읍면지역
직책	___① 장학관 ___② 장학사 ___③ 일반행정직(____급)
근무처	___① (서울 및 광역시) 시·도 교육청 ___② 시·군·구 교육청
유치원 관련 업무 경력	_____년 _____개월

유아교육 정책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기관이다(이유: _____)
 ② 공공기관이 아니다(이유: _____)
 ③ 기타(_____)

2. 다음은 유치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항 목	매우 가능하다	가능한 편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① 유치원 평가제도의 실시 및 정부 재정지원과의 연계				
② 초·중등학교와는 다른 독립된 체계로서의 유치원법인화				
③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확대				
④ 계좌이체를 통한 납입금 수령 및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				
⑤ 예·결산 공개				

3.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다음의 방안 중 가장 우선 실시되어야 할 3가지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 기

- ① 유치원 평가제도의 실시 및 정부 재정 지원과의 연계
- ② 초·중등학교와는 다른 독립된 학교체계로서의 유치원 법인화
- ③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확대
- ④ 계좌이체를 통한 납입금 수령 및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 준수
- ⑤ 예·결산 공개
- ⑥ 기타: _____

4.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유아 대상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본보조금”제도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기본보조금: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과 아동 1명에게 소요되는 표준교육/보육비용(국가가 정한 적정 수준의 보육·유아교육 비용)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교육/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재정 관련 질문입니다.

5. 유치원이 정부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설립 유형	매우 투명하다	투명한 편이다	투명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투명하지 않다
국공립유치원	①	②	③	④
법인유치원	①	②	③	④
사립유치원	①	②	③	④

6. 유치원이 운영비의 정확한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란에 $\sqrt{\text{표}}$ 해 주십시오.

설립 유형	공개 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국공립유치원		
법인유치원		
사립유치원		

7. 유치원의 몇 %정도가 회계 장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립 유형	구 분
국공립유치원	약 ()% 정도
법인유치원	약 ()% 정도
사립유치원	약 ()% 정도

8. 유치원의 투명한 예·결산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시·도 교육청: _____
- ② 시·군·구 교육청: _____

9.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이유: _____)
- ② 적절하지 않다(이유: _____)

10.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는 크게 아동별 지원과 기관별 지원이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이 기관별 지원이라면, 5세 무상 교육비 지원 제도는 아동별 지원입니다. 아동별 지원과 기관별 지원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동별 지원(이유: _____)
- ② 기관별 지원(이유: _____)

11.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의 시설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12. 사립유치원을 법인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능하다
- ② 가능하지 않다
- ↳ 가능하지 않은 이유: _____

13. (12번 문항에 가능하다고 답하신 경우에)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늘리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① 중앙정부: _____

② 지방정부: _____

주의사항: _____

14. 귀하가 관할하시는 지역 내의 초등학교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15. 담당 관할 지역 내의 유치원의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립 유형	매우 잘 파악하고 있다	잘 파악하고 있는 편이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①	②	③	④
법인유치원	①	②	③	④
사립유치원	①	②	③	④

16. 유치원에 지원된 정부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학부모의 참여 증대
- ② 유치원의 재정 공개 노력
- ③ 공무원의 지도·감독 강화
- ④ 기타(_____)

17. 지도·감독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재정
- ② 행정
- ③ 교육과정

<일반직 공무원용 질문>

18.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립 유형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①	②	③	④
법인유치원	①	②	③	④
사립유치원	①	②	③	④

19.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은 일년에 몇 차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지도·감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횟수: _____
 내용: _____

20. 교육청의 지도·감독은 앞으로 어떤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학사용 질문>

18. 사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②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 ③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이다
- ④ 전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장학은 일년에 몇 차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장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횟수: _____
 내용: _____

20. 교육청의 장학은 앞으로 어떤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사립유치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3가지 이상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 기

- | | |
|--|--|
| ① 예·결산 관리
③ 원아 모집
⑤ 교육과정 운영 관리
⑦ 교사 관리(근무 시간, 보수 등)
⑨ 운영비 부족
⑪ 기타 _____ | ② 교사 교육
④ 유치원장 자격
⑥ 급·간식 관리
⑧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⑩ 정부 지원의 부족 |
|--|--|

유아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보 기

- ① 유아교육 관련 교육
- ② 업무 부담 경감
- ③ 정책에 대한 이해 확대
- ④ 공무원 인력의 충원
- ⑤ 기타: _____

23. 유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4.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에 관하여 제안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부록 Ⅱ.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정 2006.6.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육시설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지원시설'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을 말한다. 단, 민간시설 중 기본보조금(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장애통합교사 인건비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니다.
2. '법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이 규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보육시설의 재무·회계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 (회계연도 등) 보육시설의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6조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육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8조 (세입·세출의 정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9조 (예산총계주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편성지침)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안 편성) ① 시설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 1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 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안 심의)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예산의 승인) ① 시설의 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시설의 경우 예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승인 또는 불승인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도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확정된 예산을 당해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예산서

② 제1항 제2호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육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보수
2.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6조 (추가경정예산) ①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예비비) ①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단,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1%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

식에 의한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보육시설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 (예산의 전용) ① 시설의 장은 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할 경우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과목전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 보육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결산의 절차) 시설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결산안 심의)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결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 (결산의 승인) ① 시설의 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시설의 경우 결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승인 또는 불승인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의 결산에 대하여는 별도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확정된 결산을 당해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 시설의 장은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2. 세입·세출 결산서
 3. 연도말 잔액증명서(거래은행 발행)
 4. 결산서 보조서류
 5.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
- ② 제1항 제1호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제2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26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그 시설종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수입 발생시에는 수입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제28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③ 반납금 여입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6 서식에 의한 반납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0조 (미수납액의 처리) 시설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제31조 (예산의 집행품의) ① 예산의 집행시에는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품의할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시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인건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3. 체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국내여비

제32조 (지출의 관리)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지출 행위시에는 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제33조 (장부의 종류) ①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써 각종 장부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1. 현금 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봉급대장
4. 보육료대장
5. 비품대장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9호 서식 내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34조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① 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증)
2. 수입결의서
3. 지출결의서
4. 반납결의서
5. 예비비 사용조서
6. 과목전용조서
7. 정부보조금명세서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서식은 별지 제14 서식 내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35조 (장부 등의 보존 기간) ① 제33조, 제34조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는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별표 1] 보육시설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

가. 세입예산

관		과 목		내 역		
		항	목			
01	입소자 부담금 수입	11	입소 비용 수입	111	보육료수입	보육아동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112	수익자 부담금	입소료,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타 경비
02	과년도 수입	21	과년도 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03	잡수입	31	잡수입	311	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312	후원금수입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후원금 그밖에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찬조금 등
				313	기타잡수입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
04	보조금 수입	41	경상 보조금 수입	4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시설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412	보육료 보조금	저소득층 등 아동별 지원되는 보육료
				413	기본보조금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영아반운영비)
				414	기타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 식비, 냉·난방비 등
		42	자본 보조금 수입	421	자본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 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5	전입금	51	전입금	511	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제외함), 차입금
06	이월금	61	이월금	6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6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나. 세출예산

관	과 목		내 역	
	항	목		
100	시설운영비	110 인건비	111 급여	시설종사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 포함)
			112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3 제수당	종사자에 대한 제수당(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1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종사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 부담비용	종사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116 기타 후생경비	종사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0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급	종사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0 관리운영비	131 여비	종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송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 ·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의료비, 약품구입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시설에서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비, 화재·자동차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과 목				내 역		
관	항	목				
200	사업비	210	사업운영비	211	급간식비	보육아동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보육아동의 간식비 등
				212	교재교구비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213	행사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214	수익자 부담금 지출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300	재산조성비	310	시설비	3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보수비)
				3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3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400	전출금	410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500	과년도지출	510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700	예비비	710	예비비	7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부록 Ⅲ.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일부개정 2006.8.2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7.2.6, 2005.9.27>

제2조 (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개정 1987.2.6>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개정 1987.2.6>

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관할청<개정 2000.8.31>)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2.5.28, 2000.8.31>

제6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8.31>

제7조 (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예치라 함은 금융기관에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지급을 보증한 어음 기타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2.5.28>

[전문개정 1975.5.31]

제8조 (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7.2.6, 2000.8.31>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전문개정 1982.5.28]

제9조 (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 (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

을 세출로 한다.

제11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편성 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1.29>

제13조 삭제<1982.5.28>

제14조 삭제<1999.1.29>

제15조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1976.1.7, 1982.5.28>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과년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 대조표
7. 삭제<1999.1.29>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②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1976.1.7>

제16조 (예산편성절차)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

하여 매회계연도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7.2.6, 2000.8.31>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2.6>
[전문개정 1982.5.28]

제17조 (준예산) 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1987.2.6, 2000.8.31>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2.5.28]

제18조 (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

정 2000.8.31>

[전문개정 1982.5.28]

제19조 (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
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1.7, 1999.1.29>

제20조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
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개정 1987.2.6>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
한다.<개정 1982.5.28>

제21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2.5.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
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개정 1982.5.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
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개정 2000.8.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
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5.28, 1987.2.6, 2000.8.31>

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
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예
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2.5.28>

②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 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의2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31]

제23조 (결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개정 1982.5.28>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개정 1982.5.28>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2.5.28>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과 차인잔액(불용액)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미수액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사용액 조서를 각각 그 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2.5.28>

제24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개정 2005.9.27>)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개정 2000.8.31>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2000.8.31>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2000.8.31>

④삭제 <2006.8.2>

⑤삭제 <2006.8.2>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5조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개정 1976.1.7>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6.1.7>

제26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6.1.7>

제27조 (회계의 방법)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도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5.28]

제2절 수입

제28조 (수입금 징수) ①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 (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그날에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과년도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32조 (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제33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로써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

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77.12.17, 1982.5.28>

제34조 (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관공비(기관운영관공비에 한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보조금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0.8.31>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1982.5.28]

제4절 계약

제35조 (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00.8.31, 2005.9.27>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00.8.31, 2005.9.27>
[전문개정 1999.1.29]

제36조 (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6.1.7>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개정 1976.1.7>

제37조 (계약서의 작성) ①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2.5.28, 1999.1.29, 2005.9.27>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8.31, 2005.9.27>

제38조 (보증금)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③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27>

[전문개정 2000.8.31]

제39조 (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제40조 (검사조서의 작성) ①법인과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8.31, 2005.9.27>

[전문개정 1999.1.29]

제5절 감사

제41조 (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8.31>

②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입회인을 감사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제4장 재산

제42조 (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제43조 (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

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제44조 (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기부채납·신축·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2.6, 2000.8.31>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제46조 (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개정 2000.8.31>

제5장 물품

제47조 (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개정 1987.2.6, 1999.1.29>

1. 비품
 - 품질·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 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4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6.1.7>

③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9조 (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0조 (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76.1.7>

④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8.31>

제51조 (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개정 1976.1.7>

제6장 장부와 서식

제52조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2.6, 2000.8.31>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서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1976.1.7>

제53조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개정 1987.2.6, 2000.8.31>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제53조의2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31]

제54조 (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개정 1987.2.6>

제7장 보칙

제55조 (채무보증 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56조 삭제<1999.1.29>

제57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할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8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관계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준용) 제12조제1항·제16조제2항·제21조제4항 후단·제2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제24조제1항·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당해 사립학교 경영자로 하며 감사는 당해사립학교 경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2.5.28>

제60조 (위임)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1987.2.6>

부칙 <제246호,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197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197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1977.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1979.1.8>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1982.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198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00.8.31>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05.9.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0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IV. 유치원 장학 사례

1. 서울시의 예

가. 교육청 지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장학

	담임 장학	종합 장학	표집 장학
목표	·시·도 교육 방향 추진과제 구현의 공감대 형성	·시·도의 교육 방향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시·도 유아교육계획의 실천 방향 및 유아교육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수집
방침	·지역교육청 별로 담임 장학 계획 수립·실천 ·새로운 정보 및 우수 교육활동 사례 일반화에 중점	·지역교육청 별로 종합장학 계획 수립·시행 ·전일(1일) 장학을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연장 실시 가능 ·종합 장학은 장학 요원제를 적극 활용 ·우수사례는 발굴·격려하며, 미흡사항은 해결 방안 제시	·시·도 교육지표·정책 방향·역점과제 등을 구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 파악 ·유치원의 특색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 등의 방법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독창성 독려
	·종합 장학은 필요에 따라 담임 장학과 겸하여 실시할 수 있음		
관점	·지역교육 방향의 효율적인 실천방안 모색 ·제6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원내 자율장학 및 지구자율장학활성화 정도 확인	·시·도 교육 방향의 구현 정도	·다음 해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기초자료 수집 및 유치원 현장 의견 수렴 ·연구·시범학교, 각종연구 발표대회, 에듀케어 운영, 특수교육 운영 등
결과 처리	·담임장학사는 장학의 결과를 단위유치원의 「장학협의록」에 기록 ·「장학협의록」은 유치원장이 결재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방안 강구	·장학담당자는 종합장학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의 지원책을 강구 ·종합장학, 요청장학 등 장학의 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일반화 사례를 관내 유치원에 안내하여 교육력 제고	·장학협의 결과 우수 유치원 및 교원에 대하여는 연도 말에 「학교경영 우수 유치원 표창」을 실시(교육감 표창) ※ 표창 대상은 별도 심의
행정 사항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유치원에 대한 담임장학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에 제시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유치원에 대한 담임장학 결과를 학기별로 분석하여 시·도교육청에 제출		추진 방법 ·조직: 장학관, 장학사 ·시기: 1, 2학기로 분할 실시 ·표집대상: -지역교육청별 1~2개원 -선정방법: 지역교육청의 3배수 추천에 의한 시·도 교육청의 무선 표집

* 인천시는 표집 장학의 성격을 띤 특별장학이 실시되며 종합 장학 대신 맞춤 지원 장학, 지구별 협의가 시교육청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나. 자율적으로 교육청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장학

	요청 장학	사이버 장학
목표	·단위유치원의 특별한 장학 수요에 부응하여 현장을 지원	·장학 담당자와 교원들 간의 신속한 의사소통 및 문제의 해결
방침	·유치원장의 요청이 있는 영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지역교육청 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에듀케어 학급의 요청장학 포함) ·유치원 요청에 따라 장학사, 유아교육전문가(자율장학요원)로 장학팀을 구성 ·지역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 및 관내 일반직 공무원 등을 장학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명단을 유치원에 안내	·지역교육청별 홈페이지에 「사이버 장학」 사이트 설치를 통한 사이버 장학체제 구축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정보 교환과 업무 처리 영역 확대
추진 방향	·단위유치원의 요청 내용에 따라 지역 교육청에서 제시	·지역 교육청 및 단위 유치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장학 권장 ·사이버 장학 우수 기관 및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결과 처리	·장학 담당자는 요청장학의 결과를 단위유치원의 「장학협의록」에 기록 ·단위유치원의 「장학협의록」은 유치원장이 결재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강구 ·장학담당자는 요청장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의 결재를 받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의 지원책 강구	·학년도 말에 사이버 장학 우수 기관 및 교원 표창 실시

* 인천시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 의해 주관되는 IT 장학은 통신 장학, 지역 교육청 별로 이루어지는 장학은 사이버 장학 및 통신 장학이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다. 교육청 지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장학의 특성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 장학은 시·도 교육 방향의 추진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종합장학은 교육 방향이라는 조금 더 거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종합 장학은 조언과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지도·감독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담임 장학은 현안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장 및 지원하는 교육 목적으로 함. 이런 면에서 담임 장학은 유치원의 자율적 장학 능력을 신장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특히 담임 장학 시 자율장 학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는 것이 이를 지지함 ·표집 장학은 시·도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검증과 이를 통한 다음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 <p>이는 담임 장학이나 종합 장학의 목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부분임</p>
방 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 장학은 교원, 일반직 공무원, 지역 인사 등을 포함함으로써 장학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더 개방성을 띤 장학이라고 할 수 있음 ·종합 장학과 담임 장학은 겸하여 실시할 수 있음 ·종합 장학은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전년도 장학 및 유치원평가 결과를 참조한다는 점에서 좀 더 누적적 성격을 띤 체계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음. <p>또한 장학의 결과가 실제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관리하는 기제를 갖추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 장학에서는 미흡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전반에 걸쳐서 장학위원들의 좀 더 강화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짐 ·표집 장학에서는 유치원의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을 존중함과 동시에 시·도 단위의 교육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정이 공공의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음
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 장학과 표집 장학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운영 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복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이는 이러한 관점이 명시되지 않는 담임 장학과는 비교됨 ·표집 장학은 연구·시범학교, 각종연구발표대회, 에듀케어 운영, 특수교육 운영 등 특색 프로그램 발굴 및 일반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결 과 처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 장학의 경우 담임장학사가 「장학협의록」에 기록하며 유치원장이 지적 사항 보완하는 유치원의 자체적 개도의 방안을 택한다면, 종합 장학의 경우 장학담당자가 「종합장학 보고서」에 기록하고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종합 장학에서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된 경우 일반화 사례로 소개되는 수준이지만, 표집 장학의 경우 우수 유치원 및 교원에게는 학교경영 우수 유치원 표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됨
행 정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교육청은 담임 장학과 종합 장학 계획을 시·도 교육청에 년 초 1회 작성하여 제출하며, 장학 결과를 분석하여 7월과 12월에 년 2회(보고서 서식 사용하여) 제출함

라. 유치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장학

	원내 자율 장학	지구별 자율 장학
목표	·단위 유치원이 주체가 된 장학지도를 통해 자율평가 풍토 조성, 교원의 전문성 향상, 효율적인 유치원 공동체 조직 형성에 기여	·지구별로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교육력 제고, 우수 사례의 일반화, 현안 문제의 협의 및 해결 방안 모색
방침	·원장·원감·교사·유아교육 전문가 등으로 「원내자율장학협의회」 구성·운영 ·원내 자율장학의 계획 수립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 교사의 특성에 맞는 장학의 실시 ·「원내자율장학 협의회」의 평가 결과를 실제 수업 개선을 위해 활용 *영역별연구협의회, 지구 자율장학 협의회와 연계·운영을 통해 효율성 확대	·지역교육청 주관 하에 「지구 자율장학협의회」 조직·운영 ·간사유치원 중심으로 자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실천
추진 방향	·자기 장학을 위한 실제적 지원 체계의 마련 및 강화 -교원 개인의 연간 계획 수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연구 대회, 학술발표회 등의 참여 독려 동료장학의 활성화 -영역별 연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교사 상호간 수업참관 및 협의 기회 확대 ·원장, 원감의 수업장학 강화 - 연간 계획의 체계화 및 문건화 - 교사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선택적 임상장학 실시 - 장학협의회, 수업연구 협의회 내실화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도모 - 원 단위의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 확립 - 연구교사의 교실 상시 개방·연 2회 이상의 수업 공개 실시	·간사유치원이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지구단위 자율 장학 계획 수립·운영 ·유치원간 방문·교류 활동을 통하여 유치원 교육활동 우수 사례의 일반화 및 현안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공개수업 참관, 연구 발표회, 교원연수, 학습지도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공동 모색 등을 통해 전문성 신장
결과 처리	·우수사례의 일반화 ·다음 연도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	·간사유치원장은 당해 지구의 활동 실적을 종합하여 지역교육청에 제출
행정 사항	·담임 장학 시 원내 자율장학 계획 및 실천 내용을 확인	

* 인천시의 경우 지구별 자율 장학 이외에 지구별 자율협의 장학이 있으며 이는 지역 교육청에 의해 관리·감독됨.

2. 인천시의 예

가. 교육청 지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장학

	담임 장학	맞춤 지원 장학	지구별 협의	특별 장학
주안점	·유치원 현황 및 교육환경 파악 ·신설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정착	·지역교육청의 장학력 제고 ·유아교육 중점 시책과 교육현장의 교육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연구 협의 지원	·지구별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 시책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지원과 지구별 현장의 주요 현안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교육부 정책사업 및 시책사업 또는 갑자기 발생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이 시급히 필요할 때 실시
대상	·담임장학 대상 유치원, 유아교육위탁 지정 미술학원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직접관리 유치원	·○개 지구 실시 (지구별 년1회)	·지역 교육청 및 유치원
시기 (2006)	·3월 ~ 11월	·지역교육청은 초등장학계획에 의거 실시	·2006. 4 ~ 2006. 11	·현안 발생 시
내용		·장학 관점에 따른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협의	·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 지역 교육청 담당 장학사, 해당지구 교원과 공동 협의 ·지구별 운영 실태 파악, 향후 추진 및 개선 방안 협의	·교육부 정책 사업 교육 현장 반영 정도 확인 ·시·도교육청 시책 사업교육현장 반영정도 확인 ·현안 문제 원인, 해결 방안 모색
실시 방법	·공·사립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계획 수립 및 제장부 마련 확인 ·교육과정 적정 운영 지도 및 시설 참관	·별도 계획에 의함		·과제 중심의 담당자 협의(현황, 문제점, 우수사례) ·현안 과제 주제 해결을 위한 협의 정책 및 시책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협의
결과 처리	·개선 보완 사항 협의 및 시정 조치	·교육활동 우수 유치원, 우수 교사 발굴 표창 건의사항, 현안 문제 등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해결방안 모색	·지구별 미흡 부분 보완 ·지구별 우수사례 발굴·보급	·우수사례 발굴·보급 ·문제점에 대한 대책 협의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2. 자율적으로 교육청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장학

구분	요청 장학	통신 장학
주안점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교육활동 현안 사항 해결 및 수업 방법 개선 협의	·다양한 교육정보 교류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치원간 균형발전도모
대상	·시·도 교육청 지정 연구 유치원 : 시·도교육청 주관 ·장학 지원을 요청하는 유치원: 지역교육청 주관	·공·사립유치원
시기 (2006)	·요청 시 일정 협의	·연중
내용	·요청 장학 과제에 대한 협의:교육활동의 질 향상 ·사전 협의 주제에 대한 집중 장학과 협의	·지역별 우수사례 소개 ·시범유치원 운영 및 현장교육 실천 우수사례 ·주제별(영역별) 테마 기획으로 유치원, 교실 혁신의 정보제공
실시 방법	·협의 예정일 7일전까지 요청서를 지역 교육청에 제출 ·지역교육청에서는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시 시교육청에 협조 의뢰 ·장학 위원 구성 및 협의 자료 수집 ·요청 유치원장과 협의 후 요청 장학 실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장학지도(홈페이지 사이버장학교실/ 장학상담실/유아교육) ·초등학교 웹 지원 센터 (홈페이지교육 연구회/유아교육) ·유치원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자료를 탑재하여 서로 정보교환 ·유아소식지를 통한 통신장학 ·전문직 E-mail을 통한 상담 장학 ·에듀넷을 통한 정보자료 활용
결과 처리	·요청 과제 분석 결과 및 대안을 해당 유치원에 제공 ·요청 장학을 실시한 유치원은 지역 교육청의 종합 장학으로 대체함	

3. 유치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장학

구분	지구별 자율장학	원내 자율장학
목적	·동일 지역의 유치원간 상호 협동적 교육 활동 장려 ·자율적 교육 정보 교환 및 특색 교육 활동의 협동적 추진	·자율적인 연구 풍토 조성으로 교육 과정의 정상 운영 도모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수업의 질 제고 ·교직의 전문성 신장 및 복무 자세 확립
장학 방침	·종래의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운영 방법을 탈피한 지구장학활동 전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지구별 수업장학 강화 ·지역의 학부모 교육 및 유아교육 홍보를 위한 공동 과제 추진 ·유치원간 협조체제 구축 및 균형적 발전 도모	·선택적 장학의 활성화 ·수업 우수 교사 발굴·격려
구성	·지구별 자율 장학 위원회 구성(20개 지구)	
대상	·○개 지구별 유치원(교원)	
시기	·2006. 4 ~ 2007. 2	
운영 방법	·지구별로 중심유치원 선정 및 운영 계획 수립 추진 ·운영계획, 지구별 공동행사계획, 수업 장학활동계획 등 연간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구성원 조직은 유치원 교원을 중심으로 함 ·사업내용에 따라 원장, 원감, 교사별로 팀 구성 및 통합 조직 운영으로 함 ·자율장학 협의회에 원장, 원감,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구별 과제를 해결함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선택적 장학 방법에 의한 수업 장학 실시 - 교사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장학 유형의 선택 - 유치원내 수업 장학 실시 계획 수립 유치원내 자체 연수의 체계적 운영 - 유치원 실정, 특성을 고려한 연수 계획 수립·실천 ·자율적 교사 연구회 참여 기회 확대
결과 처리	·지구별 자체 장학활동 성과 분석 및 우수내용 일반화	

부표

〈부표 Ⅱ-1〉 담임장학협의록 양식

담 임 장 학 협 의 록

장학사	주무 장학사	초등교육 과장	결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실시일: 2006년 월 일 요일					유치원명	(한자:)				
설립자명	한글() 한자()				교직원수	원장	원감	교사	기타	계
주소										
설립형태	공립() 사립()				원장명	(한자:)				
운영형태	형태		원아수		원감명	(한자:)				
	반일제			명	교사명					
	시간연장제			명						
	종일제			명						
인가학급	()학급	인가 원아수	()명							
편성학급	()학급	현 원	()명							
시설현황	건물형태		교실위치	유 원 장		* 연 령 별 원 아 수				
	구분	단독	복합	지하	실내					구분
	자가			1층	실외	남				
	임대			2층	옥상	여				
	종교			3층	기타	계				
부속										
학원										
관련										
*우수사항						건의사항				
*미흡사항										
*확인사항										
급식	자체(), 위탁()		버스	자가(), 비운행() 지입() (인승)		비고				

〈부표 II-2〉 장학결과 분석 보고 양식

장학결과 분석 보고 체제

I. 장학 개요

1. 기본방향
2. 실시현황

구 분	원내장학	담임장학	지구자율장학	표집장학	요청장학	사이버장학
실시원수						
실시횟수						
참여인원						

II. 장학 결과 분석

1. 장학 유형별 분석

- 가. 원내 자율장학
- 나. 지구 자율장학
- 다. 담임 장학
- 라. 요청 장학
- 마. 종합 장학
- 바. 표집 장학
- 사. 사이버 장학

2. 실천과제별 추진결과 분석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IV. 유치원별 장학 실시 결과(지역청 보관)

V. 지역교육청 특색사업 추진 실적

※ 우수사례 실적물은 별첨

〈부표 Ⅱ-3〉 유치원 요청 장학 신청서 양식

(양식 1)

유치원 요청 장학 신청서

1. 장학요청 현황

원 명	원장명	원감명	교 사 명	비 고
			(임용교사 전부 기록)	

장학 요청일	2006. . . (요일)	조정일	2006. . . (요일)
장학요망 사항 (협의 안건)			

2. 학급별 수업장학

학급명	담임명	원아수	교육 활동 주제

위와 같이 장학을 요청합니다.

2006. . . .

유치원장 직인

○○도○○교육청교육장 귀하

〈부표 Ⅱ-4〉 유치원 장학지도 결과 보고서 양식(Ⅰ)

(양식2)

장학지도 결과 보고서

1. 유치원 현황

유치원명						원장명			교사명			일과운영	종일반() 오후반()
장학지도일	2006. . .					학급수							
원아 현황	연령	3세	4세	5세	계	원아전용화장실 (대·소변기 수)			중식제공			차량운영	대
	인원					수도시설 (꼭지수)			교실수			수업료	

2. 장학지도 결과

주요시책	협 의 사 항	추진실적	개선 및 보완사항
가. 수월성을 추구 하는 조화로운 교육과정 운영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 전개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대비 교육 강화		
나.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창의력 신장	-다양한 체험활동 강화 -정보교육의 충실		
다. 함께 하는 교육 으로 진취적 풍성 함양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간성 함양 -함께 사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지역인 육성		
라. 자율·참여·책임의 교육공동체 형성	-교원 의사를 존중하는 유치원 경영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마. 교육 신뢰 풍토 정착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책임성 제고	-전문성을 신장하는 장학활동 전개 -교육내실화를 위한 인사관리의 적정 -자율 연수 체제의 확립		
바. 창의적 활동과 인간적 만남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교실 현대화·교단 선진화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확보 활용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 -유치원 인가 및 운영의 합리화		
전년도 장학 지도 보완사항 추진 상황			
우수사례 및 수업우수 교사			
총 합 의 건			
협의 및 건의 사항			

〈부표 Ⅱ-5〉 유치원 요청 장학 신청서 양식(Ⅱ)

<p>(양식3)</p> <p style="text-align: center;">우 수 사 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유치원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대상</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우수사례명</td> <td></td> <td>기간</td> <td></td> </tr> </table> <p>1. 목적 및 필요성</p> <p>2. 실천 사례</p> <p>3. 기대성과 및 전망</p> <p>·기타 참고자료는 붙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증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유치원명		대상		우수사례명		기간		<p>(양식4)</p> <p style="text-align: center;">유치원 특색 사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20%;">유치원명</th> <th style="width: 20%;">특색 사업명</th> <th style="width: 20%;">추진계획 및 실적</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r> <td style="height: 150px;"></td> <td></td> <td></td> <td></td> </tr> </table> <p>·기타 참고자료는 붙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증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유치원명	특색 사업명	추진계획 및 실적	비고				
유치원명		대상															
우수사례명		기간															
유치원명	특색 사업명	추진계획 및 실적	비고														
<p>(양식5)</p> <p style="text-align: center;">장학지도 결과 권장 및 보완 사항 통보</p> <p>1. 장 학 지 도 일: 2. 대 상 유 치 원: 3. 담 당 장 학 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권 장 사 항</th> <th style="width: 50%;">개선·보완</th> </tr> <tr> <td style="height: 80px;"></td> <td></td> </tr> </table> <p>위와 같이 장학 지도 결과 권장 및 개선·보완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권장사항은 적극 교육 활동에 활용하여 주시고 개선·보완 사항 조치 결과는 7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6. . .</p> <p>○○도○○교육청초등교육과장</p>	권 장 사 항	개선·보완			<p>(양식 6)</p> <p style="text-align: center;">장학 지도 개선 및 보완 사항 결과 보고</p> <p>1. 장학지도일: 2. 대상유치원: 3. 담당장학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개선 및 보완 사항</th> <th style="width: 50%;">조치 결과</th> </tr> <tr> <td style="height: 80px;"></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006. 유치원장(인)</p> <p>○○도○○교육청교육장 귀하</p>	개선 및 보완 사항	조치 결과										
권 장 사 항	개선·보완																
개선 및 보완 사항	조치 결과																

〈부표 Ⅱ-6〉 장학 운영 일정의 예: 인천시

가. 지구별 자율 장학

시 간	내 용	준 비 물	담 당 자	비 고
14:50 ~ 15:00	등 록	등록부	지구장	※ 희망하는 교원 공개수업 참관
15:00 ~ 16:00	수업공개, 참관	수업안, 참관록	"	
16:00 ~ 16:30	수업 협의		장학요원	
16:30 ~ 17:00	워 크 슝	자료	수업공개 지구 유치원	
17:00 ~	폐 회		지구장	

나. 요청 장학

시 간	내 용	준 비 물	비고
09:30 ~ 10:00	·유치원 현황 청취 및 원장과의 대화	유치원 현황	
10:00 ~ 12:00	·수업 및 시설 참관	교수·학습지도안	
13:00 ~ 14:00	·교육계획 추진 현황 ·유치원 운영 우수사례 소개 ·각종 공문서 지도 점검	유치원 교육 계획, 공문서철 각종 대장 등	
14:00 ~ 15:00	·수업 및 현안문제 협의		

다. 맞춤 장학

시 간	소요시간	장학협의 내용	담 당	장 소
09:30 ~ 10:00	30분	·유치원 현황 청취	원장·원감	원장실
10:00 ~ 12:30	2시간30분	·공개 수업 및 일반수업 참관	유치원교사	각반 교실
13:30 ~ 16:00	2시간30분	·교육계획 추진상황, 교육과정 운영, 각종 공문서 관리 등	장학사	장학협의실
16:00 ~ 16:30	30분	·전체 협의 및 총 강평	교직원 및 장학사	장학협의실

라. 시교육청 지구별 협의

시 간	장학 협의 내용	준 비 물	비 고
15:00 ~ 15:30	·지구별 현황 청취	지구별 현황	※ 지구장 유치원에서 지구 자율장학 협의록 작성·제출
15:30 ~ 16:30	·지구별 우수사례 및 현안 문제 협의	협의록	
16:30 ~ 17:00	·건의사항 청취		

〈부표 Ⅱ-7〉 육아지원기관의 시설의 전용성 확보 현황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888(100.0)	423(100.0)	483(100.0)
자가	681(76.7)	247(58.4)	434(89.9)
건물 전체 임대	47(5.3)	37(8.7)	10(2.1)
건물 일부 임대	136(15.3)	115(27.2)	21(4.3)
기타 임대	24(2.7)	24(5.7)	0(0)

연구보고 2006-02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발행일 2006년 12월

발행인 이 옥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02-8 93330